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3-20

#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선방안

Improving the Jeonbuk Farmer Income Support System

조원지 황영모 은성태 권오현



## 설립목적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과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 지역여성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대안의 모색
- 정부, 전라북도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각종 용역 수탁
- 연구 관련도서 및 간행물 출간
-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협력

## 연구진 소개

### 조원지

미국 University of Georgia 철학박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황영모

전북대학교 경제학박사  
일본 홋카이도대학 연구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은성태

텍사스주립대 농업응용경제학 박사  
강원연구원 연구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권오현

부산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 석사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3-20

#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선방안

Improving the Jeonbuk Farmer Income Support System

조원지 황영모 은성태 권오현



##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

연구 책임	조원지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2장, 3장, 4장, 5장
공동 연구	황영모	연구위원	제4장 1절
	은성태	연구위원	제2장 일부, 제3장 일부
	권오현	전문연구원	제2장 2절 일부, 제3장(1절, 2절 일부)

---

자문위원	강미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서정원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황만길	군장대학교	교수
	송춘호	전북대학교	교수
	조경호	지역농업연구원	원장
	나정균	김제시 농업정책과	팀장

---

연구관리 코드 : 23JU0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연구목적 및 방법

### ■ 연구목적

- 농업종사자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 실천 기반 약화, 공익 증진 활동 실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소득 감소 또는 비용 증가로 농민 소득안정과 공익적 역할과 지위 보장을 위한 정책 수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전북 농업인을 위한 소득보전 지원체계는 유사 사업들이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정책적 효과와 성과가 다소 낮은 실정으로,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지원체계 진단을 통해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지원체계의 제도적, 행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 주체로서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며, 이들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함

### ■ 연구방법

- 지난 3년간 농민 공익수당과 전북 자체 직접지불제(쌀·밭직불금)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의 당면과제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농업인의 농민 공익수당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 정도와 전문가의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진단을 통해 지원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고자 함
- 이를 근거로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개편안을 제시하고, 개편안의 기대효과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함

## 2. 결론 및 정책제언

- 농업인의 공익적 역할과 지위 인정, 1인 가구와 소농의 소득안전망 강화, 발농가의 공익적 가치 평가절하 해소, 낮은 행정 효율성 해소 등을 위한 4개의 개편안을 제시함
- (개편안 1)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한 ‘농민 공익수당’과 도·시군 자체 직불금을 통합하여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라북도 기본직불금’
  - (개선점) 농업인의 정책 이해도와 만족도 향상, 개별 농업인의 자긍심과 자존감 증진, 논농가와 발농가의 형평성 회복, 1인가구와 소농의 지원금 증가 등
  - (한계점) 주민등록을 분리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증가, 초고령농가의 은퇴시기 지연, 시군의 자율성 제약으로 시군 반발 가능성, 소득재분배 효과의 실효성 등
- (개편안 2) 시·군 자체 직불금을 유지하고 농민 공익수당과 도 자체 쌀·밭직불금을 통합하여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한 ‘농민 공익수당’
  - (개선점) 농업인의 정책 이해도와 만족도 향상, 개별 농업인의 자긍심과 자존감 증진, 1인가구의 지원금 증가 및 소득재분배 효과 등
  - (한계점) 주민등록을 분리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증가, 초고령농가의 은퇴시기 지연 등
- (개편안 3) 시·군 자체 직불금을 유지하고,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한 ‘농민 공익수당’, ‘도 공익직불금(도 쌀·밭직불금 통합, 역진적 지급)’
  - (개선점) 개별 농업인의 자긍심과 자존감 증진, 논농가와 발농가의 형평성 회복, 1인가구와 소농의 지원금 증가 등
  - (한계점) 주민등록을 분리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증가, 초고령농가의 은퇴시기 지연, 낮은 행정 효율성 등
- (개편안 4) 시·군 자체 직불금을 유지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에게 ‘기본형 지원금’과 경작농지 면적에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한 ‘공익지원금’을 제공하는 ‘농민 소득 지원금’
  - (개선점) 중소농가의 공익적 역할과 소득보전 고려, 논·밭의 형평성 회복, 1인가구·소농의 지원금 증가 등
  - (한계점) 초고령농가의 은퇴시기 지연, 낮은 행정 효율성 등





---

## 차 례

### CONTENTS

---

요약 ..... i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가. 연구의 배경 ..... 3  
나. 연구 목적 및 방법 ..... 6  
2. 선행연구 검토 ..... 8  
3. 전북 농가 및 농업경영체 현황 ..... 13  
가. 전북 농가 및 농지 현황 ..... 13  
나. 전북 경지 ..... 23  
다. 전북 농민 소득 ..... 25

---

#### 제2장 전북 농민 공익수당 개요 및 추진현황

1.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개요 ..... 31  
2. 전북 농민 공익수당 추진현황 ..... 35  
가. 2020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 ..... 35  
나. 2021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 ..... 38  
다. 2022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 ..... 41  
라. 2020~2022년 농민 공익수당 ..... 44  
3. 타시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현황 ..... 46

### 제3장 전북 직접지불제 개요 및 추진현황

1. 전북 직접지불제 개요 ..... 53
  - 가.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 53
  - 나.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 ..... 53
  - 다. 밭농업직불금 지원사업 ..... 54
2. 전북 직접지불제 추진현황 ..... 56
  - 가.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쌀직불금) ..... 56
  - 나. 밭농업직불금 ..... 75
3. 시군 직접지불제 개요 및 추진현황 ..... 92

### 제4장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진단 및 개선과제

1.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진단 ..... 97
  - 가. 전북 농민의 농민 공익수당에 대한 인식 ..... 97
  - 나. 농민 공익수당의 경제적 효과 검토 ..... 105
2. 전북 자체 직불금의 정량적 검토 ..... 110
  - 가. 쌀직불금 ..... 110
  - 나. 밭직불금 ..... 112
3.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에 대한 전문가 진단 ..... 114
4.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의 성과와 과제 ..... 119

---

## 차 례

### CONTENTS

---

---

#### 제5장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선방안

1.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편방향 .....	129
2. 개편안 설정 .....	131
가. (개편안 1) 도 농민 공익수당 + 전라북도 기본직불금 .....	131
나. (개편안 2)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 .....	139
다. (개편안 3) 농민 공익수당 + 전라북도 공익직불금 .....	143
라. (개편안 4) 전라북도 농민 소득지원금 .....	149
3. 개편안의 기대효과와 한계 .....	159
4. 성과지표 .....	161
참고문헌 .....	169
영문요약 (Summary) .....	170

---

## 표 차례

### LIST OF TABLES

[표 1-1] 지자체의 농민 소득보전제도 관련 선행연구 검토 .....	9
[표 1-2]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추이 .....	15
[표 1-3] 시군별 논·밭 경지면적 .....	24
[표 1-4] 이전소득 변화 .....	27
[표 2-1] 연도별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재정투입 규모 .....	32
[표 2-2]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34
[표 2-3] 시군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0년) .....	34
[표 2-4] 성별·연령대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0년) .....	36
[표 2-5] 시군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1년) .....	37
[표 2-6] 성별·연령대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1년) .....	38
[표 2-7] 시군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2년) .....	40
[표 2-8] 성별·연령대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2년) .....	41
[표 2-9] 시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추진현황 .....	47
[표 3-1] 연도별 쌀직불금 재정투입 규모 .....	54
[표 3-2] 연도별 밭직불금 재정투입 규모 .....	55
[표 3-3] 연령대·지급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0) .....	59
[표 3-4] 연령대별 쌀직불금 평균 금액(2020) .....	60
[표 3-5] 연령대·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0) .....	61
[표 3-6] 연령대·지급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1) .....	65
[표 3-7] 연령대별 쌀직불금 평균 금액(2021) .....	66
[표 3-8] 연령대·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1) .....	67
[표 3-9] 연령대·지급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2) .....	71

---

## 표 차례

### LIST OF TABLES

---

[표 3-10] 연령대별 쌀직불금 평균 금액(2022) .....	72
[표 3-11] 연령대·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2) .....	73
[표 3-12] 연령대·재배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0) .....	78
[표 3-13] 연령대별 평균 쌀직불금(2020) .....	79
[표 3-14] 연령대·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0) .....	80
[표 3-15] 연령대·재배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1) .....	83
[표 3-16] 연령대별 평균 쌀직불금(2021) .....	84
[표 3-17] 연령대·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1) .....	85
[표 3-18] 연령대·재배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2) .....	88
[표 3-19] 연령대별 평균 쌀직불금(2022) .....	89
[표 3-20] 연령대·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2) .....	90
[표 3-21] 전북 시군별 농민 소득보전 지원사업 현황 .....	93
[표 4-1] 성별 지급대상에 대한 만족도 .....	100
[표 4-2] 연령대별 지급대상에 대한 만족도 .....	100
[표 4-3] 연령대별 지급수준에 대한 만족도 .....	100
[표 4-4] 농가별 지급수준에 대한 만족도 .....	101
[표 4-5] 연령대별 농업경영과 영농활동에 대한 효과 .....	101
[표 4-6] 연령대별 농가경제와 살림살이에 대한 효과 .....	102
[표 4-7] 연령대별 생산활동 지속성에 대한 효과 .....	102
[표 4-8] 경영형태별 지원금 상향에 대한 의견 .....	103
[표 4-9] 연령대별 농업인 지원에 대한 의견 .....	103
[표 4-10] 농가소득별 농업인 지원에 대한 의견 .....	103
[표 4-11] 연령대별 지급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 .....	104

[표 4-12] 농민 공익수당 지원금 사용처 .....	105
[표 4-13] 농민 공익수당 지원금액의 사용처별 비율 .....	105
[표 4-14] 농가특성별 농민 공익수당 지원금 사용처 .....	107
[표 4-15] 전북도민의 소득 및 지출규모(201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108
[표 4-16] 사업 유형별 투입산출모형 계산 과정 .....	108
[표 4-17] 농민 공익수당 지급방식(지역화폐, 현금)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109
[표 4-18] 전북 도내 정책 유형별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	109
[표 4-19] 쌀직불금의 정량적 검토 .....	111
[표 4-20] 밭직불금의 정량적 검토 .....	113
[표 4-21]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	119
[표 4-22] 농민 공익수당 정량적 성과 .....	120
[표 4-23] 농민 공익수당 만족도(0~10점) .....	121
[표 4-24] 농민 공익수당 기대효과(0~10점) .....	121
[표 4-25] 농민 공익수당 개선과제(0~10점) .....	121
[표 4-26] 농민 공익수당 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처 비율 .....	122
[표 4-27] 전북 도내 정책 유형별 경제적 파급효과 .....	122
[표 4-28] 전북 직접 지불제 정량적 성과 .....	123
[표 5-1]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편안 개요 .....	154
[표 5-2] 개편안에 따른 농업인·농가 수령금액 .....	155
[표 5-3]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편안 소요 예산 .....	156
[표 5-4]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편안 주요 내용 .....	157
[표 5-5]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제도의 성과지표 구조 .....	158
[표 5-6]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제도의 성과지표 주요 내용 .....	159

---

## 그림 차례

### LIST OF FIGURES

---

[그림 1-1] 농가 규모 추이 .....	13
[그림 1-2] 농가인구 규모 추이 .....	14
[그림 1-3] 연령대별 농가 경영주 규모 추이 .....	16
[그림 1-4] 혼인상태별 경영주 규모 .....	17
[그림 1-5] 농업경력별 경영주의 규모 변화 .....	17
[그림 1-6] 농업종사가구원 수별 농가 규모 추이 .....	18
[그림 1-7] 경지규모별 농가 규모 추이 .....	19
[그림 1-8] 영농형태별 농가 규모 변화 .....	20
[그림 1-9] 논경영규모별 농가 규모 변화 .....	21
[그림 1-10] 밭경영규모별 농가규모 변화 .....	22
[그림 1-11] 농업경영체 규모 추이 .....	22
[그림 1-12] 논·밭 경지면적 변화 .....	23
[그림 1-13] 농업총소득 변화 .....	25
[그림 1-14] 사업외수입 변화 .....	26
[그림 1-15] 비경상소득 변화 .....	27
[그림 2-1]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진과정 .....	31
[그림 2-2] 성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0년) .....	35
[그림 2-3] 연령대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0년) .....	35
[그림 2-4] 농민 공익수당 지급방식(2020년) .....	36
[그림 2-5] 성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1년) .....	37
[그림 2-6] 연령대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1년) .....	38
[그림 2-7] 농민 공익수당 지급방식(2021년) .....	39
[그림 2-8] 성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2년) .....	40



[그림 2-9] 연령대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2년) .....	41
[그림 2-10] 농민 공익수당 지급방식(2022년) .....	42
[그림 2-11]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0~2022년) .....	43
[그림 2-12] 성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0~2022년) .....	43
[그림 2-13] 연령대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0~2022년) .....	44
[그림 2-14] 성별·연령대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0~2022년) .....	44
[그림 3-1] 연령대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0) .....	56
[그림 3-2] 논벼 재배농지 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0) .....	57
[그림 3-3] 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0) .....	57
[그림 3-4] 연령대·지급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0) .....	60
[그림 3-5] 연령대·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0) .....	62
[그림 3-6] 연령대별 쌀직불금 현황(2021) .....	62
[그림 3-7] 논벼 재배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1) .....	63
[그림 3-8] 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1) .....	63
[그림 3-9] 연령대·지급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1) .....	66
[그림 3-10] 연령대·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1) .....	68
[그림 3-11] 연령대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2) .....	68
[그림 3-12] 지급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2) .....	69
[그림 3-13] 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2) .....	69
[그림 3-14] 연령대·지급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2) .....	72
[그림 3-15] 연령대·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2) .....	74
[그림 3-16] 연령대별 밭직불금 지급현황(2020) .....	75
[그림 3-17] 재배면적별 밭직불금 지급현황(2020) .....	76
[그림 3-18] 지급금액별 밭직불금 지급현황(2020) .....	77

---

## 그림 차례

### LIST OF FIGUR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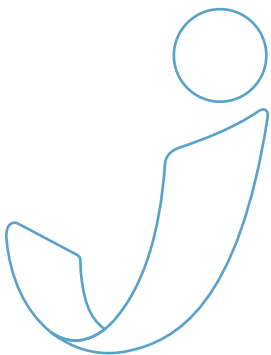
[그림 3-19] 연령대·재배면적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0) .....	78
[그림 3-20] 연령대·지급금액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0) .....	80
[그림 3-21] 연령대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1) .....	81
[그림 3-22] 재배면적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1) .....	82
[그림 3-23] 지급금액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1) .....	82
[그림 3-24] 연령대·재배면적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1) .....	84
[그림 3-25] 연령대·지급금액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1) .....	86
[그림 3-26] 연령대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2) .....	86
[그림 3-27] 재배면적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2) .....	87
[그림 3-28] 지급금액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2) .....	87
[그림 3-29] 연령대·재배면적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2) .....	89
[그림 3-30] 연령대·지급금액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2) .....	91
[그림 4-1]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2022) .....	98
[그림 4-2]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2022) .....	98



# 제 1 장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전북 농가 및 농업경영체 현황





---

# 제 1 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가. 연구배경

- 생산주의 관점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되었던 농업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 인식되며, 농업인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이루어짐
- 2015년 5월에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르면, 농업의 기본이념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으로 제시하고 있음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업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창출되는 긍정적 효과로 규정하였으며, ‘식량안보, 경관, 생태계, 수질 및 토양 보전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9에 따르면, 공익기능은 1) 식량의 안정적 공급, 2)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3)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4) 토양유실 및 홍수 방지, 5) 생태계 보조, 6)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으로 정의함
- 5개년 법정계획인 ‘2018년~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은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정책 간 체계화’, ‘치유, 문화·여가, 공동체 활동 등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재조명’, ‘건강한 먹거리 제공, 생태·경관 보전 등 공익가치 창출자로서 농업인 위상 재정립’을 제시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고 있음(김수석 외, 2018)
-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직불제’ 추진을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있음(김수석 외, 2018)
- 2018년 12월 제정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정부와 농업계의 노

---

력을 강조하고 있음

- 농업종사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 실천 기반 약화, 공익 증진 활동 실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소득 감소 또는 비용 증가로 농민 소득안정과 공익적 활동과 지위 보장을 위한 정책 수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전라북도는 2018년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위한 정책사업 논의가 전북 지역농정 거버넌스 기구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진행되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하여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2020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사업인 ‘공익직불금’과 달리, 지자체가 정부 농정을 보완·보충하고 있어, 광역-지자체가 상생하는 지자체 농정의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평가되고 있음(황영모 외, 2022)
- 지역별로 우선 증진해야 할 공익기능이 다르고, 지역 참여자의 역량이 달라 정부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전북에서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과 밭농업직불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농민 공익수당과 전북 쌀·밭직불금 간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체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로, 경영주에게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음
  - 부부, 직계존비속,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 명에게만 지급(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농민 공익수당은 농가소득 직접지원제도로, 공동경영주 여성농업인, 청년농, 경영주 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에서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하

고 있어 농민 공익수당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논·밭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며 논·밭작물을 경작하는 도내 농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과 밭농업직불금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이들 사업은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m<sup>2</sup> 이상 농업활동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쌀직불금의 경우, 지급 면적은 재배면적이 0.1~3.0ha, 밭직불금은 0.1~1.0ha로 하고 있으며, 지급방식은 면적직불제로, 지급단가는 2022년 기준으로 각각 13만원/ha, 7만원/ha임
- 쌀·밭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으나, 전북 쌀·밭직불금은 농지 면적이 클수록 유리하고, 밭농가의 공익적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이들 제도의 직불금 산정방식은 정부 공익직불제와 같이 면적직불제로 하고 있어 제도적 개편 논의 때 정부 방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무엇보다도 농민 공익수당, 전북 쌀직불금, 전북 밭직불금 등 유사 사업들이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분산된 사업 집행에 따른 사업별 적은 지원금 지급으로 농업인의 정책 이해도와 만족도가 낮은 실정임
- 이와 함께, 시군별 자체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어 농업인의 각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전북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역할 인정을 위한 4개 사업의 지원금 운용을 위한 분산된 행정 채널들로 발생하는 낮은 행정적 효율성, 관련 데이터 취합의 어려움,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및 집행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다양한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의 추진현황과 지원체계 진단을 통해 농업인 소득보

---

전 지원체계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강화와 농업 주체로서 자긍심과 자존감 제고를 위한 정책 효과와 성과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나. 연구 목적 및 방법

###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전북 농업인의 공익적 활동 인정·증진과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들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지원사업들이 운영되는 체계를 진단·분석하고자 함
-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현안 파악과 진단과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 주체로서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며, 이들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 연구방법

- (선행연구와 문헌검토)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의 현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하고, 이 연구의 이론적 틀로 활용하고자 함
- (행정자료와 통계자료) 전북의 농가, 농가인구, 경영체, 농지 특성, 소득 등 정보를 통해 전북 농업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특히, 농업인의 소득과 이전소득의 현황에서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의 논의를 위한 현안을 발굴해 보고자 함
- (농민 공익수당 정책 동향 및 추진현황) 지난 3년간 농민 공익수당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타 시도의 농민수당과의 비교를 통해 전북 농민 공익수당이 당면한 과제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 (전북 직접 지불제 정책 동향 및 추진현황) 지난 3년간 쌀·밭직불금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쌀직불금과 밭직불금의 지급방식에서의 현안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진단) 농업인의 농민 공익수당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 정도를 통해 농업인의 농민 공익수당에 대한 인식 파악, 사업 지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검토, 전문가들의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진단과정을 통하여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의 한계와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개편안 설계)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의 추진현황 및 한계점 파악과 개선 방향 도출을 통해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제시된 개편안이 적용되었을 때 기대효과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모두 살펴보고자 함

---

## 2. 선행연구 검토

---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농민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민 (공익)수당이 도입·시행되고 있음
- 지자체 차원의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인 농민 (공익)수당이 각 시도별로 추진되며, 농민 (공익)수당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이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함
- 농민수당이 추진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의 농민 소득보전 관련 연구들은 농민수당의 도입 배경과 의미를 논의하며, 농민수당이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익직불제와 유사함을 강조하고,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 비교와 제도별 주요 쟁점을 검토·논의함
  - 두 제도 모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유지를 위해 농민의 공익활동 참여 도모를 위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 공익직불제 : 농민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을 위한 지급(미래지향적)
  - 농민수당 : 농민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에 대한 대가 지급(현재까지 기여인정)
  - '공익' 개념의 모호성, 농민수당의 지역 간 형평성, 사회적 약자군의 보충적 의미에서 사회수당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여부, 농민수당과 공익직불제의 정책목표 중복 등
- 농민수당의 농가경제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이 등장하였으며, 해당 연구들은 정성 또는 정량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농민수당의 파급효과를 파악함
  - 농민수당의 정성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당을 받은 농민의 체감효과, 지역·사회적 영역의 기대효과 등의 기대효과와 농민의 공익적 활동 참여, 정책효과 등의 기대태도 등을 제시함
  - 정량적 효과를 제시한 연구들은 농가경제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로 지역 내 산업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 창출효과 등이 있음을 제시함
- 해당 연구들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유지와 함께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자체의 제도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함

- 농민 정의 검토, 정책목적의 강조와 확대, 정책효과의 지속 평가와 자료작성, 이행조건 준수강화와 자율 실천 확대, 지원대상과 지원액의 확대·상향, 지급방식(선별적, 차별적), 농민수당의 차등지원제도 개선 등

[표1-1] 지자체의 농민 소득보전제도 관련 선행연구 검토

구분	주제	주요내용
<p>황영모 외(2022)</p>	<p>1) 농어민 공익수당 2) 농민의 정책 인지·지원금 사용·준수사항 이행수준 3) 농민 공익수당 파급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년부터 논의되어 2020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과 정책 수용 정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가계, 생활’ 지원에 대한 기대와 달리, 지급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낮음</li> <li>- 농자재, 식재료, 생활용품 구입에 수당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음</li> <li>- 이행조건의 완화, 신청절차의 간소화, 지급 제외 기준의 완화, 분할지급과 사용처 확대, 농업인 지원, 지원금 상향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li> </ul> </li> <li>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대효과 : 연령, 농가소득, 경영형태, 거주지, 사업인지도, 만족도, 준수사항 이행수준 등에 따른 체감효과, 지역·사회적 영역에서 기대효과, 개인 계획 차이 발생</li> <li>- 기대태도 : 비료·농약 적정사용 이행정도와 조건 만족도, 정책목표·지급방법 만족도, 사용처 확대 요구, 경영형태, 연령 등이 사업에 대한 기대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효과 기대태도, 비료·농약 적정사용 이행정도, 연령, 지급대상 만족도가 이행조건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침</li> <li>- 파급효과 : 산업생산, 부가가치, 고용 증가 등으로 지역산업의 활성화</li> </ul> </li> <li>정책사업 개선을 위해 ‘정책목적의 강조와 확대’, ‘정책효과의 지속 평가와 자료작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추진’, ‘신청절차와 서류 간소화’, ‘이행조건 준수강화와 자율실천 확대’, ‘지원의 투명성 확보’, ‘지원대상과 지원액의 확대·상향’ 등을 제시함</li> </ul>

구분	주제	주요내용
유찬희(2021)	1)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의 쟁점 논의 2) 제도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농촌의 인적자원의 취약화, 농업소득의 비중 감소 및 양극화 → 농민수당의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li> <li>▪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은 소득 지원 자체가 목적이지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수단이므로 이 두 제도는 복지정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li> <li>▪ 공익직불금과 농민수당 지급 근거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유지에서 '공익' 개념 자체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 제기</li> <li>▪ 농민수당과 기본직불제의 통합 → 농업의 부정적 외부효과 감소와 농민소득 문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 가능성이 있음. 기본직불금 단가를 높이고 농가 구성원 개인 단위로 지급</li> <li>▪ 기본소득의 개별성을 반영한 인적 지불 방식 제안</li> </ul>
유찬희·김태영(2020)	1)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기본소득 비교 2) 제도별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이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농가소득 지원제도인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기본소득을 비교 분석함</li> <li>▪ 공익(기본)직불제는 농민수당과 유사하지만,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을 위한 대가 지급(미래지향적),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대가 지급(현재까지 기여인정)으로 목적의 차이가 있음</li> <li>▪ 농가소득 직접지원 제도 논의 시 농민수당과 공익직불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함</li> <li>▪ 농가소득 직접지원 제도는 농민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음</li> <li>▪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명확히 설정하고 농업인과 납세자의 동의할 수 있어야 함</li> <li>▪ 제도운영에서 정책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함</li> <li>▪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정책 대상 범위, 농민정의 검토, 농업 예산 구조 검토 등을 논의함</li> </ul>

구분	주제	주요내용
박준기 외(2019)	1) 지자체 농가소득 지원사업 실태 분석 2)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수당 : 공익적 역할을 조건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업적 성격이 있으며, 공익직불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농민수당의 불명확한 성격, 농민수당 지급 대상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내 비농업부문 소외 등 갈등 소지가 있음을 고려해야 함</li> <li>▪ 지자체의 농가 소득지원사업은 국비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직불제)</li> <li>▪ 지원방식에서 쌀 위주, 지원방식의 형평성 문제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li> <li>▪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추가 지원사업(직불금) : 중앙정부 소득지원사업만 시행되었을 때보다 비효율성을 초래함 → 지역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지장 초래, 특정 품목이나 농가에 지원이 집중 등</li> <li>▪ 지자체의 소득지원사업은 농가를 차별적,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적합함</li> <li>▪ 농민수당 : 직불제도 농업인의 공익증진 역할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농민수당과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농업활동 비중이 높은 농업인 배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li> </ul>
김태영 외(2022)	1) 농민수당의 농가경제 파급효과 2) 농민수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수당은 지역별로 생산, 부가가치, 고용유발효과 차이가 났으며, 비례하는 경향을 보임</li> <li>▪ 경영주 연령별 소비 양상에 따르면 70대 농가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지출 양태 변화를 보임</li> <li>▪ 지역 내 산업 생산유발효과 : 음식료품, 농림수산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산업 등 순(지역화폐의 효과)</li> <li>▪ 부가가치유발효과 :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등 순</li> <li>▪ 전국 단위 고용 창출효과 : 12,705명으로 추정</li> </ul>
진성만·조기현 (2020)	1) 농민수당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2) 농민수당제도의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수당제 운용 쟁점 :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현재 수당 및 소득보장제도와와의 중복성 존재, 공익직접직불제와 유사한 지급 목적, 사회적약자군의 보충적 의미의 사회수당으로 충분한지 여부</li> <li>▪ 농민수당의 차등지원제도 개선 필요 : 장기적 경직성경비 확대로 재정활동 제약 → 농가기본소득보장제로 대체 시 최저 지원금액에 대한 분석 논의 필요</li> </ul>

구분	주제	주요내용
최영준 외(2022)	1) 농가소득 현황 파악 2) 농민 소득지원정책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8년 이래 농업소득은 1,000만원 내외로 정체되어 있으며, 농외소득 및 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li> <li>▪ 농민수당과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정책목표 중복, 지급요건 적절성 검토 필요, 농민수당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li> <li>▪ 정책집행체계 통합 필요, 농민수당 예산의 지속가능성의 한계</li> <li>▪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은 농민, 농가 소득 안정과 공익적 기능 증진 목표 달성에 대해 유보적인 평가 존재</li> <li>▪ 직불제, 농민수당 : 농가소득증대, 농가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li> <li>▪ 농가 소득지원 제도 개편안 : 면적직불금 + 농민기본수당</li> </ul>
이수미(2019a)	1) 농민수당 등장배경 및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수당의 의미 : 농민들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인정</li> <li>▪ 전국 추진현황 : 전남 해남군의 도입을 계기로 타지자체로 확산</li> </ul>
이수미(2019b)	1) 농민수당과 기본소득제 간 관계 2) 중앙 직불제와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수당은 농민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li> </ul>
이수미(2019c)	1) 농민수당을 통한 지역경제 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수당의 지급방식을 지역화폐로 했을 때 가지는 가치와 효과 강조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증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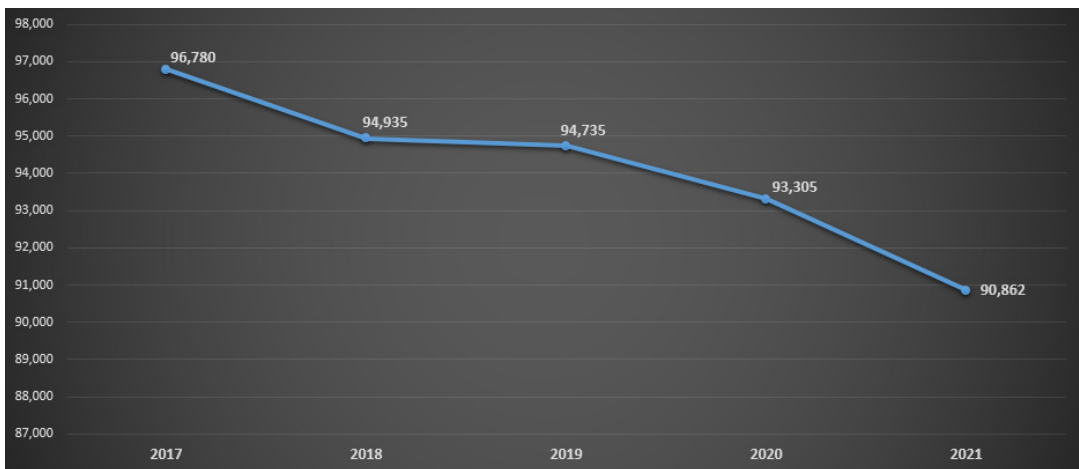
### 3. 전북 농가 및 농업경영체 현황

#### 가. 전북 농가 및 농지 현황

##### ■ 농가 및 농가인구

-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 농가 규모는 2017년 기준 96,780가구에서 2019년 94,735가구, 2021년 90,862가구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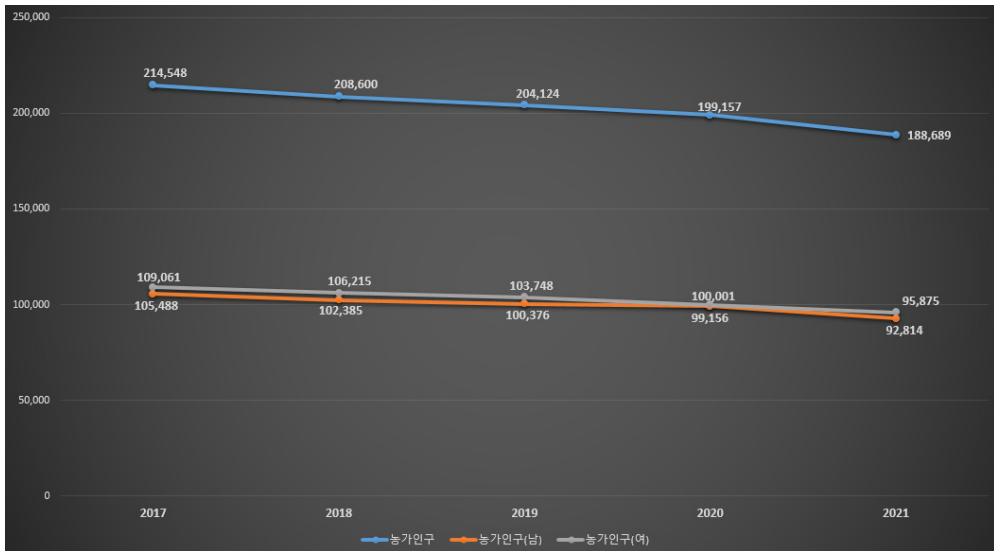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각 년도). 농림어업조사

[그림 1-1] 농가 규모 추이

- 농가인구 또한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2017년 214,548명, 2019년 204,124명, 2021년 188,689명으로 집계됨
- 농가인구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성 농가인구는 2017년 기준 105,488명에서 2021년 95,875명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여성 또한 2017년 109,601명에서 2021년 92,814명으로 감소함

(단위 : 명)



출처 : 통계청(각 년도). 농림어업조사

[그림 1-2] 농가인구 규모 추이

- 지난 4년간(2017~2020년) 전북 내 농업인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농업인의 수는 경영주 145,328명, 경영주 외 농업인 76,086명을 포함한 221,414명으로 집계됨
- 2018년의 경우, 농업인은 경영주 145,984명과 경영주 외 농업인 72,934명을 합한 218,918명이었으며, 2019년은 219,674명(경영주 149,093명, 경영주 외 농업인 70,581명), 2020년은 226,527명(경영주 156,708명, 경영주 외 농업인 69,819명)으로 집계됨
- 여성농업인의 규모를 지난 4년간 살펴본 결과, 2017년 여성농업인은 108,886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47.3%를 차지하였으나, 여성 경영주의 규모는 전체 경영주 145,328명 중 27.8%에 해당하는 40,352명이었음
- 경영주 외 농업인 76,086명 중 여성은 64,534명으로, 전체 중 84.8%를 차지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중 배우자는 58,333명으로, 이 중 공동경영주인 경우는 1,494명으로 집계됨



- 지난 4년간 여성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경영주 156,708명 중 여성은 47,443명으로 전체의 30.3%를 차지하였으며, 공동경영주는 2017년에 비해 1,347명이 증가한 2,841명으로 집계됨

[표1-2]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추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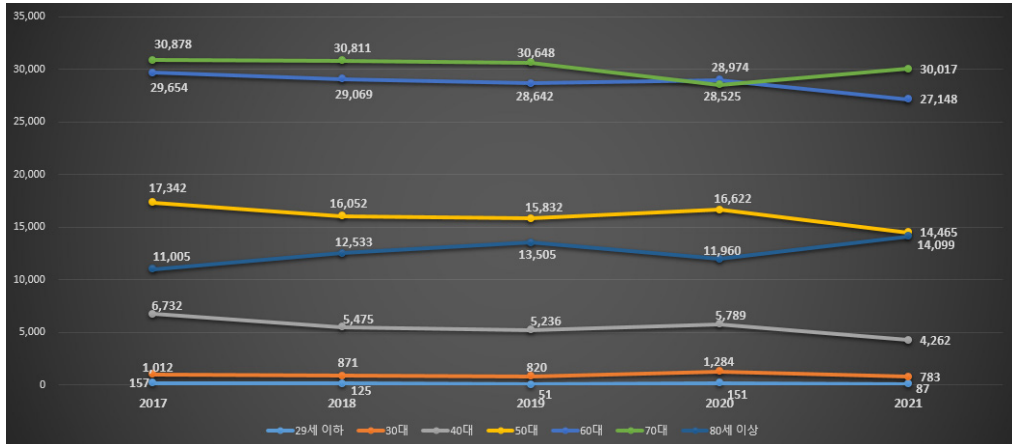
구분	농업인(A+B)	경영주(A)	경영주 외 농업인(B)				
			여성	여성	배우자	공동경영주	
2017	221,414	145,328	40,352 (27.8%)	76,086	64,534 (84.8%)	58,333	1,494
2018	218,918	145,984	41,406 (28.4%)	72,934	61,895 (81.4)	54,223	1,600
2019	219,674	149,093	43,469 (29.2%)	70,581	59,835 (84.8%)	51,292	2,465
2020	226,527	156,708	47,443 (30.3%)	69,819	58,969 (84.5%)	50,196	2,841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연감.

- 연령대별로 농가 경영주 규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7년 기준 70대가 30,878명(31.9%)으로 전체 농가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60대가 29,654명(30.6%), 50대 17,342명(17.9%), 80세 이상 11,005명(11.4%) 등 순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70대 경영주 수는 2017년 30,878명에서 2021년 30,017명으로, 60대 경영주는 29,654명에서 27,148명, 50대는 17,342명에서 14,465명, 40대는 6,732명에서 4,262명으로 감소함
- 반면, 80세 이상 경영주는 2017년 기준 11,005명에서 2021년 14,099명으로 증가함
- 2021년 기준, 경영주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70대가 30,017명(33.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60대가 27,148명(29.9%), 50대 14,465명(15.9%), 80대 14,099명(15.4%) 등 순이었음

- 지난 5년간 70세 이상 경영주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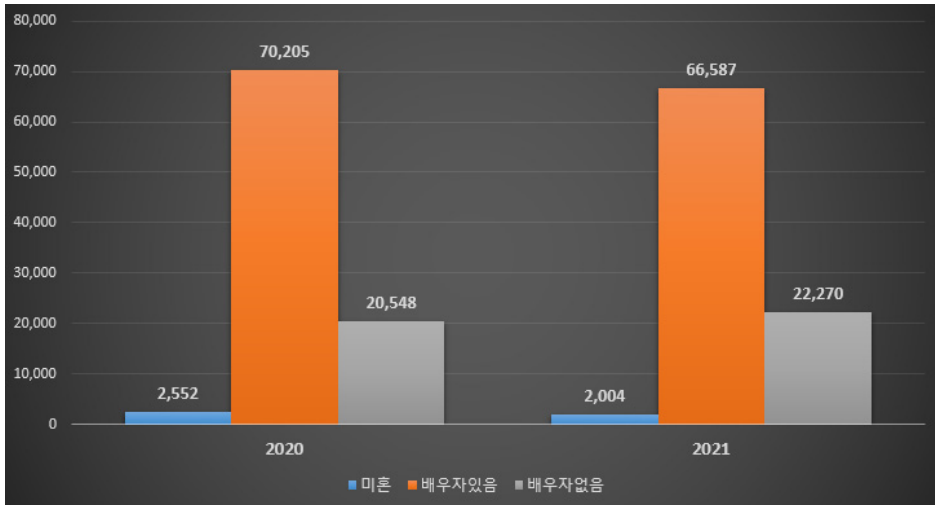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각 년도). 농림어업조사.

[그림 1-3] 연령대별 농가 경영주 규모 추이

- 경영주의 혼인상태별 농가 규모를 살펴본 결과, 2020년과 2021년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영주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20년은 70,205명으로, 2021년은 66,587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가구 중 비중은 각각 75.2%, 73.3%이었음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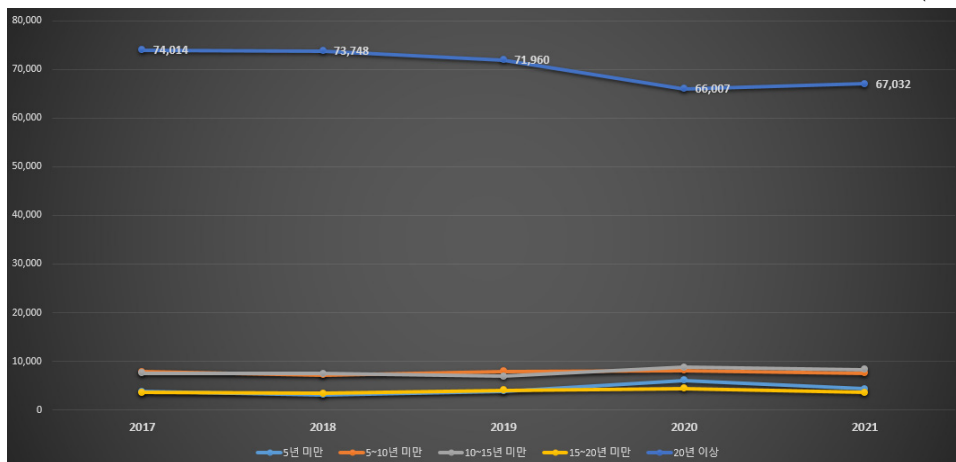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각 년도). 농림어업조사.

[그림 1-4] 혼인상태별 경영주 규모

- 지난 5년간 경영주의 농업경력을 살펴본 결과, 20년 이상인 경영주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2021년 기준 73.8%), 2017년 기준 74,014명에서 2021년 67,032명으로 감소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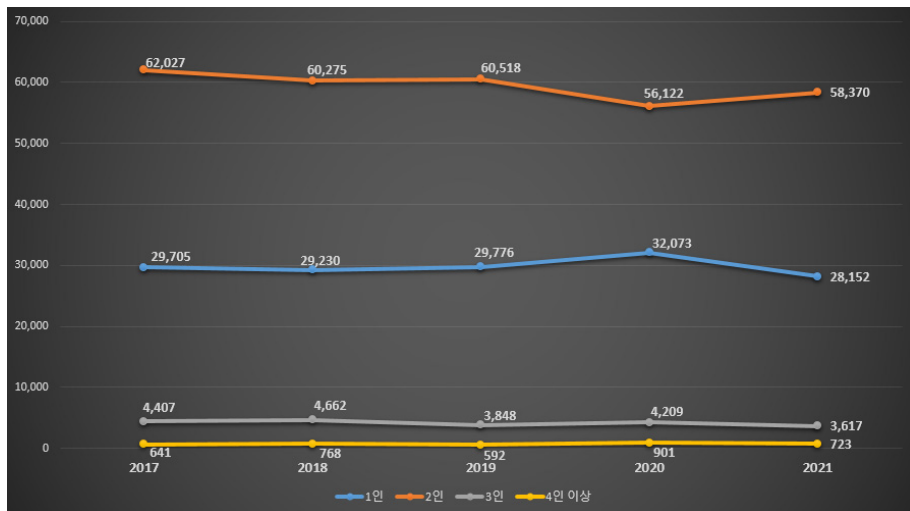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각 년도). 농림어업조사.

[그림 1-5] 농업경력별 경영주의 규모 변화

- 지난 5년간 농가의 농업종사가구원 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인가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농가 중 2017년은 64.1%, 2018년 63.4%, 2019년 63.9%, 2021년 64.2%의 비중을 차지함
- 다음으로, 가구원 1인만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2017년 29,705가구에서 2021년 28,512가구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0.7%, 2021년 31.4%로 나타남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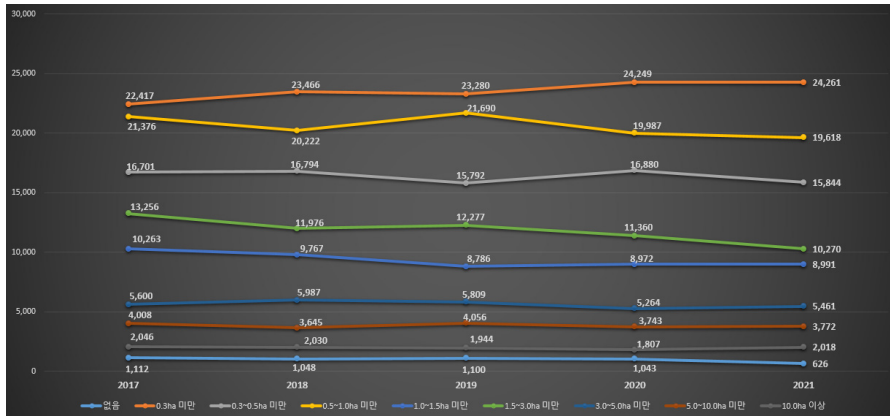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각 년도). 농림어업조사.

[그림 1-6] 농업종사가구원 수별 농가 규모 추이

- 경지규모별 농가 규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지난 5년간 0.3ha 미만의 경작지를 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기준 22,417가구에서 2021년 24,261가구이었음
-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0.6~1.0ha 미만 경지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규모는 2017년 21,376가구에서 2021년 19,618가구로 감소하였으며, 10.0ha 이상 경작지 또한 2017년 16,701가구에서 2021년 15,844가구로 감소함

- 다음으로, 1.5~3.0ha 미만 경작지의 경우, 2017년 기준 13,256가구로 집계되었으나, 2021년 10,270가구로 나타남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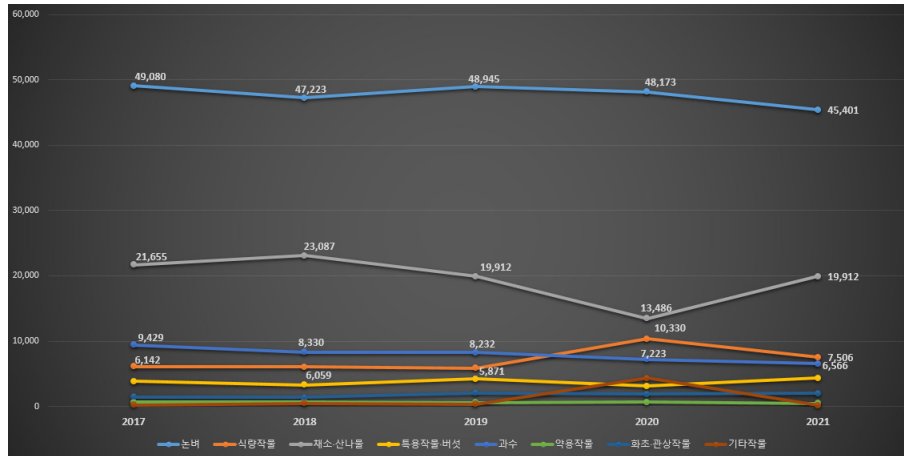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각 년도). 농림어업조사

[그림 1-7] 경지규모별 농가 규모 추이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영농형태별 농가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논벼의 경우, 2017년 기준 49,080가구에서 2021년 45,401가구로 감소함
- 다음으로, 채소·산나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2017년 21,655가구에서 2021년 19,912가구로 감소함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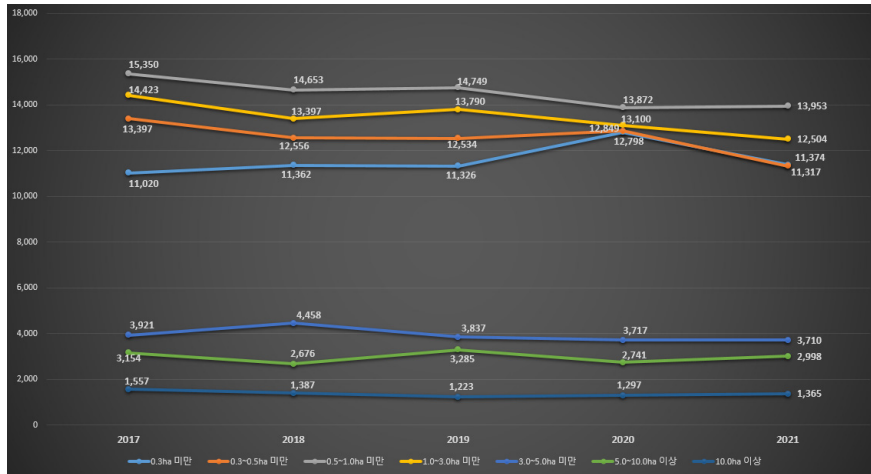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각 년도). 농림어업조사.

[그림 1-8] 영농형태별 농가 규모 변화

- 논경영규모 중심으로 농가 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논 재배면적이 0.5~1.0ha 미만이었으며, 해당 농가는 2017년 15,350가구에서 2021년 13,953가구로 감소하였음
- 다음으로 1.0~3.0ha 미만은 2017년 14,423가구에서 2021년 12,504가구로 감소하였으며, 0.3~0.5ha 미만인 농가는 13,397가구에서 11,317가구로 감소하였으나, 0.3ha 미만은 11,020가구에서 11,374가구로 증가함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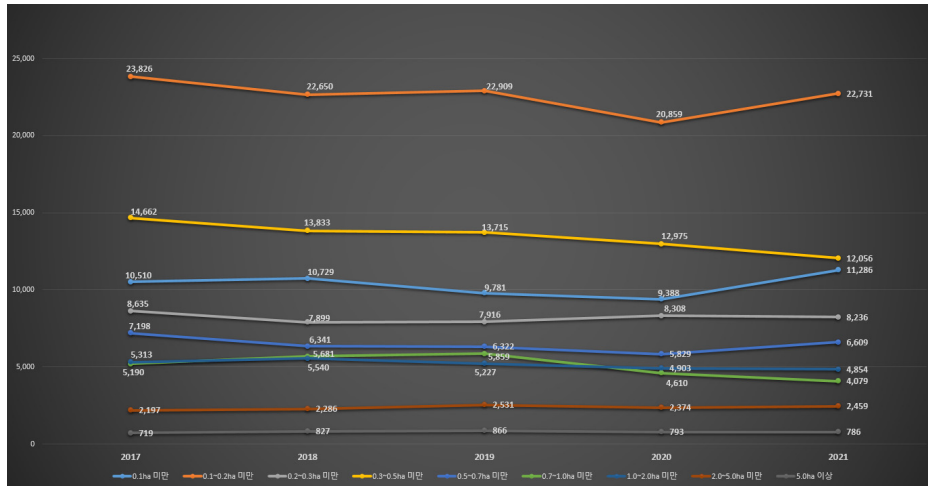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각 년도), 농림어업조사.

[그림 1-9] 논경영규모별 농가 규모 변화

- 지난 5년간 밭경영규모에 따른 농가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재배면적은 0.1~0.2ha 미만이었으며, 해당 재배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2017년 23,826가구로 집계되었으며, 2021년은 1,095가구가 감소한 22,731가구로 나타남
- 다음은 0.3~0.5ha 미만인 농가의 경우, 2017년 14,622가구에서 2021년 12,056가구로 감소하였으나, 0.1ha 미만 농가는 10,510가구에서 11,286가구로 증가함
- 0.2~0.3ha 미만인 농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8,635가구에서 2021년은 8,236가구로 지난 5년과 비교해 다소 감소함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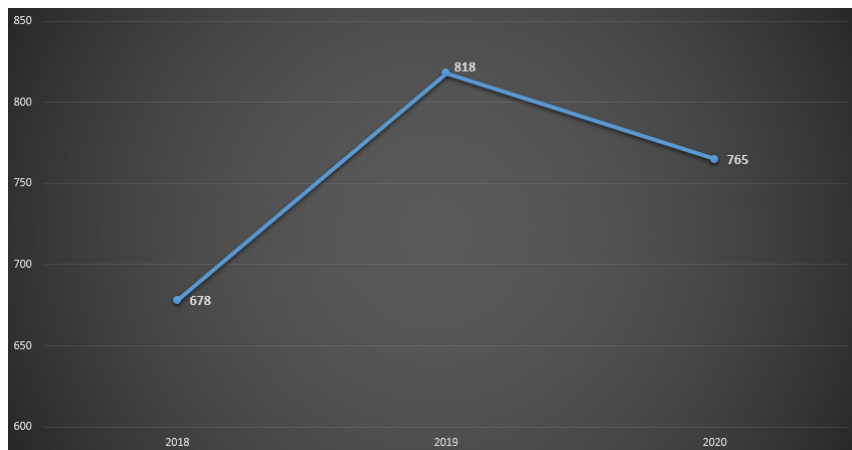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각 년도), 농림어업조사.

[그림 1-10] 발경영규모별 농가규모 변화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2018년 678개로 집계되었으며, 2019년은 818개, 2020년 765개이었음

(단위 : 개)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각 년도), 농업법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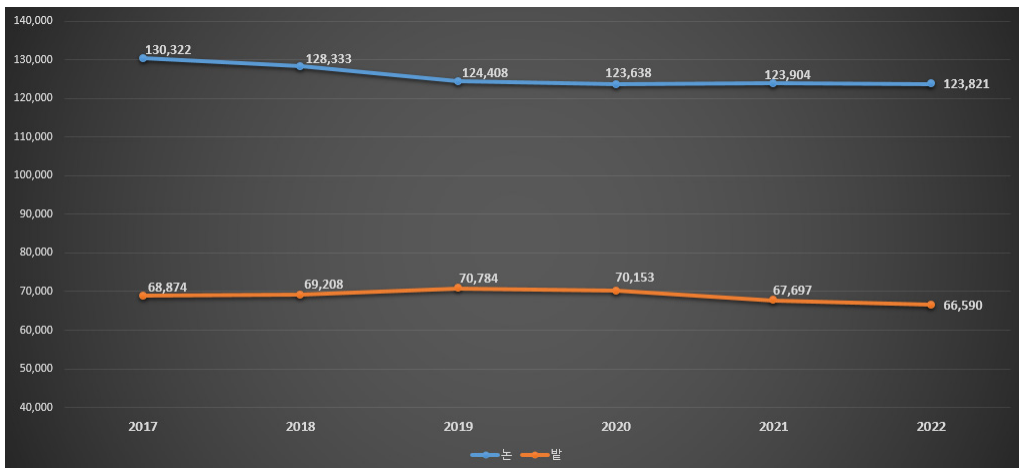
[그림 1-11] 농업경영체 규모 추이



## 나. 전북 경지

- 지난 6년간(2017년~2022년) 전라북도 경지면적을 살펴보면, 2017년 199,196ha에서 2022년 190,410ha이었으며, 경지면적은 꾸준히 감소하였음
- 논 경지면적의 경우, 2017년 150,322ha에서 2022년 123,812ha로 나타났으며, 밭 경지면적은 2017년 기준 68,874ha에서 2022년 66,590ha로 감소하였음

(단위 : ha)



출처 : 통계청(각 년도). 농림어업조사.

[그림 1-12] 논·밭 경지면적 변화

- 2022년 기준 시군별 논 경지면적을 살펴본 결과, 김제가 20,815ha로 전북 논벼 재배 면적의 16.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익산이 17,871ha(12.3%), 정읍 14,574ha(11.8%), 부안 13,518ha(10.9%) 등이었음
- 밭작물 재배면적의 경우, 고창이 10,792ha(1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정읍 6,777ha(10.2%), 완주 6,699ha(10.1%), 김제 5,632ha(8.5%) 등 순으로 나타남

[표1-3] 시군별 논·밭 경지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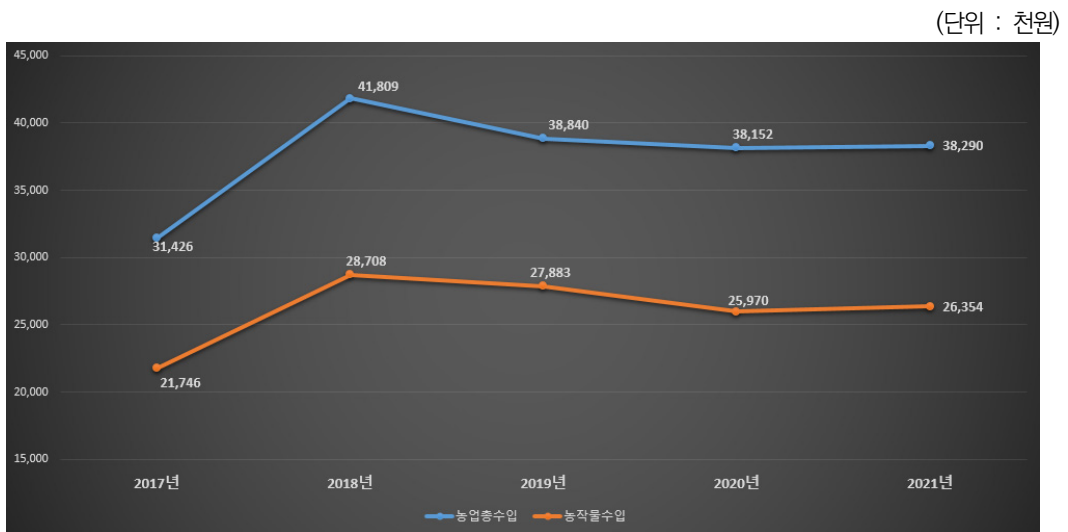
(단위 : ha)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논	2,611	12,281	17,871	14,574	10,053	20,815	3,862	1,830	789	2,816	4,137	5,947	12,717	13,518
밭	2,255	1,520	4,733	6,777	4,227	5,632	6,699	5,053	4,090	3,889	3,019	3,664	10,792	4,241

출처 : 통계청(2022). 농업면적조사.

## 다. 전북 농민 소득

-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농가의 농업총소득을 살펴보면, 2017년 31,426천원에서 2018년 41,809천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 38,840천원으로 감소하여 2021년까지 38,000천원대를 유지함
- 농작물수입을 살펴보면, 2017년 21,746천원이었던 농작물수입이 2018년 28,708천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 26,354천원으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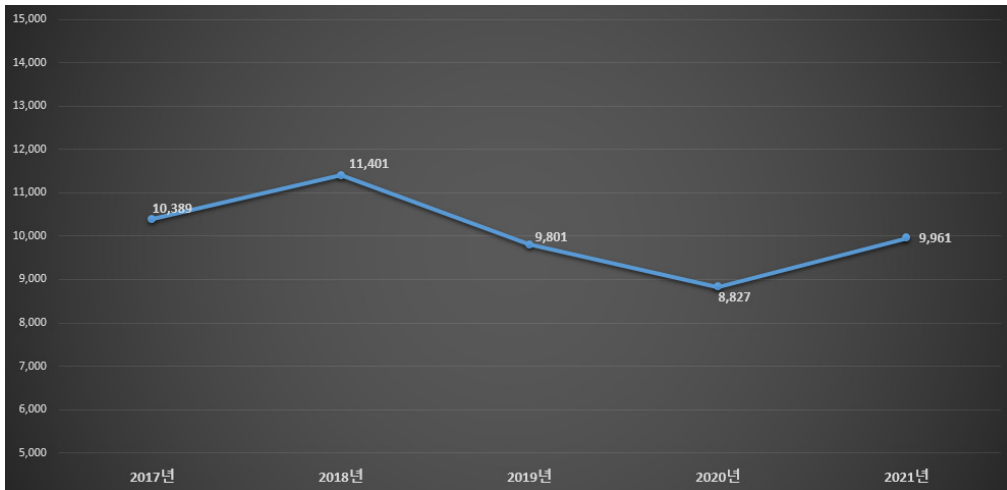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각 년도). 농가경제조사.

[그림 1-13] 농업총소득 변화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농가의 사업외수입을 살펴보면, 2017년 10,389천원에서 2018년 11,401천원으로 증가함
- 2018년 사업외수입은 2020년까지 감소하여 2018년 11,401천원에서 2020년 8,827천원으로 나타남
- 2021년 사업외수입은 2020년보다 1,134천원 증가한 9,961천원으로 나타남

(단위 : 천원)



출처: 통계청(각 년도). 농가경제조사.

[그림 1-14] 사업외수입 변화

- 농가 이전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9,347천원에서 2021년 16,403천원으로 나타남
- 공적보조금 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8,709천원에서 2021년 15,586천원이었음
- 이중 농업보조금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2,398천원에서 2020년 5,275천원이었으나, 2021년은 2020년 대비 다소 감소한 4,967천원으로 나타남
- 사적보조금을 살펴본 결과, 2017년 638천원에서 2021년 817천원으로 증가함

[표1-4] 이전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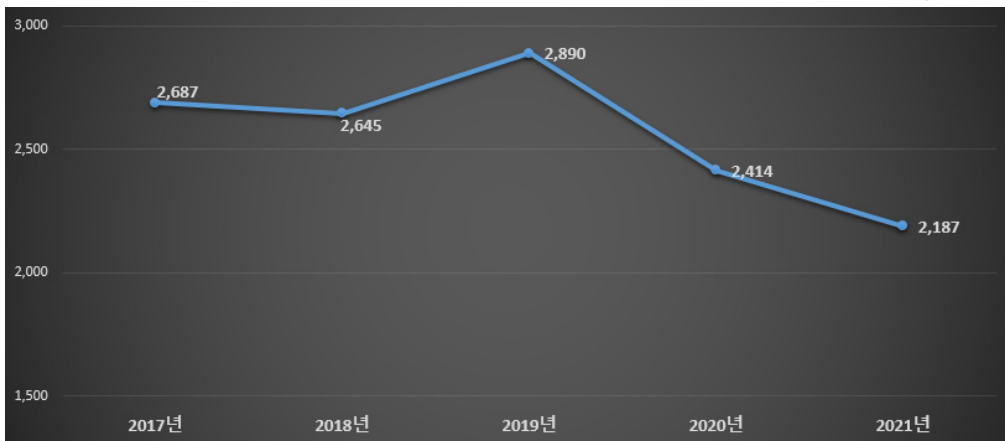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분	이전소득	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
		농업보조금	기타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	
2017	9,347	8,709	2,398	6,311	638
2018	10,998	10,333	3,004	7,330	665
2019	12,570	11,934	3,702	8,232	636
2020	15,943	15,175	5,275	9,900	767
2021	16,403	15,586	4,967	10,619	817

출처 : 통계청(각 년도). 농가경제조사.

- 농가 비경상소득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살펴본 결과, 2017년 2,687천원에서 2019년 2,890천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1년 2,187천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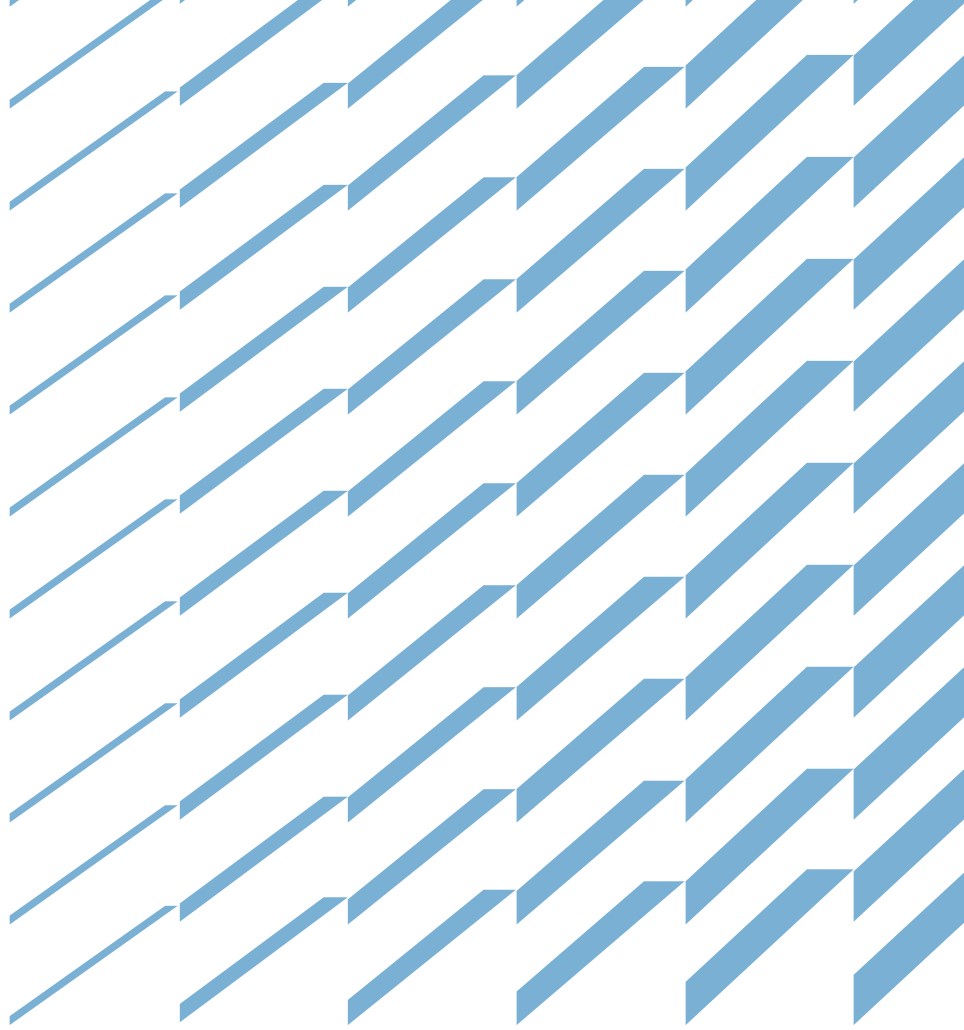
(단위 : 천원)



출처 : 통계청(각 년도). 농가경제조사.

[그림 1-15] 비경상소득 변화





## 제 2 장

### 전북 농민 공익수당 개요 및 추진현황

1.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개요
2. 전북 농민 공익수당 추진현황
3. 타시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현황







## 제2장 전북 농민 공익수당 개요 및 추진현황

### 1.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개요

#### ■ 1) 추진과정<sup>1)</sup>

- 2018년 3월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농민 공익수당'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논의가 시작되었고, 전북도는 3월부터 7월까지 농업인단체, 전문가, 행정 등으로 구성된 '삼락농정 농가 직불제 논의TF'를 구성하여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함
-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농민 공익수당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정책 준비를 시작함
-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운영된 '공익형 직불제 논의 TF'는 농민 공익수당을 위한 기본계획, 주요내용, 지급조건, 지급금액, 재정여건 등의 기틀을 마련함
- 2019년 1월에 마련된 농민 공익수당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14개 시군과의 정책 실무협의, 도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농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시행한 후 2019년 7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농민 공익수당'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음
- 2019년 7월 전라북도는 지역농정 시책인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사회보장제도로 신설협의를 신청하여 2019년 9월에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9월에 의결되어 10월에 공포되었음
- 2020년 농민 공익수당 지원을 위한 예산(안)은 도의회에서 의결되어 총 613억원(도비 245, 시군비 368, 재원분담률 40:60)을 마련함
- 2020년 사업 진행 이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어가'와 '양봉농가'에 대한 논의

1) '황영모, 김시백, 배균기, 정호중, 박로운. (2022). 전북 농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진단과 개선방향. 전북연구원.'을 재정리함

가 진행되며, 어가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양봉농가는 2021년부터 지원사업에 포함 시킴

- 2020년 11월 지원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



[그림 2-1]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진과정

## 2)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해당 조례에서는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전북도 내에서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내에 있으며,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를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농민 공익수당은 각 지급 대상별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시군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과 같은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

### ■ 3)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증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음
- 2020년부터 시행된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위한 재정투입 규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429억원에 해당됨

[표 2-1] 연도별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재정투입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100%)	3,429	643	676	698	706	706
도비(40%)	1,370	257	270	279	282	282
시군비(60%)	2,059	386	406	419	424	424

출처 : 전라북도(2023). 2023년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시행지침.

-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된 사람(농가)'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통요건]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을 것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항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일 것

#### [개별요건]

- (농가) 신청연도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 또는 전라북도와 연결한 타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양봉농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일 것

-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1) 부부, 직계존비속,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한 명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2)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부부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됨
- 3) 부부, 직계존비속,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 한 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며, 4) 농업과 양봉업, 수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함
-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농가라도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농민 공익수당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연도(2023년 기준 2021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sup>2)</sup>
2.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4.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5.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
6.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 (농업)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 (양봉농가)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 및 꿀벌 병해충 방역

-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일괄 지급하고 있음

- 
- 2)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2) (확인방법)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자로 간주
  - 3)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미수령자의 경우, 신청자가 세무서에서 신청 전전년도 최근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

## 2. 전북 농민 공익수당 추진현황

-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운용을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계획)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 3,429억원이며, 도비는 1,370억원(40%), 시군비는 2,059억원(60%)임
- 2023년 사업비는 706억원(도비 282억원, 시군비 424억원)으로 농가당 연1회 60만원이 일괄 지급됨

[표 2-2]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계	2,723	643	676	698	706	
도비	1,088	257	270	279	282	
시·군비	1,635	386	406	419	424	

### 가. 2020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

-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시행 첫해인 2020년의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다음 [표 3-2]와 같음
- 익산이 전체 경영주 중 10.9%를 차지하였으며, 정읍 10.1%, 김제 9.7%, 고창 9.7%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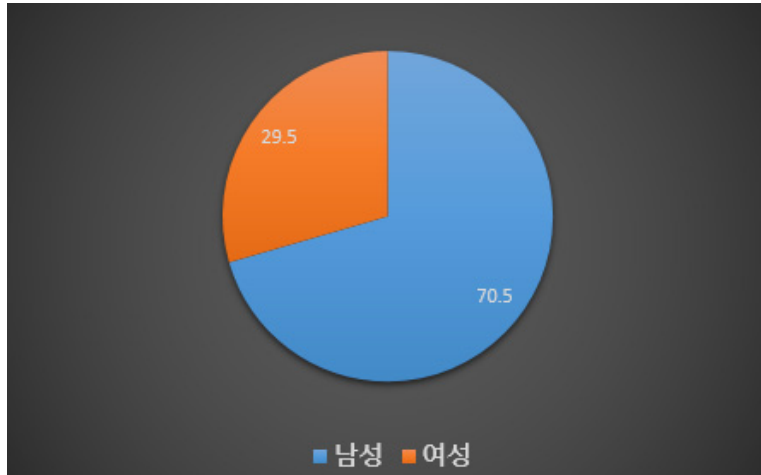
[표 2-3] 시군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0년)

(단위 : %)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00.0	4.3	7.1	10.9	10.1	9.2	9.7	8.3	4.5	4.6	4.6	5.0	5.5	9.7	6.6

- 농민 공익수당을 받은 경영주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 경영주는 전체 중 70.5%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29.5%가 농민 공익수당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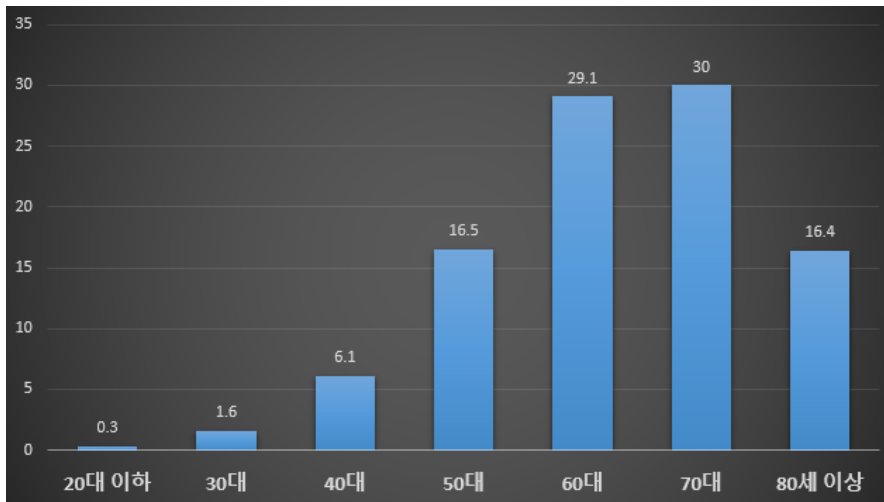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2-2] 성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0년)

- 2020년 농민 공익수당을 받은 농업인의 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70대 농민이 전체 중 30.0%가 받았으며, 다음으로 60대가 29.1%, 50대 16.5%, 80세 이상 16.4% 등이었음

(단위 : %)



[그림 2-3] 연령대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0년)

-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전체 중 60대가 30.6%, 70대 29.1%, 50대 이하 26.1% 등이 농민 공익수당을 받음
- 여성은 70대가 전체 중 32.0%가 농민 공익수당을 받았으며, 60대가 25.5%, 80세 이상 21.7% 등 순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받은 비중이 높은 순으로 나타남

[표 2-4] 성별·연령대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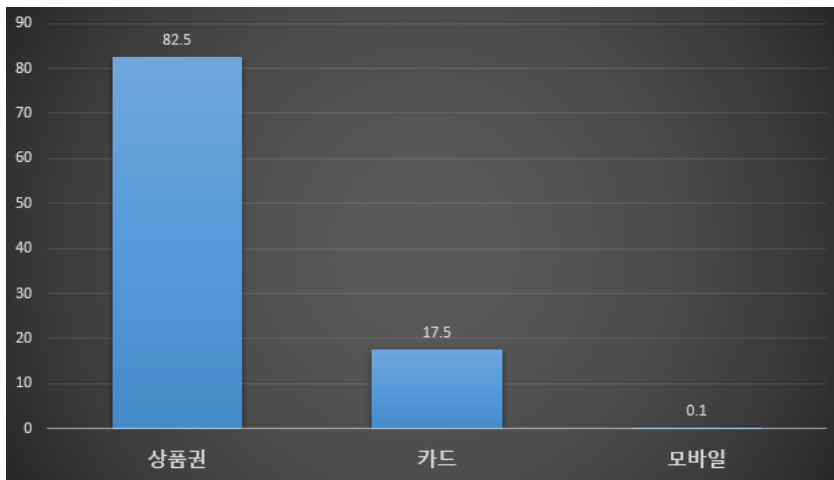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50대 이하	60대	70대	80세 이상	$\chi^2$
남성	26.1	30.6	29.1	14.1	1382.429***
여성	20.8	25.5	32.0	21.7	

\*\*\*  $p < 0.001$

- 총 농민 중 82.5%가 상품권으로 받았으며, 카드로 수당을 받은 농민은 17.5%를 차지함

(단위 : %)



[그림 2-4] 농민 공익수당 지급방식(2020년)

## 나. 2021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

- 2021년 농민 공익수당을 받은 경영주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익산에서는 10.9%, 정읍 10.0%, 남원 9.6%, 김제 9.4%, 고창 9.3% 등이 농민 공익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2-5] 시군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1년)

(단위 : %)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00.0	4.6	7.2	10.9	10.0	9.6	9.4	8.3	4.6	4.5	4.6	4.9	5.5	9.3	6.5

- 성별로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중 남성이 69.8%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30.2%로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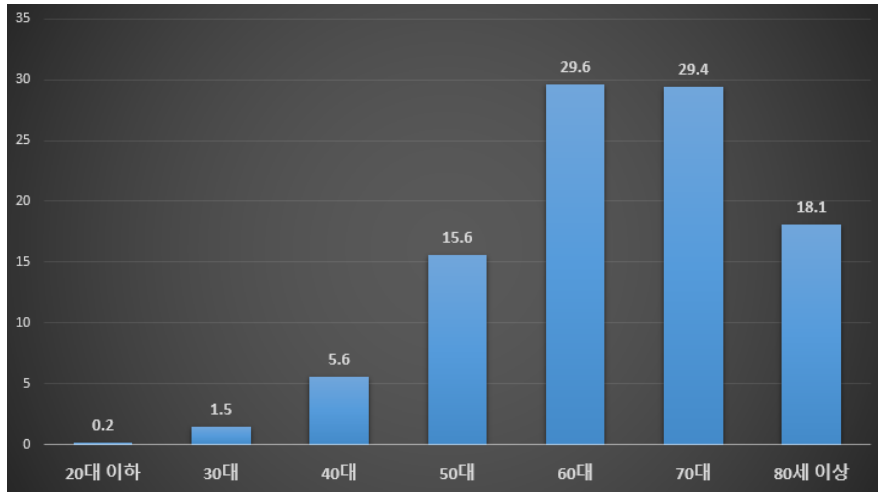


[그림 2-5] 성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1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116,633명 중 60대 농민 29.6%가 농민 공익수당을 받았으며, 70대가 29.4%, 80세 이상 18.1%, 50대 15.6% 등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받음



(단위 : %)



[그림 2-6] 연령대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1년)

- 연령대와 성별로 농민 공익수당을 농민에게 지급한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전체 중 60대 31.2%, 70대 28.9%, 50대 이하 24.3% 등이 농민 공익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전체 중 30.4%가 농민 공익수당을 받았으며, 60대 26.0%, 80세 이상 23.9% 등이 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 성별·연령대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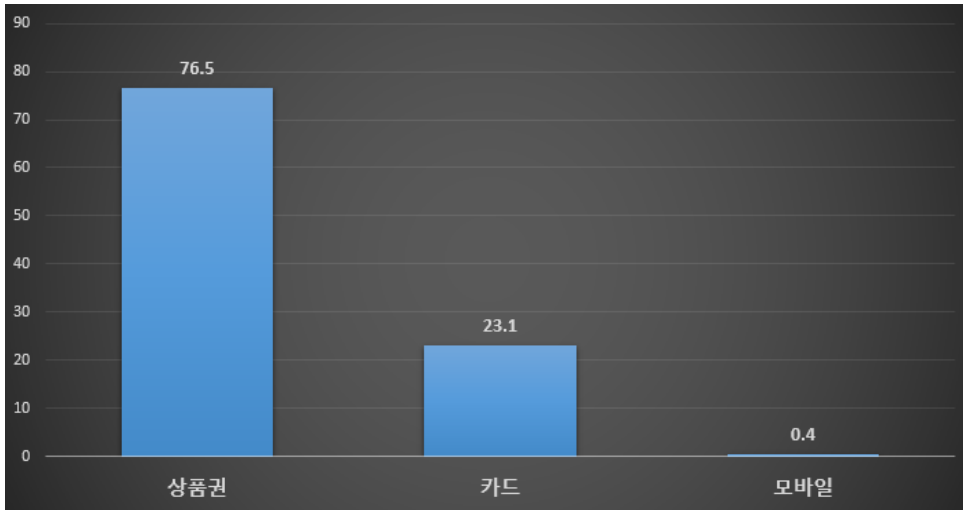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50대 이하	60대	70대	80세 이상	$\chi^2$
남성	24.3	31.2	28.9	15.6	1419.56***
여성	19.6	26.0	30.4	23.9	

\*\*\*  $p < 0.001$

- 2021년 농민 공익수당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상품권이 전체 중 76.5%를 차지하였으며, 카드는 23.1%이었음

(단위 : %)



[그림 2-7] 농민 공익수당 지급방식(2021년)

## 다. 2022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

- 2022년 농민 공익수당을 받은 농민의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익산 11.0%, 정읍 9.9%, 남원 9.6%, 고창 9.4%, 김제 9.4% 등이 농민 공익수당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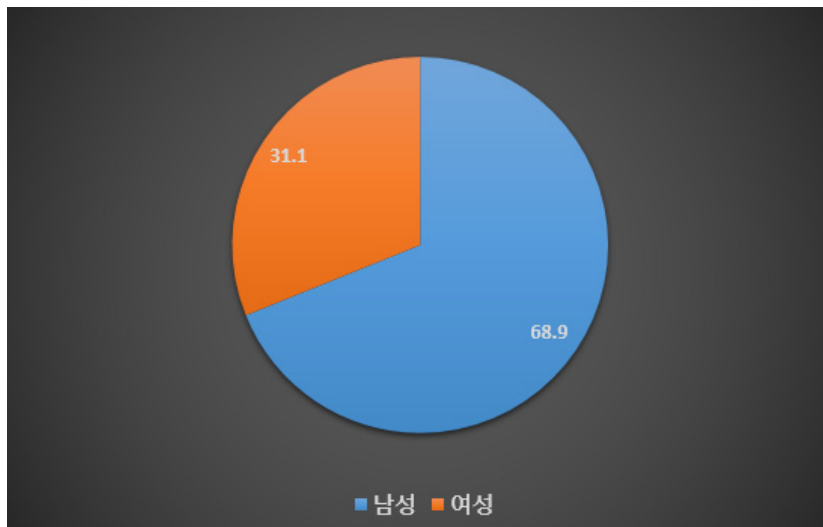
[표 2-7] 시군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2년)

(단위 : %)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00.0	4.6	7.3	11.0	9.9	9.6	9.4	8.4	4.6	4.4	4.6	4.9	5.4	9.4	6.5

- 농민 공익수당을 받은 남성은 전체 중 68.9%, 여성은 31.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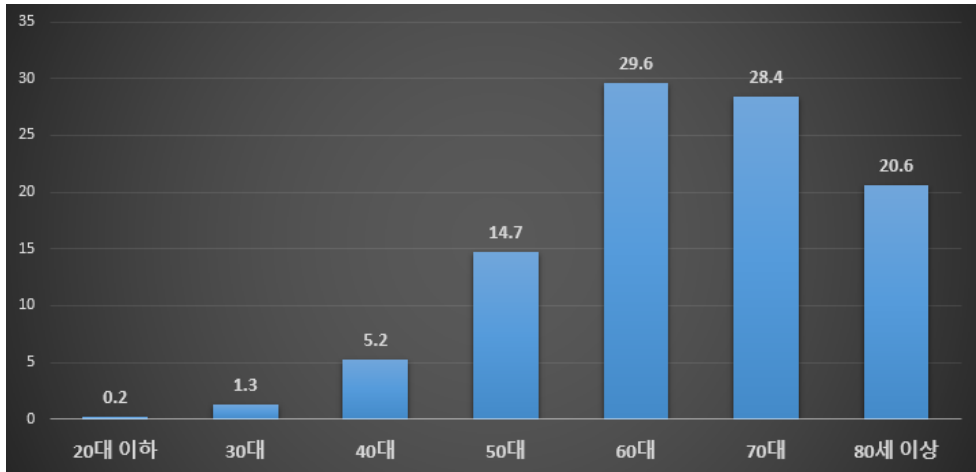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2-8] 성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2년)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60대 29.6%, 70대 28.4%, 80세 이상 20.6%, 50대 14.7% 등이 농민 공익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2-9] 연령대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2년)

- 연령대와 성별을 고려하여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60대가 31.3%, 70대 28.6%, 50대 이하 22.8% 등이 농민 공익수당을 받음
- 여성의 경우, 전체 중 70대가 27.9%, 80세 이상 27.6%, 60대 26.0% 등이 농민 공익수당을 받음

[표 2-8] 성별·연령대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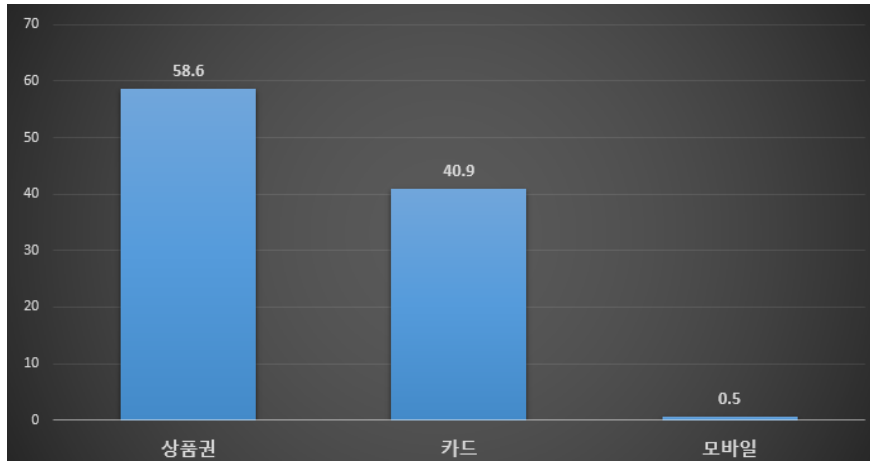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50대 이하	60대	70대	80세 이상	$\chi^2$
남성	22.8	31.3	28.6	17.4	1732.33***
여성	18.5	26.0	27.9	27.6	

\*\*\*  $p < 0.001$

- 농민 공익수당을 상품권으로 받은 농민은 전체 중 58.6%가 받았으며, 카드는 40.9%로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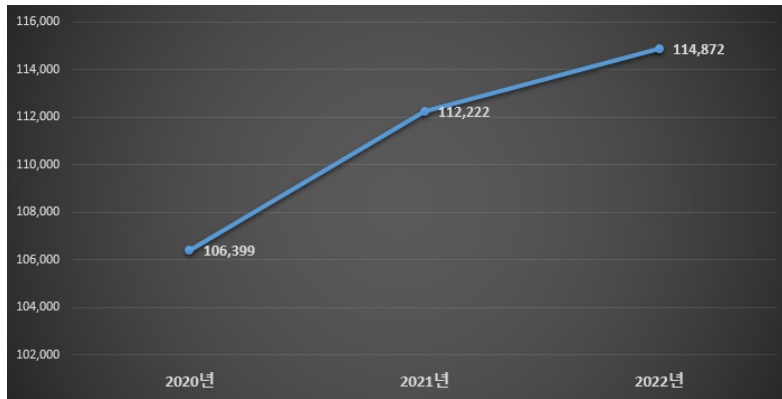


[그림 2-10] 농민 공익수당 지급방식(2022년)

## 라. 2020~2022년 농민 공익수당

- 지난 3년간 농민 공익수당을 받은 경영주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106,399명, 2021년 112,222명, 2022년 114,872명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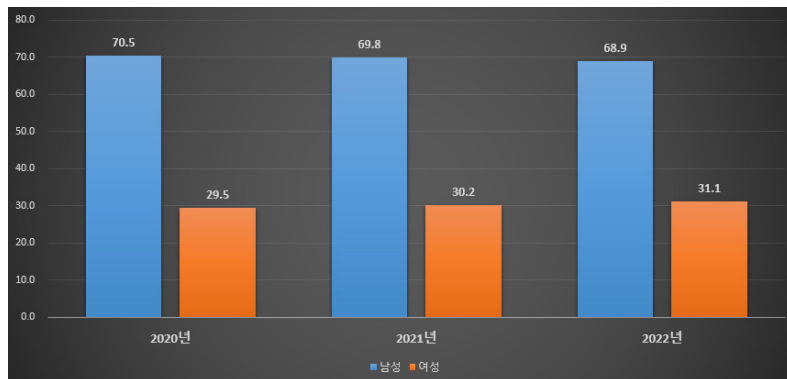
(단위 : 명)



[그림 2-11]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0~2022년)

- 농민 공익수당을 받은 경영주의 성비 변화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2020년 기준 70.5%에서 2022년 68.9%로 감소하였으나, 여성은 2020년 29.5%에서 2022년 31.1%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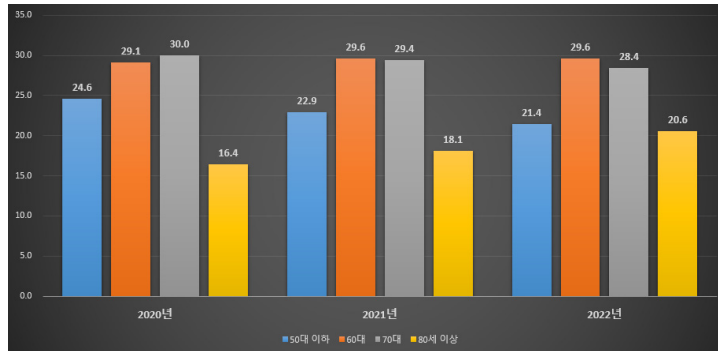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2-12] 성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0~2022년)

- 지난 3년간 연령대별 농민 공익수당을 받은 농민의 비중을 살펴보면, 80세 이상은 2020년 16.4%에서 2022년 20.6%로 증가하였으나, 50대 이하는 24.6%에서 21.4%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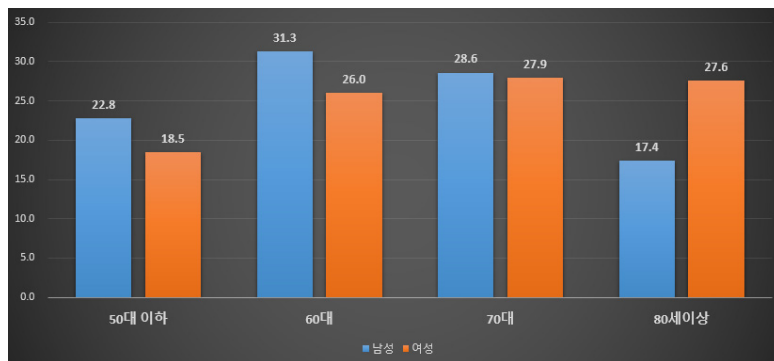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2-13] 연령대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0~2022년)

- 2022년 성별·연령대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60대가 3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70대로 27.9%를 차지함
- 전체 남성 중 가장 비중이 낮은 연령대는 80세 이상으로 17.4%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50대 이하로 18.5%이었음

(단위 : %)



[그림 2-14] 성별·연령대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2020~2022년)

### 3. 타시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현황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증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도는 총 9개 지역임
  -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강원도(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충청북도(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충청남도(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전라북도(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전라남도(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경상북도(농어민수당 지원사업), 경상남도(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제주도(농민수당 지급사업)
- 농민 공익수당 관련 지원사업의 목적은 1)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보전·증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2) 농업인(농민)의 소득안정과 자긍심 고취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 농민 공익수당 관련 지원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법령으로 시행되고 있음
- 또한, 지자체별 농민 공익수당 관련 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함  
경기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강원도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충청북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경상북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경상남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농민 (공익)수당은 1) 농민 또는 2)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함께 공동경영주를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농민 대상 :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 농가 대상 :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 연 3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기도(4, 8, 12월; 월 5만원)와 연 2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북(4~6월, 8월)을 제외하고, 7개 지역은 연 1회로 지급하고 있으며, 9개 지역의 수당



---

은 농민 또는 농가에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현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음

- 지급금액은 지자체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경기도 농민 1당 월 5만원(연 60만원), 강원도 가구당 연 70만원, 충청북도 농가당 연 60만원, 충청남도 농민 1인가구 연 80만원/2인가구 이상 개별로 1인당 45만원, 전라북도 농가당 연 60만원, 전라남도 농가당 연 60만원, 경상북도 농가당 연 60만원, 경상남도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제주도 농민 1인당 연 40만원
- 지역별로 지급 자격요건을 살펴본 결과,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모든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경기도와 달리, 8개 지자체는 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또는 농가에 한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
  - 강원도, 전라북도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 거주하고,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
  - 충청북도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 거주하고,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주도 : 연속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연속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있는 농민
  - 경기도 : 해당 시군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한 경영체 등록하여 등록사항(등록증, 등록확인서)이 확인 가능한 농민
- 해당 지자체 모두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민 또는 농가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표 2-9] 시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추진현황

구분	사업명	목적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 안정화</li> <li>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 확보</li> <li>가족 농민의 공동체 활동 촉진 등을 통한 농업·농촌의 고유한 전통문화 계승</li> <li>농업·농촌의 고령화 방지 및 신규 인구 유입 증대 등에 따른 소멸 위기 극복</li> </ul>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어촌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li> </ul>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촌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li> </ul>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li> </ul>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li> </ul>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li> </ul>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li> </ul>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활동 보상</li> </ul>
제주도	농민수당 지급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전 및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li> <li>제주도 고유한 농업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li> </ul>

구분	근거법령	지급대상	지원금액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제5조, 제6조</li> <li>「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9조</li> </ul>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b>농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농민 1인당 월 5만원</b>(연60만원)(지역화폐)</li> </ul>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li> <li>「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li> </ul>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b>가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가구당 연 70만원</b>(선불카드, 지역상품권)</li> </ul>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li> <li>「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농어업경영체 정보 등록 <b>농어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농어가당 연 60만원</b>(지역화폐, 지역상품권)</li> </ul>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li> <li>「사회보장기본법」제5조, 제26조, 시행령 제15조</li> <li>「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시행규칙 등</li> </ul>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자( <b>농어민</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농어업인 1인 가구 연 80만원</b></li> <li><b>2인 가구 이상 개별로 1인당 45만원</b></li> <li>지역화폐</li> </ul>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li> <li>「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농어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북 내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b>농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농가당 연 60만원</b>(지역화폐)</li> </ul>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li> </ul>	농어업·임업경영체 등록 <b>경영주(농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농가당 연 60만원</b>(유기증권)</li> </ul>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조</li> <li>「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제4조</li> </ul>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b>경영주(농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농가당 연 60만원</b>(지역화폐)</li> </ul>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li> <li>「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li> </ul>	농어업경영체 등록 <b>경영주 및 공동경영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연 30만원</b>(지역화폐, 현금:카드 충전)</li> </ul>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b>농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농민 1인당 연 40만원</b>(현금:카드 충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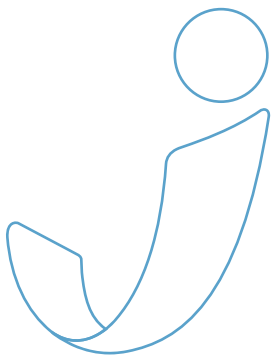
구분	지급대상자	지급 제외대상자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속 2년 이상 또는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농산물 생산 종사 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원, 고용종사자)으로, 등록경영체는 등록사항(등록증, 등록확인서)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자, 3) 사업제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4) 농촌기본소득 및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5) 채취, 출하, 가공, 수출 등의 농업 활동만 하는 농업인</li> </ul>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업경영체가 계속 등록되어 있는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배우자, 2)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3) 보조금 부정 수급, 지급제한 기간, 4) 농림어업분야 관련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 받은 자, 5)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 분리한 자, 6) 전전년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li> </ul>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내 있고,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년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 2) 최근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 3) 2년내 농림어업분야 관련 불법행위</li> </ul>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실제 농어업에 종사)</li> <li>신청 전전년도 기준 농어업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년도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저해 또는 훼손, 2)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및 의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li> </ul>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2) 전년도 보조금 부정 수급, 지급 제한 기간, 3) 전년도 농지, 산지, 양봉산업 분야 관련 불법행위, 4) 전년도 농업부산물, 폐농자재 불법소각, 5)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 세대 분리, 5) 이행점검 요건 준수 안 함</li> </ul>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li> <li>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임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2) 전년도 보조금 부정수급, 3)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4) 전년도 농림어업분야 관련 불법행위, 5)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하며 세대 분리한 자</li> </ul>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전년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 2) 5년간 보조금 부정 수급, 농림어업분야 관련 불법행위, 3)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4) 지급대상자와 거주하며 세대를 분리한 자</li> </ul>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주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li> <li>공동경영주 : 경영주가 수당 지급 거주·종사 기준 조건을 충족하고, 경영주와 동일한 거주조건과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2) 농림어업분야 관련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 받은 자, 3) 전년도 보조금 부정 수급, 지급제한 기간, 4) 직계존비속이 농어업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li> </ul>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2) 사업 전전년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 3)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 지급 제한 기간, 4) 최근 2년 내 농림어업분야 관련 불법행위, 5) 지방세 체납자</li> </ul>



## 제 3장

### 전북 직접지불제 개요 및 추진현황

1. 전북 직접지불제 개요
2. 전북 직접지불제 추진현황
3. 시군 직접지불제 개요 및 추진현황





## 제3장 전북 직접지불제 개요 및 추진현황

### 1. 전북 직접지불제 개요

#### 가.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 2008년 10월에 제정된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식량 생산과 자급유지 및 이의 원천이 되는 농지보전을 위해 영농에 종사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라북도 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도내 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도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직접지불금’으로 정의하고 있음
- 농업인의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직접지불금의 지원 최소 기본단위는 1ha로 하며,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농업인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따른 자로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정의함

#### 나.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

- 직접지불제 중 하나인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쌀직불금)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며 도내 쌀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sup>3</sup>)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음

- 연도별로 투입된 재정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로 156,918백만원이, 2019년 이후부터 매년 12,000백만원이 투입되었음

[표 3-1] 연도별 쌀직불금 재정투입 규모

(단위 : 천명, 천ha, 백만원)

구분	'01~'18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상	-	90	90	90	90	90
면적	-	98	98	98	98	98
사업비(도비 100)	156,918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출처 : 전라북도 내부자료.

-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지)하는 농업인 중 농식품 부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 면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m<sup>2</sup>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법인 제외)'로 하고 있음
- 지급면적은 농업인 당 경작면적 0.1ha(1,000m<sup>2</sup>)이상부터 3.0ha(30,000m<sup>2</sup>)까지 하고 있음
- 지급단가는 '사업비/지급대상면적'으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지급단가는 '130,000원/ha'이었음

## 다. 쌀농업직불금 지원사업

- 2012년부터 쌀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중앙정부 직불금과 별도로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쌀농업직불금(쌀직불금)은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음
- 해당사업의 연도별 투입되는 재정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8,937백만원 사업추진을 위해 투입되었으며, 2019년 이후 매년 쌀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3)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에 지출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위해 1,600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음

[표 3-2] 연도별 밭직불금 재정투입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01~'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100%)	18,937	1,600	1,600	1,600	1,600	1,600
도비(50%)	9,600	800	800	800	800	800
시군비(50%)	9,337	800	800	800	800	800

출처 : 전라북도 내부자료.

-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거주(주민등록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 면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m<sup>2</sup>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법인 제외)'로 하고 있음
- 지원품목은 밭에서 재배하는 모든 밭작물로 하고 있으며, 밭작물 재배면적이 0.1ha이상에서 1.0ha까지의 농지에 대해 밭직불금을 지급함
- 지원단가는 '사업비/지급대상면적'으로, 2021년도 지급단가는 66,000원/ha이었으며, 2022년도는 70,000원/ha이었음
- 밭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은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2)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작물이 아닌 작물을 경작하는 농지, 3)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1천m<sup>2</sup>미만(휴경면적은 면적산정 시 제외), 4)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5)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이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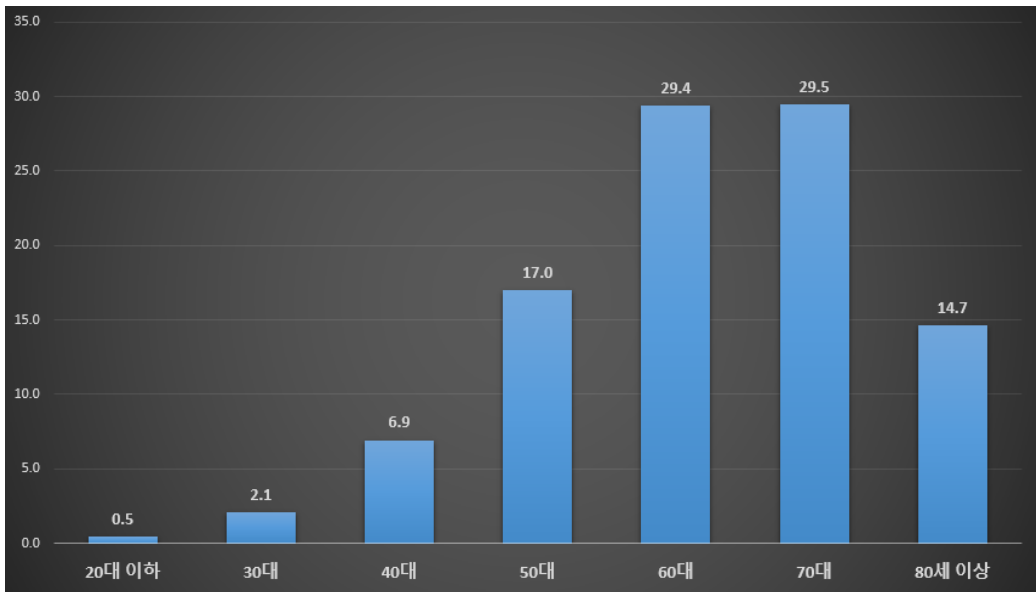
## 2. 전북 직접지불제 추진현황

### 가. 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쌀직불금)

#### 1) 2020년 쌀직불금 지급현황

- 2020년 쌀직불금의 재정투입예산은 12,000백만원(도비 100)으로, 쌀직불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거주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m<sup>2</sup> 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음
- 2020년 쌀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70대가 전체의 29.5%를 차지하였으며, 60대가 29.4%, 50대가 17.0%, 80세 이상이 14.7%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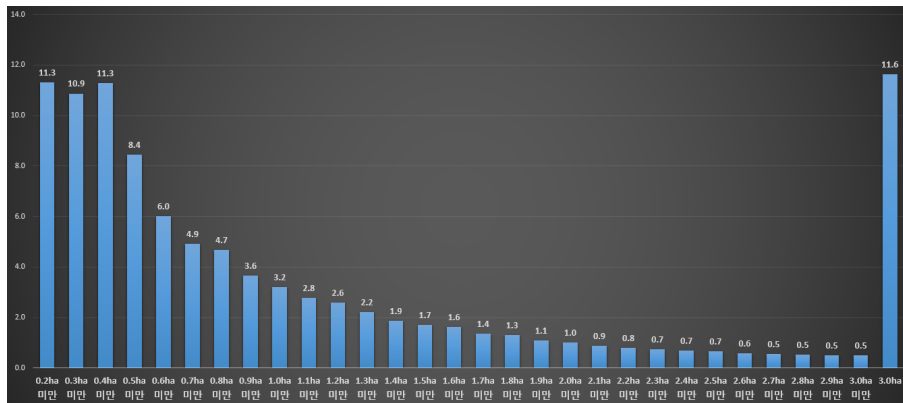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1] 연령대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0)

- 논벼 재배농지 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3.0ha가 전체의 11.6%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0.2ha 미만과 0.3ha~0.4ha 미만이 각각 11.3%, 0.2ha~0.3ha 미만이 10.9% 등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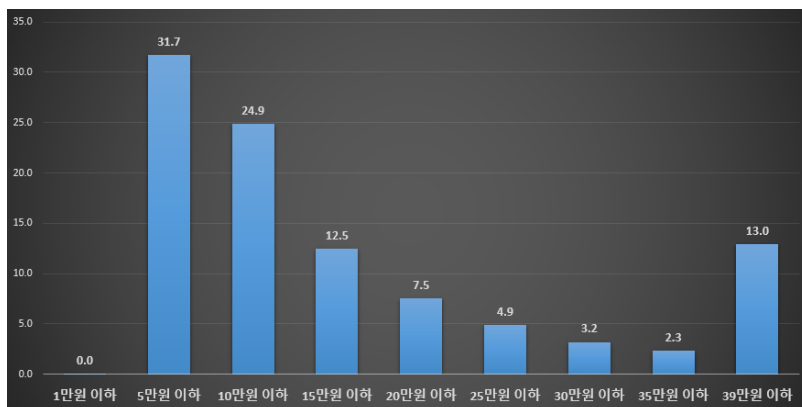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2] 논벼 재배농지 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0)

- 2020년 쌀직불금 지급현황을 지급금액별로 살펴본 결과, 1~5만원 이하를 받는 농가가 전체 중 31.7%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10만원 이하가 24.9%, 35~39만원 이하가 13.0%, 10~15만원 이하 12.5% 등 순이었음

(단위 : %)



[그림 3-3] 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0)

- 
- 연령대·지급면적별로 쌀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20대 이하와 30대의 경우, 3.0ha가 전체 중 각각 19.4%, 24.0%를 차지하였음
  - 40대~60대는 3.0ha가 각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17.9%, 16.3%, 15.7%), 다음으로 40대와 50대는 1.0ha~0.2ha 미만이 각각 11.4%, 11.6%, 60대는 0.3ha~0.4ha 미만이 10.7%로 나타남
  - 70대는 0.3ha~0.4ha 미만이 1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0.2ha~0.3ha 미만이 10.9%, 0.1ha~0.2ha 미만 10.6% 등 순으로 나타남
  - 80대 이상의 경우, 0.1ha~0.2ha 미만이 14.5%, 0.3ha~0.4ha 미만 13.6%, 0.2ha~0.3ha 미만 13.0%, 0.4ha~0.5ha 미만 10.3% 등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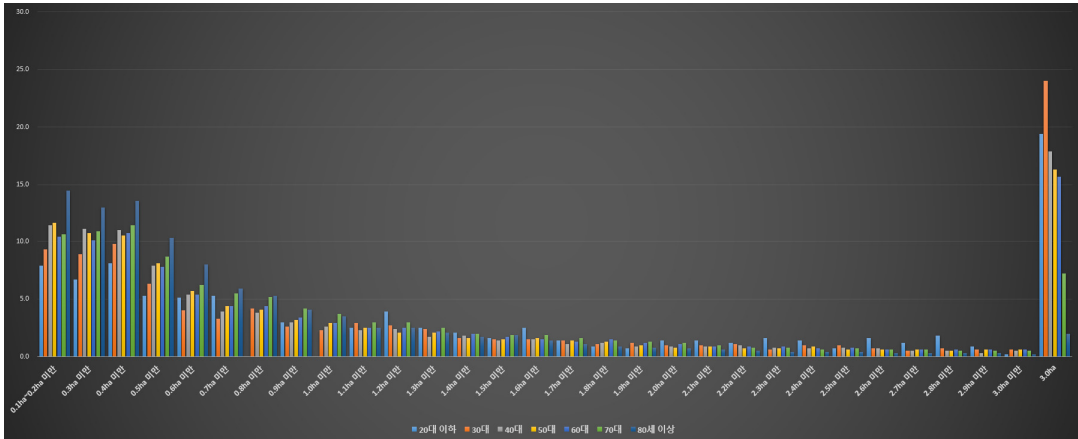
[표 3-3] 연령대·지급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0)<sup>4)</sup>

(단위 : %)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0.1ha~0.2ha 미만	7.9	9.3	11.4	11.6	10.4	10.6	14.5
0.3ha 미만	6.7	8.9	11.1	10.7	10.1	10.9	13.0
0.4ha 미만	8.1	9.8	11.0	10.5	10.7	11.4	13.6
0.5ha 미만	5.3	6.3	7.9	8.1	7.8	8.7	10.3
0.6ha 미만	5.1	4.0	5.4	5.7	5.4	6.2	8.0
0.7ha 미만	5.3	3.3	3.9	4.4	4.4	5.5	5.9
0.8ha 미만	5.3	4.2	3.8	4.1	4.4	5.2	5.3
0.9ha 미만	3.0	2.6	3.0	3.2	3.4	4.2	4.1
1.0ha 미만	2.3	2.3	2.6	2.9	2.9	3.7	3.5
1.1ha 미만	2.5	2.9	2.3	2.5	2.5	3.0	2.5
1.2ha 미만	3.9	2.7	2.4	2.1	2.5	3.0	2.5
1.3ha 미만	2.5	2.4	1.7	2.1	2.2	2.5	2.1
1.4ha 미만	2.1	1.6	1.8	1.6	2.0	2.0	1.7
1.5ha 미만	1.6	1.5	1.4	1.5	1.7	1.9	1.9
1.6ha 미만	2.5	1.5	1.5	1.6	1.5	1.9	1.4
1.7ha 미만	1.4	1.4	1.1	1.4	1.3	1.6	1.1
1.8ha 미만	0.9	1.1	1.2	1.3	1.5	1.4	0.9
1.9ha 미만	0.7	1.2	0.9	1.0	1.2	1.3	0.8
2.0ha 미만	1.4	1.0	0.9	0.8	1.1	1.2	0.7
2.1ha 미만	1.4	1.0	0.9	0.9	0.9	1.0	0.6
2.2ha 미만	1.2	1.1	1.0	0.7	0.9	0.8	0.5
2.3ha 미만	1.6	0.6	0.8	0.7	0.9	0.8	0.4
2.4ha 미만	1.4	1.0	0.7	0.9	0.7	0.6	0.4
2.5ha 미만	0.7	1.0	0.8	0.6	0.8	0.7	0.4
2.6ha 미만	1.6	0.7	0.7	0.6	0.6	0.6	0.3
2.7ha 미만	1.2	0.5	0.5	0.6	0.6	0.6	0.3
2.8ha 미만	1.8	0.7	0.5	0.5	0.6	0.5	0.3
2.9ha 미만	0.9	0.6	0.3	0.6	0.6	0.5	0.3
3.0ha 미만	0.2	0.6	0.5	0.6	0.6	0.5	0.2
3.0ha	19.4	24.0	17.9	16.3	15.7	7.2	2.0

4) 연령대와 지급면적에 따른 쌀직불금 지급현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chi^2=3,925.76^{***}$ ,  $p<0.001$ )

(단위 : %)



[그림 3-4] 연령대·지급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0)

- 쌀직불금의 평균 지급금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음
- 80대 이상이 받는 쌀직불금은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이하와 30대는 40대 이상에 비해 가장 높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쌀직불금 평균 금액은 20대 이하와 30대, 40대/50대/60대, 70대, 80대 이상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4] 연령대별 쌀직불금 평균 금액(2020)

(단위 : 원)

구분	평균	F
20대 이하	176,369.64 (a)	488.06***
30대	175,288.80 (a)	
40대	149,021.87 (b)	
50대	145,572.58 (b)	
60대	147,834.99 (b)	
70대	122,577.22 (c)	
80대 이상	90,129.66 (d)	

\*\*\* p<0.001

- 연령대·지급금액별로 쌀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35만원 초과~39만원 이하가 전체의 2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만원 초과~5만원 이하가 21.7%,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20.8% 등 순으로 나타남
- 30대는 1만원 초과~5만원 이하가 26.7%, 35만원 초과~39만원 이하 25.7% 등 순이었음
- 40대 이상은 1만원 초과~5만원 이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각각 전체의 31.5%(40대), 31.0%(50대), 29.6%(60대), 31.2%(70대), 39.2%(80대 이상)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가 각각 22.2%(40대), 23.1%(50대), 22.8%(60대), 26.3%(70대), 30.3%(80대 이상) 순이었음

[표 3-5] 연령대·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0)<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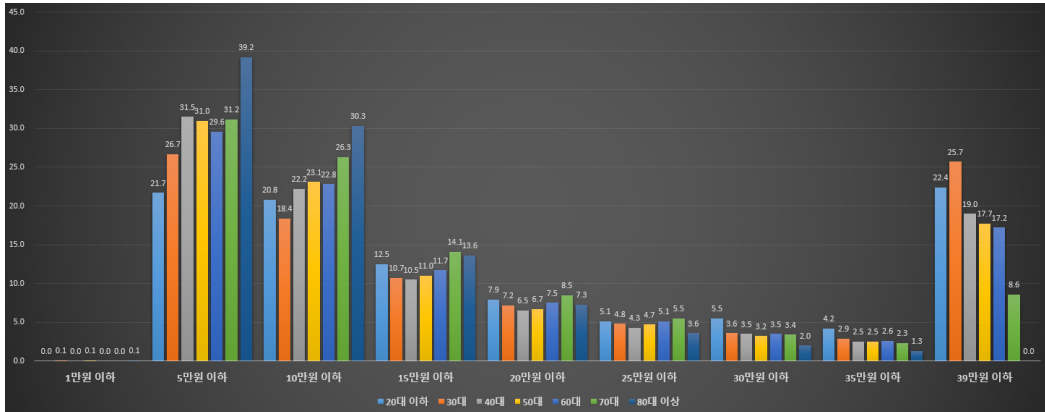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1만원 이하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15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25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39만원 이하
20대 이하	0.0	21.7	20.8	12.5	7.9	5.1	5.5	4.2	22.4
30대	0.1	26.7	18.4	10.7	7.2	4.8	3.6	2.9	25.7
40대	0.0	31.5	22.2	10.5	6.5	4.3	3.5	2.5	19.0
50대	0.1	31.0	23.1	11.0	6.7	4.7	3.2	2.5	17.7
60대	0.0	29.6	22.8	11.7	7.5	5.1	3.5	2.6	17.2
70대	0.0	31.2	26.3	14.1	8.5	5.5	3.4	2.3	8.6
80대 이상	0.1	39.2	30.3	13.6	7.3	3.6	2.0	1.3	2.6

\*\*\* p<0.001

5) 연령대와 지급금액에 따른 쌀직불금 지급현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chi^2=3577.48^{***}$ , \*\*\* p<0.00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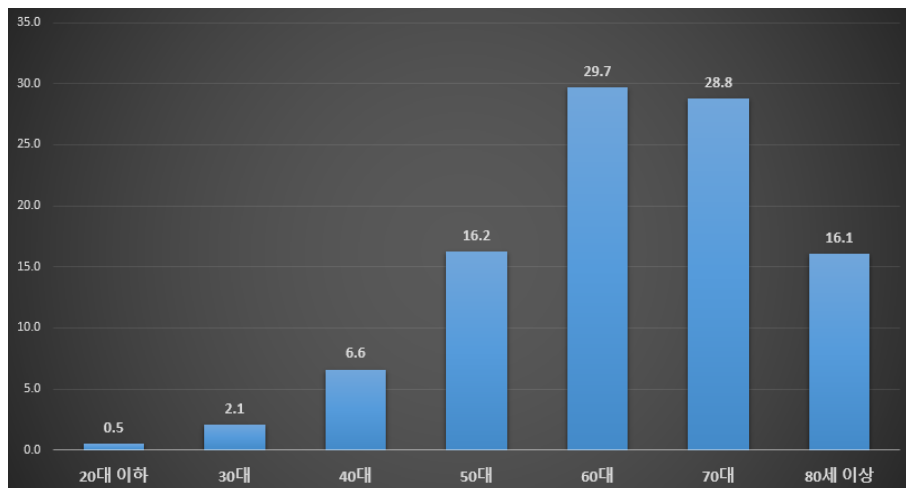


[그림 3-5] 연령대·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0)

## 2) 2021년 쌀직불금 지급현황

- 2021년 쌀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의 연령대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60대가 전체의 29.7%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70대가 28.8%, 50대 16.2%, 80대 이상 16.1% 등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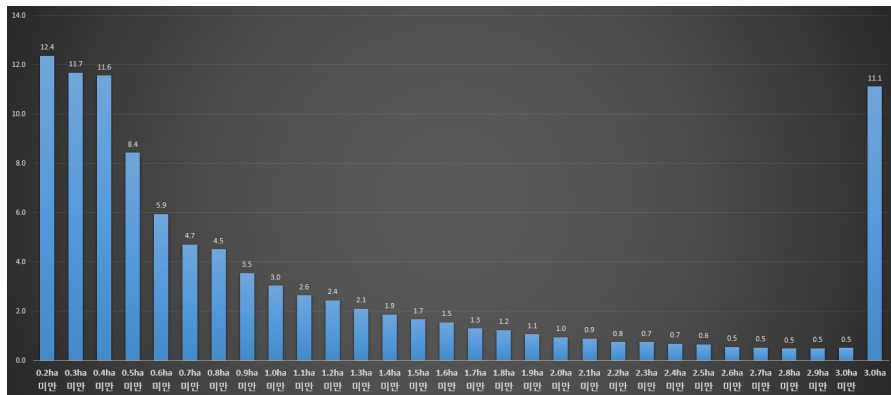


[그림 3-6] 연령대별 쌀직불금 현황(2021)



- 지급면적별로 쌀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0.1ha~0.2ha 미만이 전체의 12.4%를 차지하였으며, 0.2ha~0.3ha 미만이 11.7%, 0.3ha~0.4ha 미만 11.6%, 3.0ha 11.1%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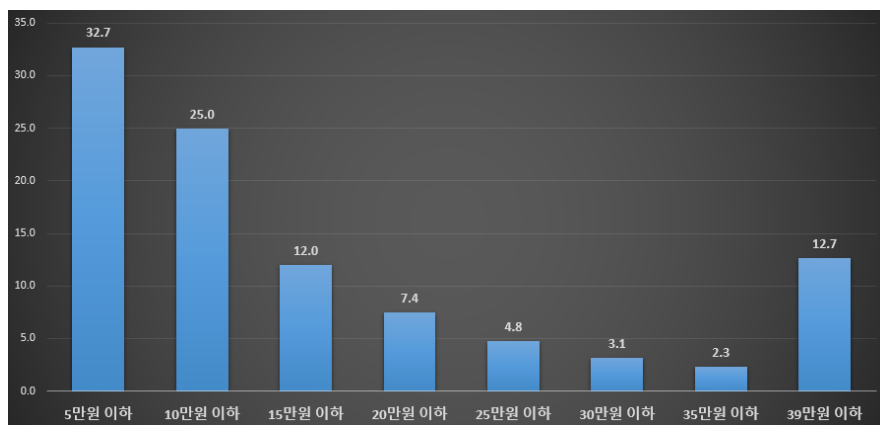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7] 논벼 재배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1)

- 지급금액별로 쌀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5만원 이하가 전체 중 32.7%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가 25.0%, 35만원 초과~39만원 이하 12.7%, 10만원 초과~15만원 이하 12.0% 등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3-8] 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1)

- 
- 연령대·지급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대 이하와 30대의 경우, 3.0ha가 각각 전체의 20.6%, 2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0.1ha~0.2ha 미만은 각각 10.6%, 10.3%, 0.3ha~0.4ha 미만이 10.1% 등 순이었음
  - 40대의 쌀직불금 지급현황은 3.0ha가 17.0%, 0.1ha~0.2ha 미만 12.1%, 0.3ha~0.4ha 미만 11.4%, 0.2ha~0.3ha 미만 11.2% 등 순으로 나타남
  - 50대의 경우, 0.1ha~0.2ha 미만이 전체의 18.2%를 차지하였으며, 3.0ha가 15.3%, 0.2ha~0.3ha 미만 11.5%, 0.3ha~0.4ha 미만 10.5% 등 순으로 나타남
  - 60대는 3.0ha가 전체의 1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0.1ha~0.2ha 미만이 11.4%, 0.2ha~0.3ha 미만과 0.3ha~0.4ha 미만이 각각 11.0% 등 순이었음
  - 70대는 0.3ha~0.4ha 미만이 11.8%, 80대 이상은 0.1ha~0.2ha 미만이 16.1%로 가장 큰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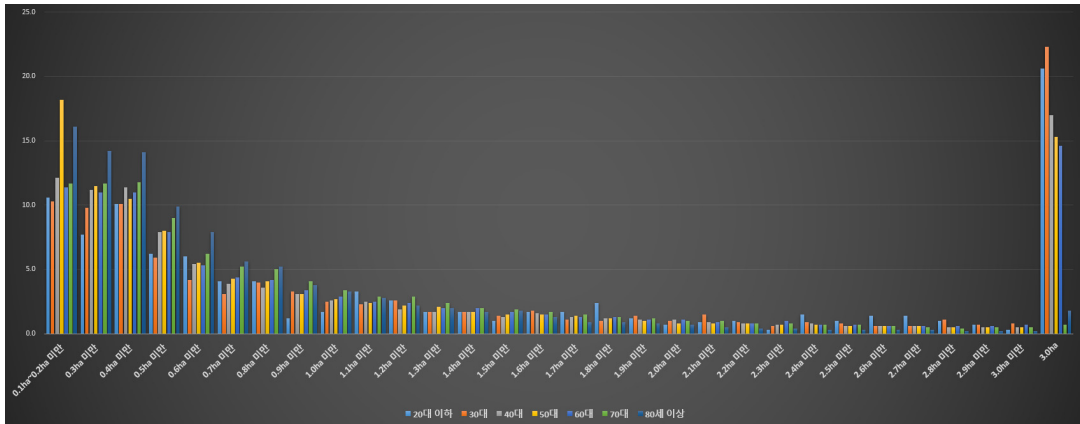
[표 3-6] 연령대·지급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1)<sup>6)</sup>

(단위 : %)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0.1ha~0.2ha 미만	10.6	10.3	12.1	18.2	11.4	11.7	16.1
0.3ha 미만	7.7	9.8	11.2	11.5	11.0	11.7	14.2
0.4ha 미만	10.1	10.1	11.4	10.5	11.0	11.8	14.1
0.5ha 미만	6.2	5.9	7.9	8.0	7.9	9.0	9.9
0.6ha 미만	6.0	4.2	5.4	5.5	5.3	6.2	7.9
0.7ha 미만	4.1	3.1	3.9	4.3	4.4	5.2	5.6
0.8ha 미만	4.1	4.0	3.6	4.1	4.2	5.0	5.2
0.9ha 미만	1.2	3.3	3.1	3.1	3.4	4.1	3.8
1.0ha 미만	1.7	2.5	2.6	2.7	2.9	3.4	3.3
1.1ha 미만	3.3	2.3	2.5	2.4	2.5	2.9	2.8
1.2ha 미만	2.6	2.6	1.9	2.2	2.4	2.9	2.2
1.3ha 미만	1.7	1.7	1.7	2.1	2.0	2.4	2.0
1.4ha 미만	1.7	1.7	1.7	1.7	2.0	2.0	1.7
1.5ha 미만	1.0	1.4	1.3	1.5	1.7	1.9	1.8
1.6ha 미만	1.7	1.8	1.6	1.5	1.5	1.7	1.3
1.7ha 미만	1.7	1.1	1.3	1.4	1.3	1.5	0.9
1.8ha 미만	2.4	1.0	1.2	1.2	1.3	1.3	0.9
1.9ha 미만	1.2	1.4	1.1	1.0	1.1	1.2	0.8
2.0ha 미만	0.7	1.0	1.1	0.8	1.1	1.0	0.7
2.1ha 미만	0.9	1.5	0.9	0.8	0.9	1.0	0.5
2.2ha 미만	1.0	0.9	0.8	0.8	0.8	0.8	0.4
2.3ha 미만	0.3	0.6	0.7	0.7	1.0	0.8	0.4
2.4ha 미만	1.5	0.9	0.8	0.7	0.7	0.7	0.3
2.5ha 미만	1.0	0.8	0.6	0.6	0.7	0.7	0.3
2.6ha 미만	1.4	0.6	0.6	0.6	0.6	0.6	0.3
2.7ha 미만	1.4	0.6	0.6	0.6	0.6	0.5	0.3
2.8ha 미만	1.0	1.1	0.5	0.5	0.6	0.4	0.2
2.9ha 미만	0.7	0.7	0.5	0.5	0.6	0.5	0.2
3.0ha 미만	0.3	0.8	0.5	0.5	0.7	0.5	0.2
3.0ha	20.6	22.3	17.0	15.3	14.6	6.7	1.8

6) 연령대와 지급면적에 따른 쌀직불금 지급현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chi^2=3,732.34^{***}$ ,  $^{****}$  p<0.001)

(단위 : %)



[그림 3-9] 연령대·지급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1)

- 쌀직불금 평균 금액은 연령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 20대 이하(166,873.59원)와 30대(179,114.54원)의 평균 금액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80대 이하(89,296.28원)는 가장 낮았음
- 20대 이하와 30대, 40대/50대/60대, 70대, 80대 이상 순으로 쌀직불금 평균 지급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7] 연령대별 쌀직불금 평균 금액(2021)

(단위 : 원)

구분	평균	F
20대 이하	166,873.59 (a)	485.96***
30대	179,114.54 (a)	
40대	150,912.07 (b)	
50대	141,473.93 (b)	
60대	145,672.72 (b)	
70대	123,589.39 (c)	
80대 이상	89,296.28 (d)	

\*\*\* p<0.001

- 연령대·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20대 이하의 경우, 5만원 이하가 20대 이하 전체의 27.4%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가 22.2%, 35만원 초과~39만원 이하 20.7% 등 순으로 나타남
- 30대의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35만원 초과~39만원 이하가 26.3%, 5만원 이하 25.7% 등 순으로 나타남
- 40대 이후의 쌀직불금 평균 금액은 5만원 이하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보이며, 각각 31.3%(40대), 32.7%(50대), 30.6%(60대), 31.6%(70대), 40.3%(80대 이상)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가 연령대별 전체의 22.0%, 23.0%, 23.3%, 26.2%, 30.2%를 차지함

[표 3-8] 연령대·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1)<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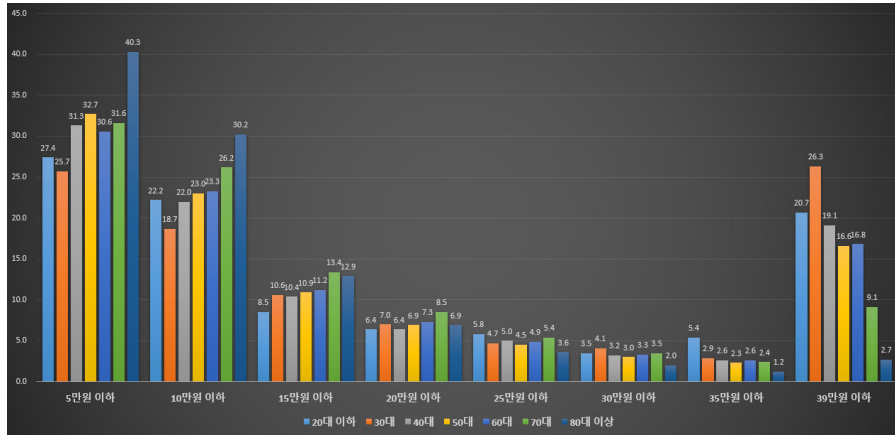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15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25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39만원 이하
20대 이하	27.4	22.2	8.5	6.4	5.8	3.5	5.4	20.7
30대	25.7	18.7	10.6	7.0	4.7	4.1	2.9	26.3
40대	31.3	22.0	10.4	6.4	5.0	3.2	2.6	19.1
50대	32.7	23.0	10.9	6.9	4.5	3.0	2.3	16.6
60대	30.6	23.3	11.2	7.3	4.9	3.3	2.6	16.8
70대	31.6	26.2	13.4	8.5	5.4	3.5	2.4	9.1
80대 이상	40.3	30.2	12.9	6.9	3.6	2.0	1.2	2.7

\*\*\* p<0.001

7) 연령대와 지급금액에 따른 쌀직불금 지급현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chi^2=3483.60^{***}$ , \*\*\* p<0.00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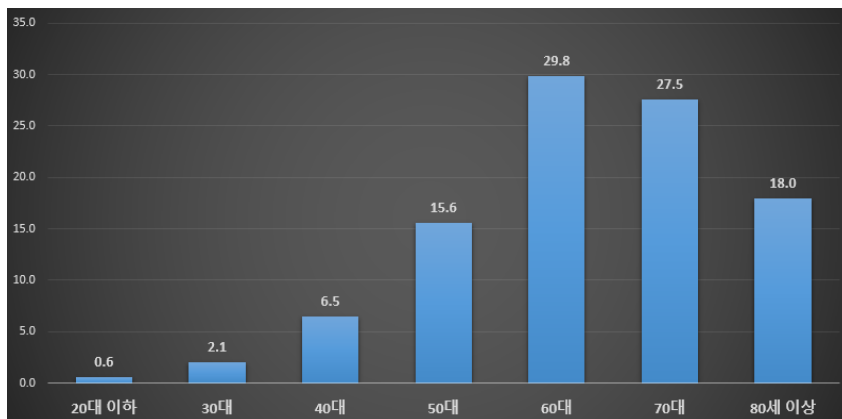


[그림 3-10] 연령대·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1)

### 3) 2022년 쌀직불금 지급현황

- 2022년 쌀직불금을 받은 농업인 연령별로 쌀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60대가 전체의 29.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70대가 27.5%, 80대 이상 18.0%, 50대 15.6%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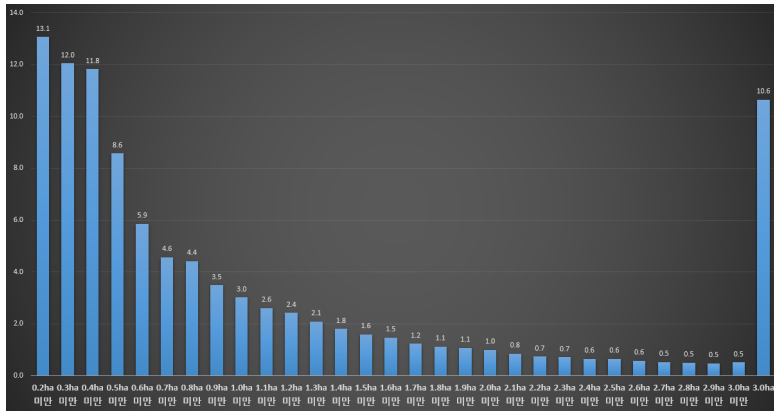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11] 연령대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2)

- 지급면적별로 쌀직불금 지급현황의 경우, 0.1ha~0.2ha 미만이 전체의 13.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0.2ha~0.3ha 미만이 12.0%, 0.3ha~0.4ha 미만 11.8%, 3.0ha 10.6% 등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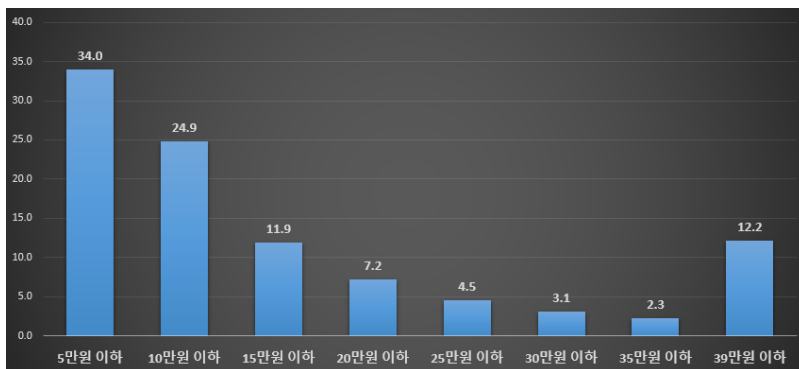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12] 지급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2)

- 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5만원 이하를 받은 농업인은 전체 중 34.0%이었으며, 다음으로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는 24.9%, 35만원 초과~39만원 이하 12.2%, 10만원 초과~15만원 이하 11.9% 등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3-13] 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2)

- 
- 연령대별 지급면적에 따라 쌀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20대 이하와 30대는 3.0ha가 각각 전체의 18.3%, 2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0.1ha~0.2ha 미만 13.1%, 11.9%, 0.3ha~0.4ha 미만 11.0%, 10.0% 등 순으로 나타남
  - 40대~60대의 경우, 3.0ha가 각각 전체의 17.0%(40대), 14.2%(50대), 14.1%(60대)로 큰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0.1ha~0.2ha 미만이 12.5%(40대), 13.8%(50대), 12.5%(60대)로 나타남
  - 70대의 쌀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0.1ha~0.2ha 미만과 0.2ha~0.3ha 미만이 모두 1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0.3ha~0.4ha 미만이 11.7%이 었음
  - 80대 이상은 0.1ha~0.2ha 미만, 0.3ha~0.4ha 미만, 0.2ha~0.3ha 미만이 각각 15.5%, 14.1%, 14.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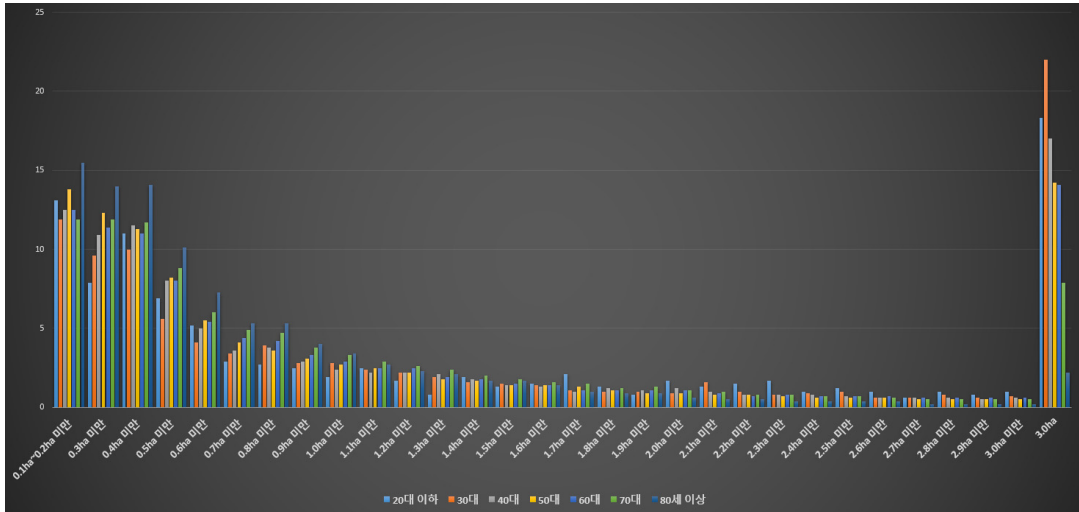
[표 3-9] 연령대·지급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2)<sup>8)</sup>

(단위 : %)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0.1ha~0.2ha 미만	13.1	11.9	12.5	13.8	12.5	11.9	15.5
0.3ha 미만	7.9	9.6	10.9	12.3	11.4	11.9	14.0
0.4ha 미만	11.0	10.0	11.5	11.3	11.0	11.7	14.1
0.5ha 미만	6.9	5.6	8.0	8.2	8.0	8.8	10.1
0.6ha 미만	5.2	4.1	5.0	5.5	5.4	6.0	7.3
0.7ha 미만	2.9	3.4	3.6	4.1	4.4	4.9	5.3
0.8ha 미만	3.7	3.9	3.8	3.6	4.2	4.7	5.3
0.9ha 미만	2.5	2.8	2.9	3.1	3.3	3.8	4.0
1.0ha 미만	1.9	2.8	2.4	2.7	2.9	3.3	3.4
1.1ha 미만	2.5	2.4	2.2	2.5	2.5	2.9	2.7
1.2ha 미만	1.7	2.2	2.2	2.2	2.5	2.6	2.3
1.3ha 미만	0.8	1.9	2.1	1.8	1.9	2.4	2.1
1.4ha 미만	1.9	1.6	1.8	1.7	1.8	2.0	1.7
1.5ha 미만	1.3	1.5	1.4	1.4	1.5	1.8	1.7
1.6ha 미만	1.5	1.4	1.3	1.4	1.4	1.6	1.4
1.7ha 미만	2.1	1.1	1.0	1.3	1.1	1.5	1.0
1.8ha 미만	1.3	1.0	1.2	1.1	1.1	1.2	0.9
1.9ha 미만	0.8	1.0	1.1	0.9	1.1	1.3	0.9
2.0ha 미만	1.7	0.9	1.2	0.9	1.1	1.1	0.6
2.1ha 미만	1.3	1.6	1.0	0.8	0.9	1.0	0.5
2.2ha 미만	1.5	1.0	0.8	0.8	0.7	0.8	0.5
2.3ha 미만	1.7	0.8	0.8	0.7	0.8	0.8	0.4
2.4ha 미만	1.0	0.9	0.8	0.6	0.7	0.7	0.4
2.5ha 미만	1.2	1.0	0.7	0.6	0.7	0.7	0.4
2.6ha 미만	1.0	0.6	0.6	0.6	0.7	0.6	0.4
2.7ha 미만	0.6	0.6	0.6	0.5	0.6	0.5	0.2
2.8ha 미만	1.0	0.8	0.6	0.5	0.6	0.5	0.2
2.9ha 미만	0.8	0.6	0.5	0.5	0.6	0.5	0.2
3.0ha 미만	1.0	0.7	0.6	0.5	0.6	0.5	0.2
3.0ha	18.3	22.0	17.0	14.2	14.1	7.9	2.2

8) 연령대와 지급면적에 따른 쌀직불금 지급현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chi^2=3,440.96^{***}$ ,  $^{****}$  p<0.001)

(단위 : %)



[그림 3-14] 연령대·지급면적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2)

- 연령대별 평균 쌀직불금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80대 이상의 평균 쌀직불금은 90,366.53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이하와 30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금액인 164,970.24원, 170,642.06원을 받음

[표 3-10] 연령대별 쌀직불금 평균 금액(2022)

(단위 : 원)

구분	평균	F
20대 이하	164,970.24 (a)	436.79***
30대	170,642.06 (a)	
40대	149,608.60 (b)	
50대	136,814.99 (c)	
60대	140,789.27 (bc)	
70대	123,535.67 (d)	
80대 이상	90,366.53 (e)	

\*\*\* p<0.001

- 연령대·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20대 이하는 5만원 이하가 전체의 29.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10만원 이하와 35~39만원 이하 모두 21.0%로 나타남
- 30대의 경우, 5만원 이하가 전체 중 29.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35~39만원 이하가 24.2%를 차지함
- 40대 이상의 쌀직불금 지급현황을 보면, 모두 연령대에서 5만원 이하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0대 31.8%, 50대 34.6%, 60대 32.1%, 70대 32.6%, 80대 이상 40.3%), 다음으로 5~10만원 이하로 각각 전체의 22.2%(40대), 22.9%(50대), 23.4%(60대), 25.8%(70대), 29.5%(80대 이상)이었음

[표 3-11] 연령대·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2)<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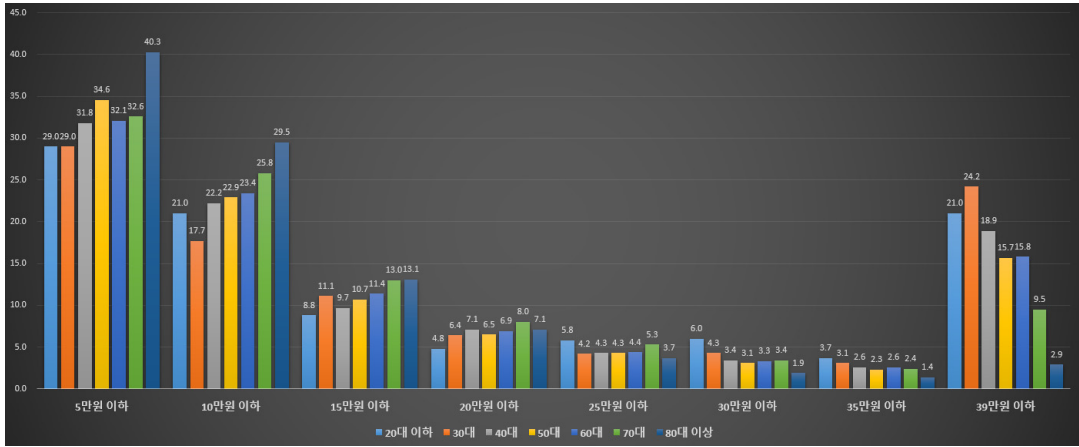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15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25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39만원 이하
20대 이하	29.0	21.0	8.8	4.8	5.8	6.0	3.7	21.0
30대	29.0	17.7	11.1	6.4	4.2	4.3	3.1	24.2
40대	31.8	22.2	9.7	7.1	4.3	3.4	2.6	18.9
50대	34.6	22.9	10.7	6.5	4.3	3.1	2.3	15.7
60대	32.1	23.4	11.4	6.9	4.4	3.3	2.6	15.8
70대	32.6	25.8	13.0	8.0	5.3	3.4	2.4	9.5
80대 이상	40.3	29.5	13.1	7.1	3.7	1.9	1.4	2.9

\*\*\* p<0.001

9) 연령대와 지급금액에 따른 쌀직불금 지급현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chi^2=3,222.77^{***}$ , \*\*\* p<0.00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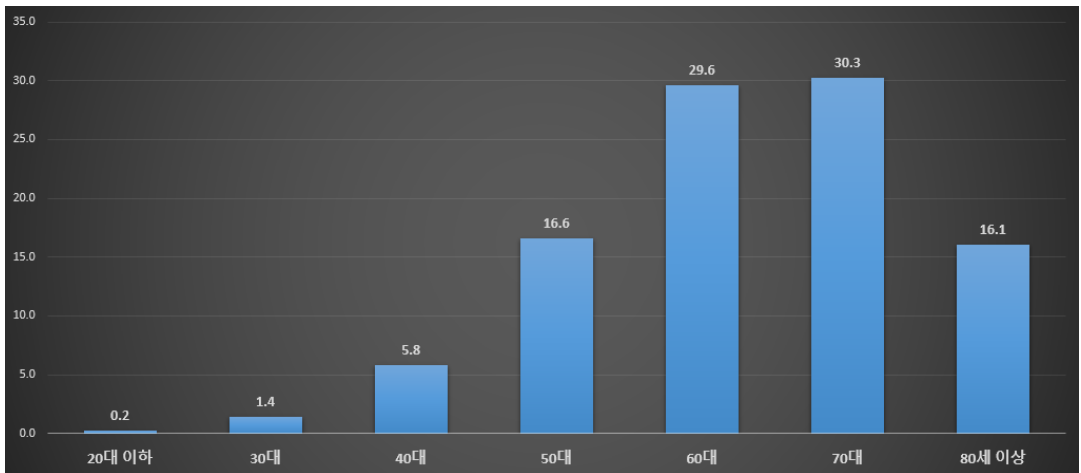
[그림 3-15] 연령대·지급금액별 쌀직불금 지급현황(2022)

## 나. 발농업직불금

### 1) 2020년 발농업직불금 지급현황

- 2020년 발농업직불금(이하 발직불금)으로 1,600백만원(도비 800백만원, 시군비 800백만원)이 투입되었으며, 발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발직불금이 지급된 밭작물을 경작하는 도내 농업인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70대가 전체의 30.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60대가 29.6%, 50대 16.6%, 80대 이상 16.1%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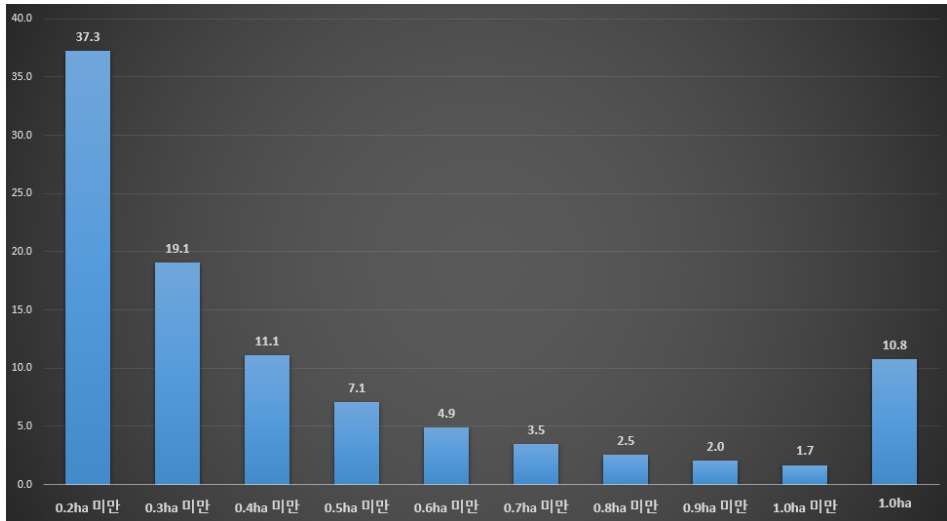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16] 연령대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0)

- 면적별 발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0.1ha~0.2ha 미만인 농민의 비율은 전체의 37.3%를 차지하였으며, 0.2ha~0.3ha 미만이 19.1%, 0.3ha~0.4ha 미만 11.1%, 1.0ha 10.8% 등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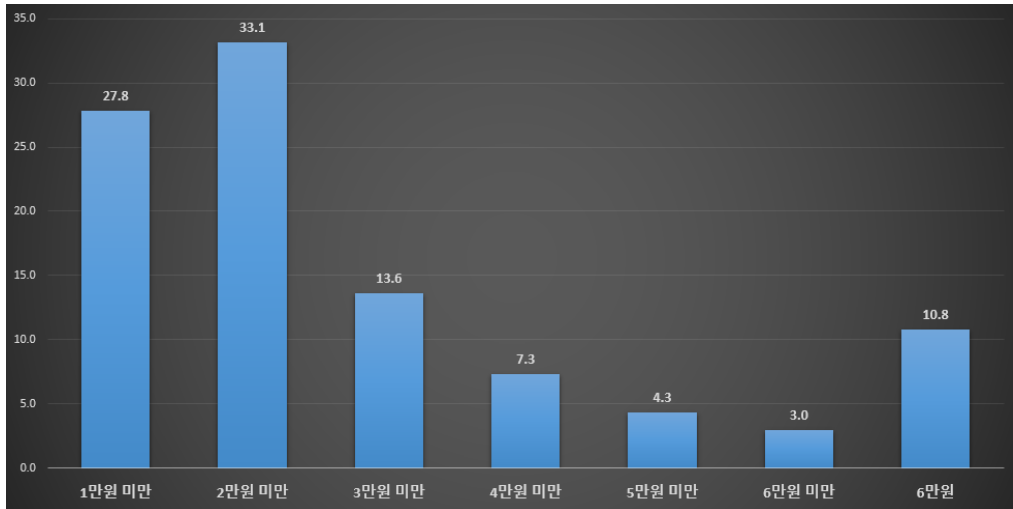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17] 재배면적별 밭직불금 지급현황(2020)

- 2020년 전북 농민이 지급받은 밭직불금은 평균 22,766.52원이었으며, 최소 금액은 6,000원, 최대 금액은 6만원이었음
- 밭직불금의 지급금액별 현황을 살펴보면, 1~2만원 미만을 받은 농업인은 전체의 33.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만원 미만은 27.8%, 2~3만원 미만 13.6%, 6만원 10.8% 등 순이었음

(단위 : %)



[그림 3-18] 지급금액별 밭직불금 지급현황(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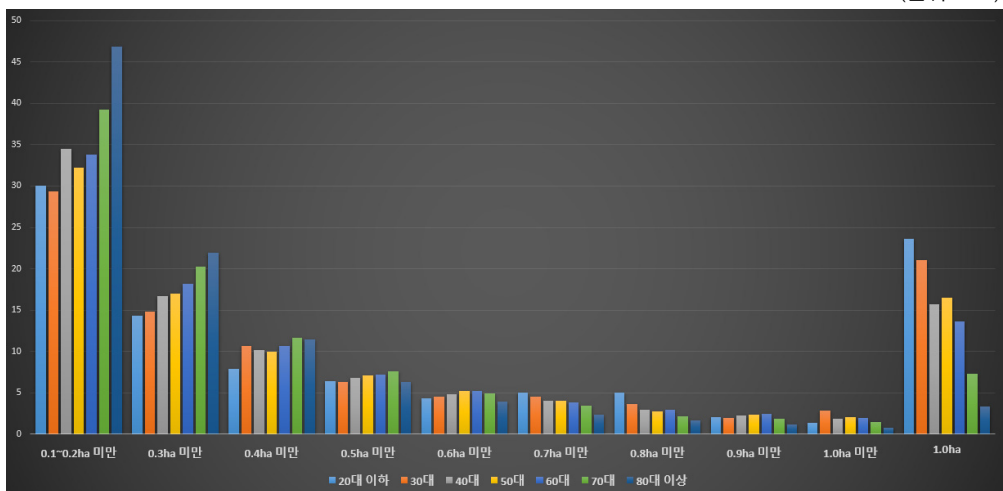
- 연령대·재배면적별 밭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20대 이하와 30대의 경우, 지급면적이 0.1~0.2ha 미만이 각각 전체의 30.0%, 29.4% 1.0ha 가 23.6%, 21.1%를 차지함
- 40대~60대까지 밭직불금이 적용되는 0.1~0.2ha 미만 밭을 소유한 농업인은 각각 전체의 34.5%(40대), 32.2%(50대), 33.8%(60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70대와 80대 이상의 지급면적은 0.1ha~0.2ha 미만이 각각 전체의 39.2%, 36.9%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0.2ha~0.3ha 미만으로 전체의 20.3%와 21.9%이었음

[표 3-12] 연령대·재배면적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0)<sup>10)</sup>

(단위 : %)

구분	0.1~0.2ha 미만	0.3ha 미만	0.4ha 미만	0.5ha 미만	0.6ha 미만	0.7ha 미만	0.8ha 미만	0.9ha 미만	1.0ha 미만	1.0ha
20대 이하	30.0	14.3	7.9	6.4	4.3	5.0	5.0	2.1	1.4	23.6
30대	29.4	14.8	10.7	6.3	4.5	4.5	3.7	2.0	2.9	21.1
40대	34.5	16.7	10.2	6.8	4.8	4.0	3.0	2.3	1.9	15.7
50대	32.2	17.0	10.7	7.1	5.2	4.0	2.8	2.4	2.1	16.5
60대	33.8	18.2	10.7	7.2	5.2	3.8	3.0	2.5	2.0	13.6
70대	39.2	20.3	11.7	7.6	4.9	3.5	2.2	1.9	1.5	7.3
80대 이상	46.9	21.9	11.5	6.3	3.9	2.4	1.7	1.2	0.8	3.4

(단위 : %)



[그림 3-19] 연령대·재배면적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0)

- 발직불금의 평균 금액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 20대 이하의 평균 발직불금이 29,717.29원으로, 30대를 제외한 타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발직불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0) 연령대와 지급면적에 따른 발직불금 지급현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chi^2=2,111,30^{***}$ ,  $^{****}$   $p<0.001$ )



- 80대 이상의 평균 발직불금은 17,324.52원으로, 타 연령대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발직 불금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3] 연령대별 평균 발직불금(2020)

(단위 : 원)

구분	평균	F
20대 이하	29,717.29 (a)	336.03***
30대	28,781.53 (ab)	
40대	25,523.93 (c)	
50대	26,233.05 (bc)	
60대	24,807.86 (c)	
70대	20,892.83 (d)	
80대 이상	17,324.52 (e)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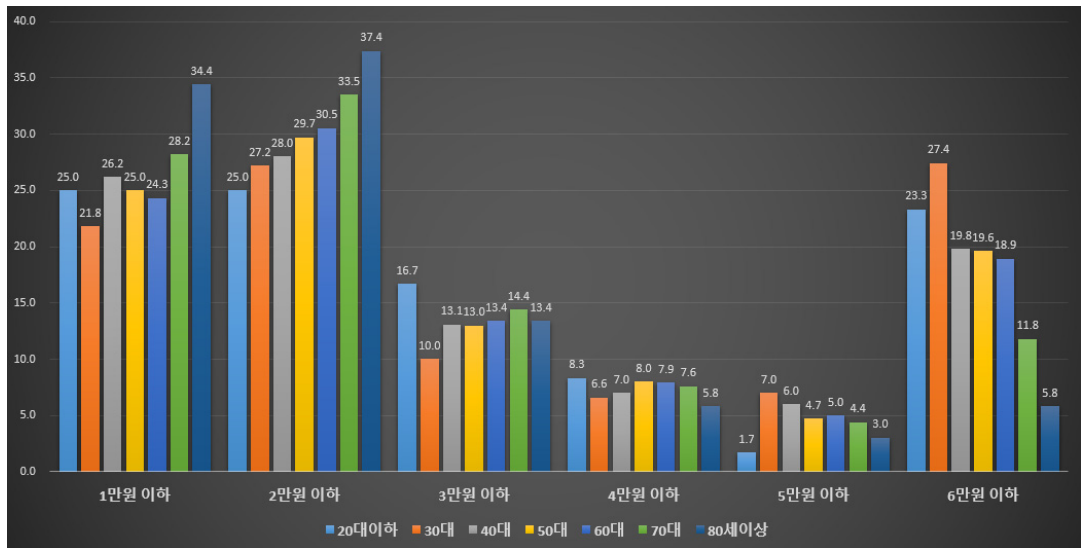
- 연령대·지급금액에 따른 발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20대 이하와 30대의 경우, 1~2만원 미만이 각각 전체의 26.4%, 27.5%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20대 이하는 6만원이 23.6%, 30대는 1만원 미만이 22.5%이었음
- 40대~60대의 발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이 각각 전체의 26.2%(40대), 23.5%(50대), 25.0%(60대), 29.7%(70대)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1~2만원 미만이 29.0%, 30.1%, 31.4%, 34.7%이었음
- 80대 이상은 1~2만원 미만이 3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1만원 미만(35.1%)이었음

[표 3-14] 연령대·지급금액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0)<sup>11)</sup>

(단위 : %)

구분	1만원 미만	2만원 미만	3만원 미만	4만원 미만	5만원 미만	6만원 미만	6만원
20대 이하	20.7	26.4	11.4	8.6	6.4	2.9	23.6
30대	22.5	27.5	11.4	6.9	6.5	4.3	21.0
40대	26.2	29.0	13.1	7.4	5.4	3.3	15.7
50대	23.5	30.1	13.4	8.2	4.7	3.7	16.4
60대	25.0	31.4	13.5	7.9	5.2	3.5	13.6
70대	29.7	34.7	14.5	7.3	3.9	2.7	7.3
80대 이상	35.1	38.5	13.1	5.6	2.8	1.5	3.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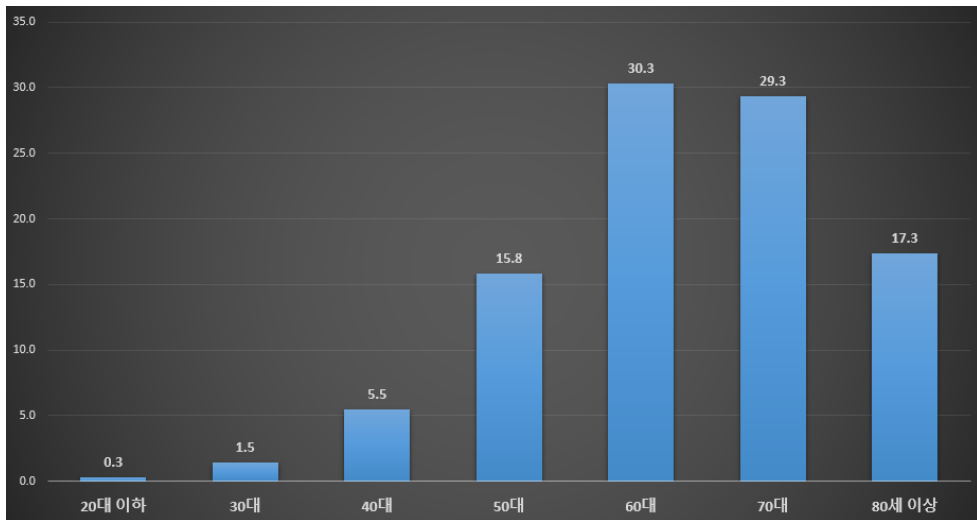
[그림 3-20] 연령대·지급금액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0)

11) 연령대와 지급금액에 따른 발직불금 지급현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chi^2=2,050.40^{***}$ ,  $^{****}$  p<0.001)

## 2) 2021년 발농업직불금 지급현황

- 2021년 발농업직불금(이하 발직불금)으로 1,600백만원(도비 800백만원, 시군비 800백만원)이 투입되었으며, 발직불금 지급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고자 함
- 발직불금을 받은 농민 중 60대가 전체의 30.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70대가 29.3%, 80세 이상 17.3%, 50대 15.8% 등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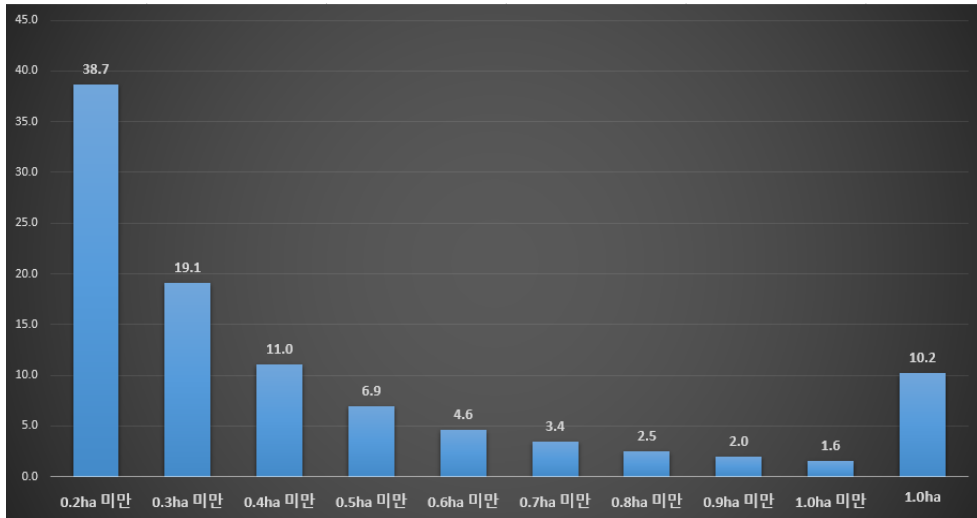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21] 연령대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1)

- 재배면적별 2021년 발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0.1ha~0.2ha 미만은 전체의 3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0.2ha~0.3ha 미만은 19.1%, 0.3ha~0.4ha 미만 11.0%, 1.0ha 10.2% 등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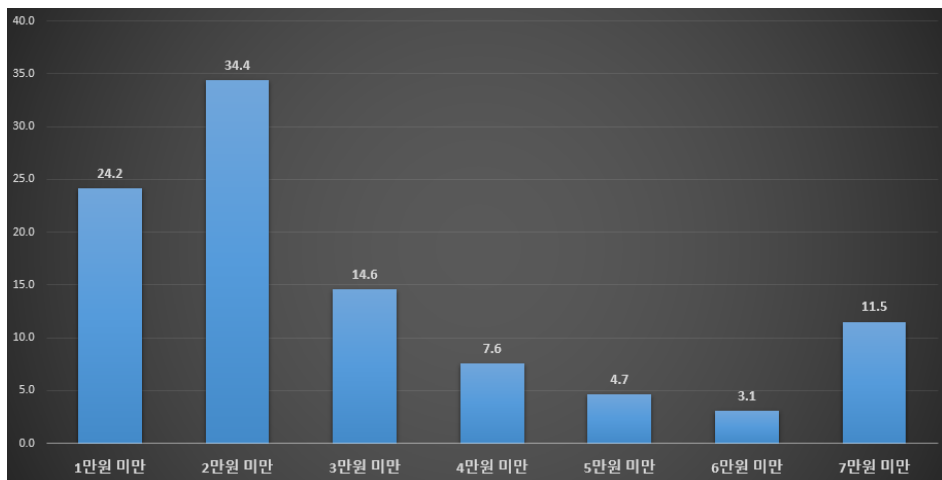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22] 재배면적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1)

- 지급금액별로 발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1~2만원 미만이 전체의 34.4%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만원 미만은 24.2%, 2~3만원 미만 14.6%, 6~7만원 미만 11.5% 등 순이었음

(단위 : %)



[그림 3-23] 지급금액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1)

- 연령대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밭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대 이하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0.1~0.2ha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30대 29.9%, 40대 34.6%, 50대 33.9%, 60대 35.1%, 70대 40.4%, 80대 이상 48.6%), 80대 이상의 경우, 전체 중 절반가량이 0.1~0.2ha 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0ha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20대 이하의 비율이 2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0.1~0.2ha 미만으로 그 비율은 23.6%이었음
- 70대와 80대 이상의 경우, 2ha~3ha 미만을 소유한 농민은 각각 전체의 20.3%, 22.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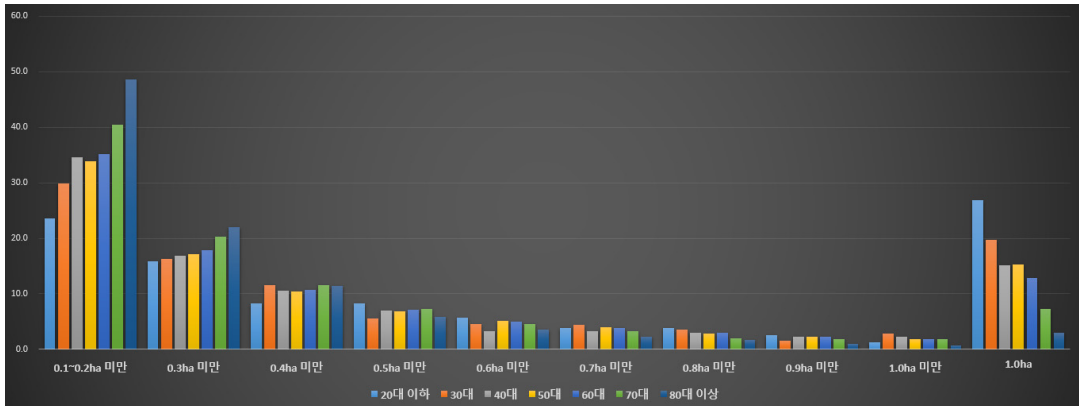
[표 3-15] 연령대·재배면적별 밭직불금 지급현황(2021)<sup>12)</sup>

(단위 : %)

구분	0.1~0.2 ha 미만	0.3ha 미만	0.4ha 미만	0.5ha 미만	0.6ha 미만	0.7ha 미만	0.8ha 미만	0.9ha 미만	1.0ha 미만	1.0ha
20대 이하	23.6	15.9	8.3	8.3	5.7	3.8	3.8	2.5	1.3	26.8
30대	29.9	16.3	11.6	5.6	4.6	4.4	3.5	1.6	2.8	19.7
40대	34.6	16.8	10.6	7.0	3.3	3.3	3.0	2.3	2.3	15.1
50대	33.9	17.1	10.4	6.8	5.2	4.0	2.9	2.3	1.9	15.3
60대	35.1	17.9	10.7	7.2	5.0	3.9	3.0	2.3	1.9	12.9
70대	40.4	20.3	11.5	7.3	4.6	3.3	2.0	1.8	1.8	7.3
80대 이상	48.6	22.0	11.4	5.9	3.5	2.3	1.7	1.0	0.7	3.0

12) 연령대와 지급면적에 따른 밭직불금 지급현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chi^2=2,134.85^{***}$ ,  $p<0.001$ )

(단위 : %)



[그림 3-24] 연령대·재배면적별 밭직불금 지급현황(2021)

- 밭직불금을 받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평균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24,338.20원이었으며, 연령별 평균 금액의 차이를 보임
- 20대 이하의 평균 밭직불금은 34,564.39원으로 타 연령에 비해 지급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0대 이상은 밭직불금으로 평균 18,353.31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받음

[표 3-16] 연령대별 평균 밭직불금(2021)

(단위 : 원)

구분	평균	F
20대 이하	34,564.39 (a)	350.66***
30대	30,589.84 (b)	
40대	27,745.70 (bc)	
50대	27,834.23 (bc)	
60대	26,631.89 (c)	
70대	22,526.30 (d)	
80대 이상	18,353.31 (e)	

\*\*\* p<0.001

- 연령대와 지급금액을 고려하여 발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20대 이하는 6~7만원 미만과 1~2만원 미만이 각각 28.0%와 27.4%의 비중을 차지함
- 30대의 경우, 1~2만원 미만, 6~7만원 미만이 각각 30.1%, 22.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음
- 40대 이상은 1~2만원 미만의 발직불금을 받는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비율은 40대가 30.4%, 50대 30.7%, 60대 32.0%, 70대 36.3%, 80대 이상 40.8%이었음
- 다음으로 1만원 미만의 직불금을 받는 연령대별 비율은 21.6%(40대), 21.0%(50대), 21.9%(60대), 25.3%(70대), 30.6%(80대 이상)로, 40대 이상은 발농사를 소규모의 농지에서 짓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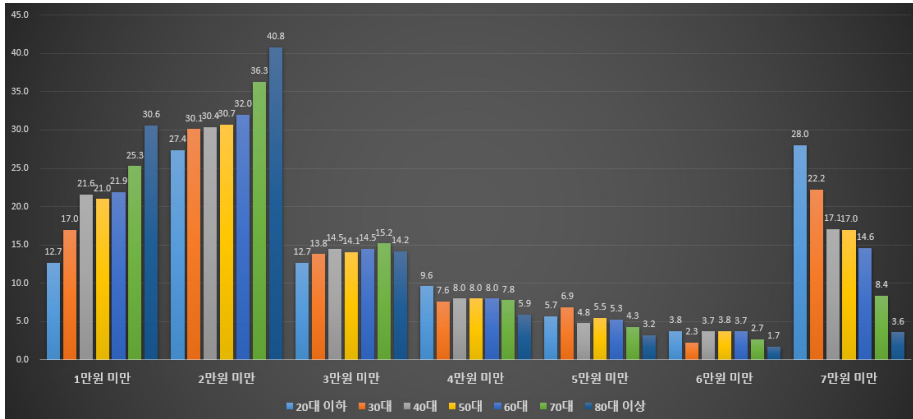
[표 3-17] 연령대·지급금액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1)<sup>13)</sup>

(단위 : %)

구분	1만원 미만	2만원 미만	3만원 미만	4만원 미만	5만원 미만	6만원 미만	7만원 미만
20대 이하	12.7	27.4	12.7	9.6	5.7	3.8	28.0
30대	17.0	30.1	13.8	7.6	6.9	2.3	22.2
40대	21.6	30.4	14.5	8.0	4.8	3.7	17.1
50대	21.0	30.7	14.1	8.0	5.5	3.8	17.0
60대	21.9	32.0	14.5	8.0	5.3	3.7	14.6
70대	25.3	36.3	15.2	7.8	4.3	2.7	8.4
80대 이상	30.6	40.8	14.2	5.9	3.2	1.7	3.6

13) 연령대와 지급금액에 따른 발직불금 지급현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chi^2=2,081.00^{***}$ ,  $p<0.001$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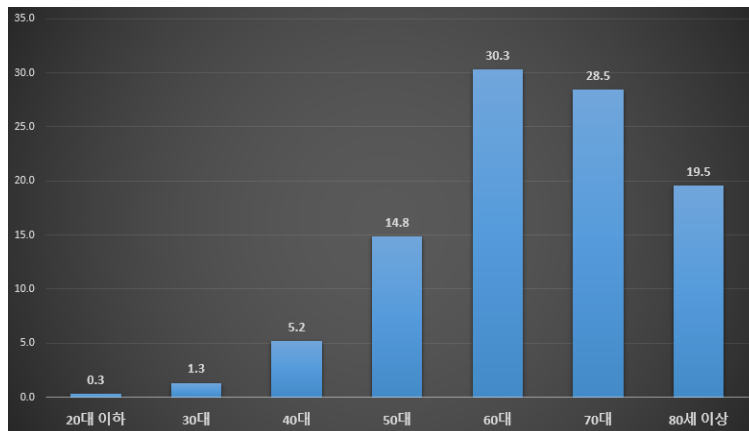


[그림 3-25] 연령대·지급금액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1)

### 3) 2022년 발농업직불금 지급현황

- 2022년에 지급된 발직불금의 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 수령자 중 60대가 30.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70대가 28.5%, 80대 이상 19.5%, 50대 14.8%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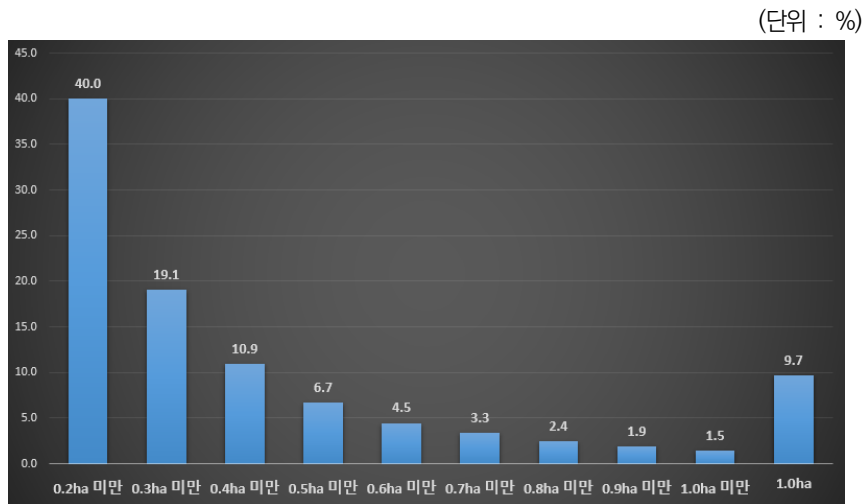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3-26] 연령대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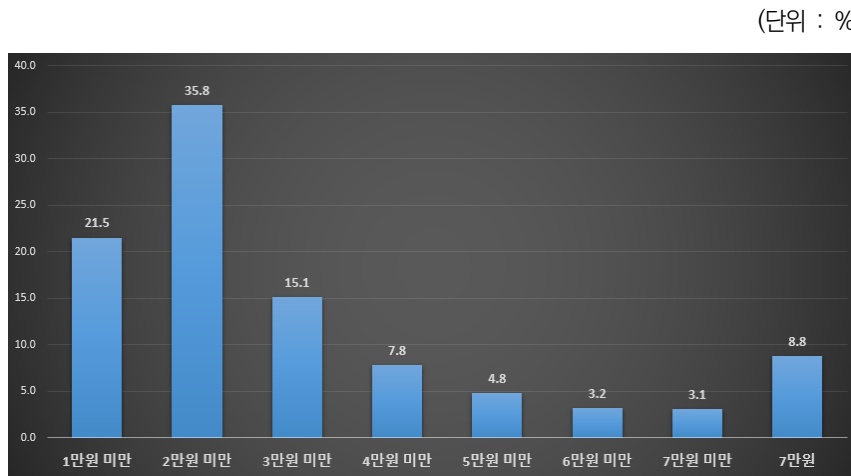


- 재배면적당 밭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0.1ha~0.2ha 미만은 전체의 40.0%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0.2ha~0.3ha 미만은 19.1%, 0.3ha~0.4ha 미만 10.9% 등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7] 재배면적별 밭직불금 지급현황(2022)

- 지급금액 현황을 살펴본 결과, 1~2만원 미만의 경우, 전체의 35.8%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만원 미만이 21.5%, 2~3만원 미만 15.1% 등 순이었음



[그림 3-28] 지급금액별 밭직불금 지급현황(2022)

- 연령대·재배면적별 밭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20대 이하는 0.1ha~0.2ha 미만이 전체의 31.7%, 1.0ha가 22.2% 등 순으로 나타남
- 30대~60대의 경우, 0.1ha~0.2ha 미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비율은 각각 전체의 31.6%, 36.1%, 35.2%, 36.9%이었음
- 70대와 80대 이상은 0.1ha~0.2ha 미만이 각각 전체의 41.1%와 5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0.2ha~0.3ha 미만이 20.2%와 21.3%이었음
- 특히, 80대 이상의 경우, 절반이 0.1ha~0.2ha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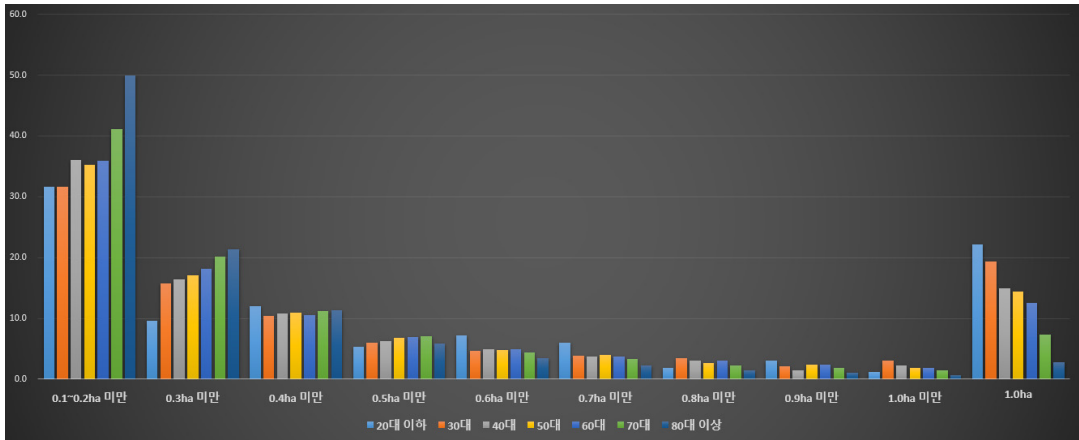
[표 3-18] 연령대·재배면적별 밭직불금 지급현황(2022)<sup>14)</sup>

(단위 : %)

구분	0.1~0.2ha 미만	0.3ha 미만	0.4ha 미만	0.5ha 미만	0.6ha 미만	0.7ha 미만	0.8ha 미만	0.9ha 미만	1.0ha 미만	1.0ha
20대 이하	31.7	9.6	12.0	5.4	7.2	6.0	1.8	3.0	1.2	22.2
30대	31.6	15.8	10.4	6.0	4.7	3.8	3.4	2.1	3.0	19.4
40대	36.1	16.4	10.8	6.3	4.9	3.7	3.0	1.5	2.3	15.0
50대	35.2	17.1	10.9	6.8	4.8	4.0	2.6	2.4	1.8	14.4
60대	35.9	18.2	10.5	7.0	4.9	3.7	3.0	2.4	1.8	12.5
70대	41.1	20.2	11.2	7.1	4.4	3.3	2.2	1.8	1.4	7.3
80대 이상	50.0	21.3	11.3	5.9	3.5	2.2	1.5	1.0	0.6	2.8

14) 연령대와 지급면적에 따른 밭직불금 지급현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chi^2=2,134.85^{***}$ ,  $p<0.001$ )

(단위 : %)



[그림 3-29] 연령대·재배면적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2)

- 2022년 지급된 평균 발직불금은 25,264.88원이었으며, 20대 이하의 평균 발직불금은 33,542.58원으로, 이들의 평균 발직불금은 타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금액인 것으로 나타남
- 80대 이상 평균 발직불금은 19,147.58원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금액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9] 연령대별 평균 발직불금(2022)

(단위 : 원)

구분	평균	F
20대 이하	33,542.58 (a)	342.81***
30대	32,131.81 (ab)	
40대	28,921.08 (bc)	
50대	28,877.15 (bc)	
60대	27,841.18 (c)	
70대	23,759.72 (d)	
80대 이상	19,147.58 (e)	

\*\*\* p<0.001

- 연령대·지급금액별 발직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별 지급금액의 현황이 차이를 보임
- 20대 이하부터 60대까지 1~2만원 미만이 각각 전체의 21.0%(20대 이하), 28.3%(30대), 31.8%(40대), 31.7%(50대), 33.1%(60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70대와 80대 이상의 경우, 1~2만원 미만은 각각 37.6%와 42.1%, 1만원 미만은 22.1%, 27.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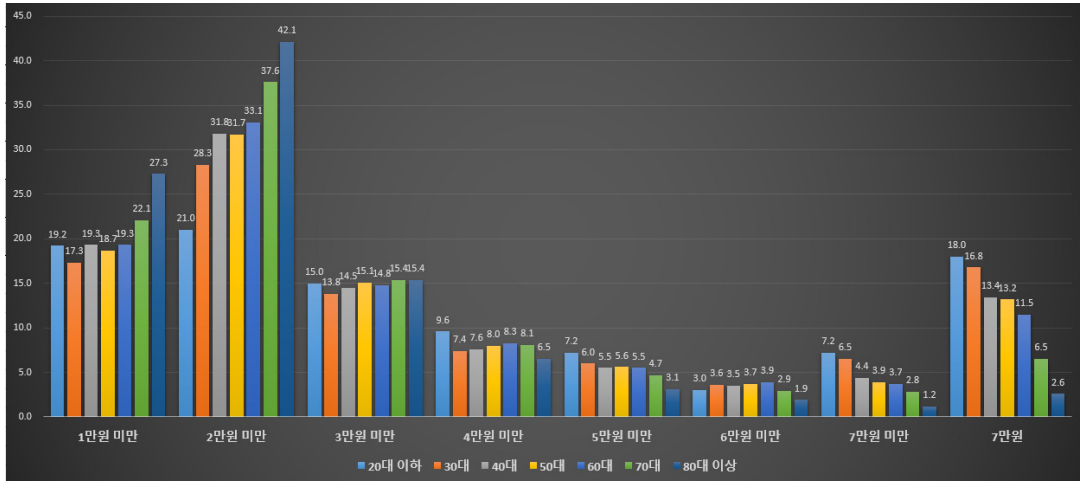
[표 3-20] 연령대·지급금액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2)<sup>15)</sup>

(단위 : %)

구분	1만원 미만	2만원 미만	3만원 미만	4만원 미만	5만원 미만	6만원 미만	7만원 미만	7만원
20대 이하	19.2	21.0	15.0	9.6	7.2	3.0	7.2	18.0
30대	17.3	28.3	13.8	7.4	6.4	3.6	6.5	16.8
40대	19.3	31.8	14.5	7.6	5.5	3.5	4.4	13.4
50대	18.7	31.7	15.1	8.0	5.6	3.7	3.9	13.2
60대	19.3	33.1	14.8	8.3	5.5	3.9	3.7	11.5
70대	22.1	37.6	15.4	8.1	4.7	2.9	2.8	6.5
80대 이상	27.3	42.1	15.4	6.5	3.1	1.9	1.2	2.6

15) 연령대와 지급금액에 따른 발직불금 지급현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chi^2=2,048.91^{***}$ ,  $*** p<0.001$ )

(단위 : %)



[그림 3-30] 연령대·지급금액별 발직불금 지급현황(2022)

[그림 3-31]

---

### 3. 시군 직접지불제 개요 및 추진현황

---

- 현재 시·군별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을 하는 농가 또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음
- 시군 농민 소득보전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시·군내에 거주하는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임
- 논농업을 위한 직불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군산, 익산, 완주, 고창, 부안이었으며, 그 외 지역은 논과 밭을 포함한 경작농지에 대한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음
- 전주, 정읍, 김제, 완주의 경우, 소농의 소득보전을 위해 소농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구당 최소 30만원에서 49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전주 농가당 30만원('22), 정읍 농가당 49만원('22), 김제 농가당 36만원('23), 완주 농가당 32만원('22)
- 지급대상 및 농지를 살펴보면, 군산의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뿐만 아니라 옥서면 국방부 소유지와 공익직불 미대상 경작농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원, 순창, 고창, 부안의 경우, 거주지 소재 농지뿐만 아니라 도내 또는 연접농지 경작하는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함
- 면적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중 재배면적에 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임실, 고창인 반면, 역진적 지급단가로 쌀직불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부안임
- 직불금 지급 상한면적은 지역별로 상이하여 가장 낮은 상한면적은 2.0ha(진안)이었으며, 가장 넓은 면적은 30.0ha(부안)임
- 군산의 경우, 직불금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타시군과 달리,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은 비료로, 상토 지원사업은 상토 또는 구입비(현금)로 지급함

[표 3-21] 전북 시군별 농민 소득보전 지원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지급대상/농지
전주	공익직불제	전주시 주소 및 관내 농지 경작 농업인(공익직불제 국비지원대상)
군산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	(맞춤형비료) 도쌀직불금 농지(공익직불제 지급대상)+옥서면 국방부 소유지+공익직불 미대상 경작농지 (상토) 벼재배 농지(공익직불제 지급대상)+옥서면 국방부 소유지+공익직불 미대상 경작농지
익산	논농업환경보전 직불제	익산시내 거주하는 농업인/공익직불제 지급대상, 전북내 농지, 익산시 거주 논산·서천 출경작 농지
정읍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읍시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m <sup>2</sup> 이상 농업에 종사 (법인제외, 전북내 농지이외 제외)
남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남원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및 관외 지역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김제	소농직불금 지원사업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김제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완주	쌀소득보전 직불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완주군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m <sup>2</sup> 이상 경작하는 자
진안	소득보전 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중 논·밭농업에 이용된 진안군 소재 농지
무주	농가 군비 직불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무주군 관내농지(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장수	군비 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임실	공익직불제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m <sup>2</sup> 이상 농업을 하는 자
순창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	순창군 관내 거주자가 경작하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관내 및 연접농지:정읍, 남원, 임실, 곡성, 담양, 장성)
고창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도내+영광군·장성군)에서 1,000m <sup>2</sup> 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부안	쌀직불제	부안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전라북도 농지를 경작하는 자(법인 제외)

구분	지원내용	비고
전주	(소농직불금) 농가당 30만원('22) (면적직불금) ha당 400,000천원(0.1~15ha, '22)	소농 : 1) 경작면적 0.5ha이하, 2) 소유면적(농가) 1.55ha미만, 3)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4) 농업 외 종합소득 개인 20백만원 미만, 가구 45백만원 미만, 5) 축산업 56백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38백만원 미만
군산	(맞춤형 비료) ha당 22.5포(밀거름 15포+이삭거름 7.5포) (상토) 육묘용상토 또는 상토구입비(현금)	2023년부터 시행
익산	m <sup>2</sup> 당 74.7원(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50,000m <sup>2</sup> 이하, '22)	현금 지급
정읍	(소농직불금) 농가당 49만원('22)/(면적직불금) ha당 803,000원('22) 0.1~3.0ha	현금 지급
남원	ha당 426,082원('23), 농가당 0.1~6.0ha	현금 지급
김제	(소농직불금) 농가당 36만원('23)	현금 지급
완주	(소농직불금) 농가당 32만원('22), (면적직불금) ha당 420,000원('22) 0.1~10.0ha	현금 지급
진안	ha당 270,000원(농업인당 0.1~2.0ha, '22)	현금 지급
무주	ha당 260,000원('22)	현금 지급
장수	ha당 333,000원('23)	
임실	ha당 300,000원('22), 0.1~3.0ha	현금 지급
순창	ha당 633,500원('22), 0.1~3.0ha	
고창	ha당 560,000원('22), 0.1~7.0ha	현금 지급
부안	1) 0.1~0.5ha 농가당 50만원, 2) 0.51~5.0ha 농가당 57만원, 3) 5.1~30ha 농가당 45만원('22)	현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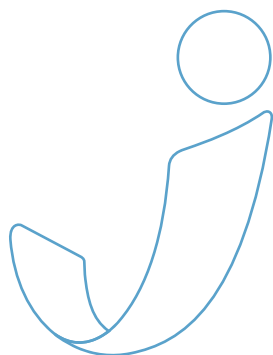




## 제4장

#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진단 및 개선과제

1.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진단
2. 전북 자체 직불금의 정량적 검토
3.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에 대한 전문가 진단
4.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의 성과와 과제





## 제4장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진단 및 개선과제

### 1.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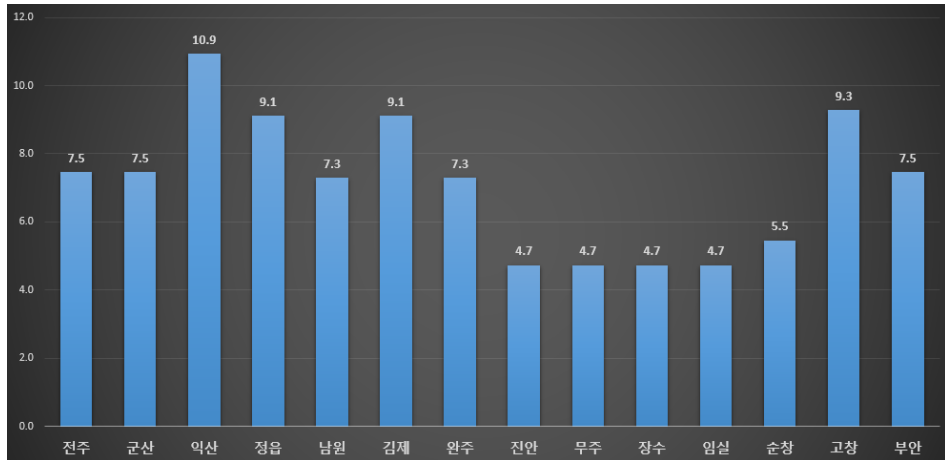
#### 가. 전북 농민의 농민 공익수당에 대한 인식

##### ■ 일반적 특성

- 전북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2022년에 수행하였던 연구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진단과 개선방향<sup>16)</sup>의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재분석하여 살펴봄
  - 조사대상은 ‘농민 공익수당’을 받는 전북 14개 시군의 농가를 모집단으로 하고, 표본은 ‘지역, 연령, 성’ 등을 고려하여 비례할당으로 추출함
  - 설문 조사원의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3일이었음
-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한 농업인은 총 549명으로 남성은 291명(53.0%), 여성은 258명(47.0%)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익산이 전체의 10.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고창이 9.3%, 정읍과 김제가 9.1%, 전주, 군산, 부안이 각각 7.5%, 남원과 완주가 각각 7.3% 등 순으로 나타남

16) 황영모, 김시백, 배균기, 정호중, 박로운. (2022).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진단과 개선 방향. 전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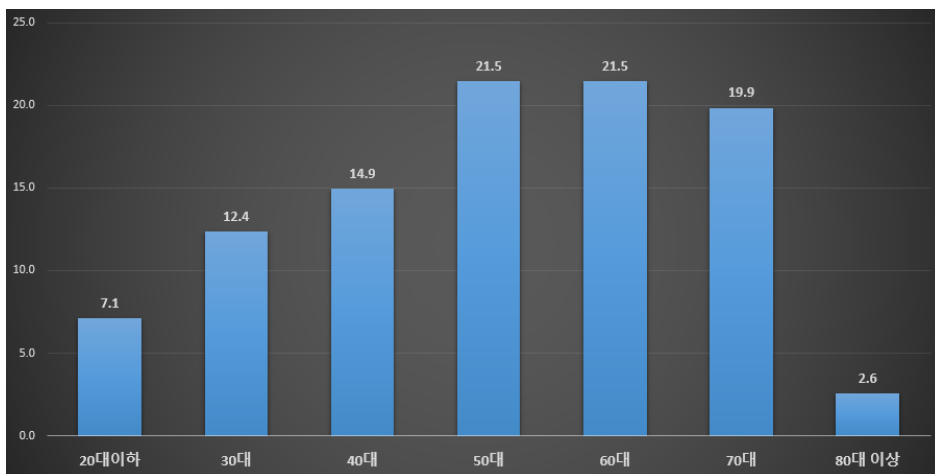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4-1]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2022)

- 응답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와 60대가 각각 전체의 21.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70대가 19.9%, 40대 14.9%, 30대 12.4% 등 순이었음

(단위 : %)



[그림 4-2]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2022)

- 농가소득의 경우, 평균이 3,536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2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천만원 이하가 20.9%, 2~3천만원 19.7%, 3~4천만원 미만 17.2% 등 순으로 나타남
- 평균 영농경력은 32.6년이었으며, 10년 미만의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은 전체의 38.2%이었으며, 30~40년 미만은 14.8%, 20~30년 미만과 50년 이상은 각각 12.6%, 40~50년은 11.3% 등 순으로 나타남
- 영농규모는 평균 논이 23,704m<sup>2</sup>, 밭은 5,488m<sup>2</sup>이었음
- 응답자의 경영형태를 살펴보면, 단독경영은 전체의 66.3%, 공동경영은 33.7%를 차지함

#### ■ 농민 공익수당 만족도

-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를 항목별로 살펴 보았음
- **(지급대상)**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는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고,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한하고 있음
- ‘지급대상’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평균이 7.17점<sup>17)</sup>으로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녀를 구분하여 지급대상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남성은 7.50점, 여성은 6.79점으로 남녀 모두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이 낮게 나타남

17) 응답범위는 0(만족하지 않는다)~10(만족한다)로, 11점 리커트척도를 활용하여 만족도를 측정하였음

[표 4-1] 성별 지급대상에 대한 만족도

남성	여성	t
7.50	6.79	3.52***

\*\*\* p<0.001

- 지급대상에 대한 만족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70대 이하는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0세 이상은 보통 수준으로 응답하였음

[표 4-2] 연령대별 지급대상에 대한 만족도

30대 이하	40~50대	60~70대	80세 이상	F
7.35 (a)	7.15 (a)	7.22 (a)	5.14 (b)	3.76*

\* p<0.05

- **(지급수준)**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농민 공익수당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평균 6.23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80세 이상은 보통 이하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와 60~70대에 비교해 낮은 만족 수준을 보임

[표 4-3] 연령대별 지급수준에 대한 만족도

30대 이하	40~50대	60~70대	80세 이상	F
6.58 (a)	5.84 (ab)	6.48 (a)	4.79 (b)	3.79*

\* p<0.05

- 농가소득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수준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4~5천만원 미만인 농업인은 평균 4.98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이었으며, 이들은 현재 연 60만원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 농가소득별 지급수준에 대한 만족도

1천만원 미만	2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4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F
6.39 (a)	6.33 (a)	6.40 (a)	6.06 (a)	4.98 (b)	6.31 (a)	3.79*

\* p<0.05

- **(지급방법)** 연1회 지역화폐 등으로 일괄지급하는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방법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 7.24점으로 이들은 현재 지급방법에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농민 공익수당 기대효과

- 농민 공익수당이 농업인의 농업경영, 영농활동, 농가경제 등에 도움이 됐는지 기대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항목별로 살펴봄
- **(농업경영과 영농활동)** 농민 공익수당이 농업경영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값은 7.06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비교적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농민 공익수당의 농업경영과 영농활동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60~70대의 기대효과가 40~50대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의 농업경영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

[표 4-5] 연령대별 농업경영과 영농활동에 대한 효과

30대 이하	40~50대	60~70대	80세 이상	F
7.20 (ab)	6.59 (a)	7.41 (b)	6.93 (ab)	4.11**

\*\* p<0.05

- **(농가경제와 살림살이)** 농민 공익수당이 응답자의 농가경제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평균이 7.07점으로 비교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농민 공익수당의 농가경제와 살림살이에 대한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60~70대가 40~50대와 80세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함

[표 4-6] 연령대별 농가경제와 살림살이에 대한 효과

30대 이하	40~50대	60~70대	80세 이상	F
7.23 (ab)	6.61 (a)	7.42 (b)	6.36 (a)	4.89***

\*\*\* p<0.001

- **(생산활동 지속성)** 농민 공익수당이 응답자의 생산활동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됐는지를 평가한 결과, 평균이 7.04점으로 비교적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농민 공익수당이 생산활동 지속성에 효과가 있었는지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60~70대가 80세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함

[표 4-7] 연령대별 생산활동 지속성에 대한 효과

30대 이하	40~50대	60~70대	80세 이상	F
7.00 (ab)	6.61 (ab)	7.46 (a)	6.36 (b)	5.14**

\*\* p<0.01

### ■ 농민 공익수당 개선과제

- 농업인이 현재 추진 중인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농민 공익수당에 대한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항목별로 살펴봄
- **(지원금 상향)** ‘현재 지원되는 금액의 단가를 더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평균이 6.78점으로 중간 정도보다 비교적 높은 응답수준을 보여 지원금 상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영형태별 지원금 상향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살펴보면, 단독경영 농가가 부부 공동경영 농가에 비해 동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8] 경영형태별 지원금 상향에 대한 의견

단독경영	공동경영	t
6.97	6.43	2.12*

\* p<0.05

- **(농업인 지원)** ‘지급대상을 농업경영체(농업인)로 확대’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살펴보면, 평균이 6.13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인 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질문에 80세 이상은 타 연령대와 달리 농업인 지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 연령대별 농업인 지원에 대한 의견

30대 이하	40~50대	60~70대	80세 이상	F
5.84 (a)	5.80 (a)	6.68 (a)	3.93 (b)	6.12***

\*\*\* p<0.001

- 농가소득별로 지급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농가소득이 1천만원 미만과 5천만원 이상 응답자는 4~5천만원 미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4~5천만원 응답자는 지급대상 확대에 대한 평균 점수가 중간 정도로 나타남

[표 4-10] 농가소득별 농업인 지원에 대한 의견

1천만원 미만	2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4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F
6.40 (a)	6.24 (ab)	6.13 (ab)	5.35 (bc)	5.10 (c)	6.48 (a)	2.72*

\* p<0.05

- **(지급기준 완화)** 현재 농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지급제외대상으로, 이에 대한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평균은 7.23점으로 비교적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의견을 물어본 결과, 80세 이상 지급기준 완화에 대한 동의 수준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정도는 보통 정도로 나타남

[표 4-11] 연령대별 지급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

30대 이하	40~50대	60~70대	80세 이상	F
7.30 (a)	7.06 (a)	7.44 (a)	5.57 (b)	2.74*

\*  $p < 0.05$

## 나. 농민 공익수당의 경제적 효과 검토<sup>18)</sup>

- 현금으로 지원하는 농민 공익수당은 농민 소득의 일시적 증가는 지역사회 내 상품 또는 서비스 소비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키고 관련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경제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농민 공익수당 사용현황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 ■ 농민 공익수당의 사용현황

- 농민 공익수당을 받은 농업인의 사용처의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1순위는 절반 이상인 55.8%가 농자재 구입에 농민 공익수당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순위로는 절반가량(46.1%)이 생활용품 구입 등에 농민 공익수당을 사용하였음

[표 4-12] 농민 공익수당 지원금 사용처

(단위 : %)

구분	농자재 구입 등	생활용품 구입 등	식재료구입과 식사 등	자녀 교육 등	문화·여가 활동 등	의료·복지 등	기타
1순위	55.8	19.0	13.0	4.0	1.8	5.5	0.9
2순위	14.1	46.1	28.3	3.5	1.4	6.4	0.4

- 농민 공익수당 지원금의 사용처별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금액의 42.4%가 농자재 구입 등에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식료품 구입 및 식사에 21.8%, 생활용품 구입 20.9% 등이 지출됨

[표 4-13] 농민 공익수당 지원금액의 사용처별 비율

(단위 : %)

농자재 구입 등	생활용품 구입 등	식재료구입과 식사 등	자녀 교육 등	문화·여가 활동 등	의료·복지 등	기타
42.4	20.9	21.8	6.3	1.9	5.5	1.2

18) '황영모 외. (2022).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진단과 개선방향' 재정리함

- 경영형태별 농민 공익수당 지원금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단독경영과 공동경영 모두 농자재 구입에 가장 많이 지출했으며(30.7%, 27.7%), 다음은 생활용품 구입(27.1%, 26.9%), 식재료 구입 및 식사(24.1%, 21.0%) 등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특성을 살펴보면, 60대 이하의 경우 농자재 구입의 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생활용품 구입, 식재료 구입 및 식사 등 순으로 나타남
  - 30대의 경우, 생활용품 구입(28.3%)과 식재료 구입 및 식사 지출(28.3%) 비율이 동일함
- 70대인 경우, 식재료 구입 및 식사에 농민 공익수당을 지출한 비율은 2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생활용품 구입(25.5%), 농자재 구입(21.3%) 등 순으로 나타남.
- 60대 이상은 의료·복지에 지출한 농민 공익수당의 비율이 타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60대는 13.2%, 70대 이상은 14.9%로 나타남
- 농가소득별로 농민 공익수당 사용처를 살펴본 결과, 소득 상관없이 농자재 구입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천만원 이하와 5천만원 이상은 생활용품 구입과 식료품 구입 및 식사, 그 외는 생활용품 구입, 식재료 구입 및 식사 등 순으로 나타남

[표 4-14] 농가특성별 농민 공익수당 지원금 사용처

(단위 : %)

구분		농자재 구입 등	생활용품 구입 등	식재료구입과 식사 등	자녀 교육 등	문화·여가 활동 등	의료·복지 등
경영 형태	단독	30.7	27.1	24.1	7.5	3.5	6.5
	공동	27.7	26.9	21.0	8.4	4.2	10.1
연령	20대 이하	27.5	27.5	22.5	7.5	7.5	5.0
	30대	31.7	28.3	28.3	5.0	1.7	5.0
	40대	29.8	28.6	22.6	8.3	4.8	6.0
	50대	33.7	25.3	21.7	9.6	3.6	4.8
	60대	34.2	26.3	21.1	5.3	0.0	13.2
	70대 이상	21.3	25.5	27.7	6.4	2.1	14.9
농가 소득	1천만원 이하	25.7	24.3	24.3	7.1	5.7	10.0
	1~2천만원	28.2	25.6	25.6	7.7	5.1	7.7
	2~3천만원	33.3	28.9	22.2	6.7	2.2	6.7
	3~4천만원	32.7	28.8	23.1	7.7	0.0	7.7
	4~5천만원	30.8	33.3	20.5	5.1	2.6	7.7
	5천만원 이상	30.0	24.4	24.4	10.0	3.3	6.7

### ■ 경제적 파급효과

- 2022년에 표본집단의 지출 비율과 2015년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지역 단위에서 발생한 경제적 효과를 제시한 황영모 외(2022) 연구의 결과를 재정리함
  - 2022년에 추진되었던 해당 연구의 표본집단의 소비패턴은 2021년 농민 공익수당의 지출에 기반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지역간 산업연관표가 가장 최신 데이터로 현 시점에서의 지역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내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민 공익수당 정책이 지역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주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정책 유형과의 비교가 필요함

- 황영모 외(2022) 연구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한 농민 공익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어 농민이 자유롭게 소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지역 내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살펴보았음
  - 100%를 지역 내에서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와 달리, 현금은 타지역에서 소비하거나 저축 등을 할 수 있어 지역 내에서 현금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낮을 수 있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상 전북도민은 소득의 81%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4%를 지역 내에서 지출함

[표 4-15] 전북도민의 소득 및 지출 규모(201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북 총 소득	전북 총 소비	지출	
			도내	도외
금액	33,110,259	26,952,429	14,713,005	12,239,424
소득 대비 비중	100.0	81.4	44.4	37.0

- 64,280백만원의 현금(107,134명)을 소비지역과 기간 제한 없이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의 81.4%만 이들은 지출할 것이며, 지출금액의 44.5%는 도내, 37.0%는 도외에서 지출할 것으로 가정함
- SOC사업(도로, 시설 건립)과 공공 행정 인력 확충(공무원 추가 고용 및 행정서비스 확대 사업)에 동일 예산이 투입되었을 경우의 경제적 효과와 비교함

[표 4-16] 사업 유형별 투입산출모형 계산 과정

구분		투입 범위	투입 규모
농민 공익수당	지역화폐	설문조사 지출항목별 지출 비율 적용	64,280백만원이 지역 내 소비됨
	현금	산업연관표 상 전북도민의 산업별 지출항목	도내 소비(44.5%) : 28,564백만원 도외 소비(37.0%) : 23,762백만원
SOC사업		산업연관표 상 건설업으로 투입	64,280백만원 투입
공공행정		산업연관표 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으로 투입	64,280백만원 투입

- 각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본 결과, 농민 공익수당으로 64,280백만원이 지급되어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졌을 때, 전라북도 산업생산은 841.1억원, 부가가치는 339.9억원, 고용은 989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역화폐 지급효과의 내재화율<sup>19)</sup>은 생산이 68.2%, 부가가치 68.7%, 고용 80.3% 수준으로, 생산이 44.3%, 부가가치 47.7%, 고용 56.4%인 현금 지급 효과의 내재화율과 비교했을 때 지역 입장에서 지역화폐 지급의 효율성이 더 높음

[표 4-17] 농민 공익수당 지급방식(지역화폐, 현금)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명)

구분	도내			도외			전국		
	생산	부가가치	고용	생산	부가가치	고용	생산	부가가치	고용
지역화폐	841.1	339.9	989	392.2	154.6	243	1,233.3	494.5	1,232
(내재화율)	68.2%	68.7%	80.3%						
현금	371.2	186.6	402						
(내재화율)	44.3%	47.7%	56.4%						

- 도로 및 건물 건립 등 SOC사업의 경우, 경제적 효과의 내재화 측면에서 타 지역으로 효과가 유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행정 서비스 확대는 생산과 고용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경제적 효과의 내재화율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표 4-18] 전북 도내 정책 유형별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단위 : 억원, 명)

지역화폐			SOC사업			공공행정		
생산	부가가치	고용	생산	부가가치	고용	생산	부가가치	고용
841.1	<b>339.9</b>	989	813.7	352.7	<b>648</b>	<b>703.6</b>	567.3	772

19) '전라북도 내 효과/전국 효과' 비율

---

## 2. 전북 자체 직불금의 정량적 검토

### 가. 쌀직불금

- 지난 3년간(2020~2022) 쌀직불금 성과를 살펴본 결과, 수혜 농업인은 2020년 90,401명, 2021년 91,584명, 2022년 93,459명으로 증가세를 보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와 70대가 전체 수혜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80대 이상의 경우, 2020년 14.7%, 2021년 16.1%, 2022년 18.0%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 지급면적별로 살펴보면, 0.1~1.0ha 미만이 전체 수혜 인원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2.5~3.0ha는 2020년~2022년 모두 전체 중 13.0% 이상으로 나타남
- 지급금액별로 살펴보면, 10만원 이하를 받는 인원이 전체 중 56% 이상(2020년 56.6%, 2021년 57.7%, 2022년 58.9%)이었으며, 35만원 초과~39만원 이하의 쌀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의 12% 이상을 차지하였음



[표 4-19] 쌀직불금의 정량적 검토

(단위 :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원		90,401	91,584	93,459
연령대	50대 미만	9.5	9.2	9.2
	50대	17.0	16.2	15.6
	60대	29.4	29.7	29.8
	70대	29.5	28.8	27.5
	80대 이상	14.7	16.1	18.0
면적	0.1~0.5 ha 미만	41.9	44.0	45.5
	0.5 ~1.0 ha 미만	22.5	21.8	21.4
	1.0 ~1.5 ha 미만	11.1	10.7	10.4
	1.5~2.0 ha 초과	6.4	6.1	5.9
	2.0~2.5 ha 초과	3.8	3.7	3.6
	2.5~3.0 ha	14.3	13.7	13.2
금액	5만원 이하	31.7	32.7	34.0
	10만원 이하	24.9	25.0	24.9
	15만원 이하	12.5	12.0	11.9
	20만원 이하	7.5	7.4	7.2
	25만원 이하	4.9	4.8	4.5
	30만원 이하	3.2	3.1	3.1
	35만원 이하	2.3	2.3	2.3
	39만원 이하	13.0	12.7	12.2

---

## 나. 밭직불금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밭직불금을 받은 인원은 2020년 61,277명, 2021년 59,487명, 2022년 58,044명으로 감소세를 보임
- 연령대별로 수령 인원을 살펴본 결과, 60대와 70대가 60%가량(2020년 59.9%, 2021년 59.6%, 2022년 58.8%)으로 나타났으며, 80대 이상은 2020년 16.1%, 2021년 17.3%, 2022년 19.5%로 꾸준히 증가함
- 지급면적별로 지급 성과를 살펴보면, 0.1~0.2ha 미만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2020년 37.3%, 2021년 38.7%, 2022년 40.0%), 다음으로 0.2~0.4ha 미만(2020년 30.2%, 2021년 30.1%, 2022년 30.0%), 0.4~0.6ha 미만(2020년 12.0%, 2021년 11.5%, 2022년 11.2%), 1.0ha(2020년 10.8%, 2021년 10.2%, 2022년 9.7%) 등 순으로 나타남
- 지급금액의 경우, 1~2만원 미만이 각각 33.1%, 34.4%, 3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만원 미만(2020년 27.8%, 2021년 24.2%, 2022년 21.5%), 2~3만원 미만(2020년 13.6%, 2021년 14.6%, 2022년 15.1%) 등 순으로 나타남
- 2020년과 2021년은 6~7만원 미만이 10% 이상이었으며(10.8%, 11.5%), 2022년은 7만원이 8.8%이었음<sup>20)</sup>

---

20) 2022년의 지급단가는 7만원/ha이었음

[표 4-20] 발직불금의 정량적 검토

(단위 :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원		61,277	59,487	58,044
연령대	50대 미만	7.4	7.3	7.0
	50대	16.6	15.8	14.8
	60대	29.6	30.3	30.3
	70대	30.3	29.3	28.5
	80대 이상	16.1	17.3	19.5
면적	0.1~0.2 ha 미만	37.3	38.7	40.0
	0.2 ~0.4 ha 미만	30.2	30.1	30.0
	0.4 ~0.6 ha 미만	12.0	11.5	11.2
	0.6~0.8 ha 미만	6.0	5.9	5.7
	0.9~1.0 ha 미만	3.7	3.6	3.4
	1.0ha	10.8	10.2	9.7
금액	1만원 미만	27.8	24.2	21.5
	2만원 미만	33.1	34.4	35.8
	3만원 미만	13.6	14.6	15.1
	4만원 미만	7.3	7.6	7.8
	5만원 미만	4.3	4.7	4.8
	6만원 미만	3.0	3.1	3.2
	7만원 미만	10.8	11.5	3.1
	7만원	-	-	8.8

### 3.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에 대한 전문가 진단

- 현재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를 진단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자, 실무자 등 총 7명을 대상으로 자문회의와 전문가 FGI(5.22., 6.8.)를 실시함
  - 교수 2명, 연구자 4명, 시군 실무자 1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이 중 농민 공익수당(농민수당) 관련 연구를 한 연구자들과 각각 2회 이상의 지속적인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음
  - 교수 2명, 연구자 1명, 시군 실무자 1명으로 구성하여 전문가 FGI를 5월 22일, 6월 8일 2차례 실시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와 전문가 FGI에서는 이들과 함께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함께 논의하였음
- 논의에서 등장한 주요 이슈는 1)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 2) 도 자체 직접지불제(쌀, 밭) 운영, 3)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4) 시군 자체 직접지불제 운영 등으로 나타남

#### ■ 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 농민 공익수당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농업인을 위한 지원금이나 현재 전라북도의 농민 공익수당은 ‘농가’를 단위로 지급하고 있음
- 농민 공익수당의 목적과 같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주체로 농가가 아닌 농업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현재,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개개인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역할과 기여를 유도·인정하는데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주체로 보고 있어 그 의미를 충족하는데 다소 제한점이 있음
- 이에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 단위를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현재 농가를 지급 단위로 하는 농민 공익수당제도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농업경영주를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농가 내 농업경영체 등록 가구원의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함
- 또한, 초고령농가의 은퇴시기가 높아져 농지이양의 어려움으로 귀농귀촌인, 청년농이 농지를 취득하는데 하나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 도 자체 직접지불제(쌀, 밭) 운영

- 현재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는 쌀과 밭직불금으로 분리되어 지급되고 있음
- 쌀직불금의 경우, 지급면적은 0.1ha부터 3.0ha까지, 1ha당 13만원을 지급단가로 하고 있으나, 밭직불금의 지급면적은 0.1ha~1.0ha, 지급단가를 1ha당 7만원임
- 쌀직불금과 밭직불금의 지급기준 차이의 이론적 근거는 현재 불명확하며, 이는 밭농사가 논농사에 비해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점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대부분 일치하였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 증진에서의 밭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과소평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논과 밭을 구분없이 논과 밭을 통합한 농지를 기반으로 지급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현재 도 자체 직접지불제는 면적지불제를 근거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어 농지가 많은 농가에게 유리한 제도임을 전문가들은 강조하였음
- 정부는 소농의 소득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 면적을 3구간으로 구분하여 구간이 올라갈수록 지급단가를 낮추는 역진적 지급 단가방식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 중소농의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고 국가의 기본형 공익지불제의 지급방식에 맞춰 역진적 지급단가로 설정하여 도 자체 직접지불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의 의견은 일치하였음
- 또한,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여와 중소농과 대농의 형평성을 위해 지급면적을

---

0.1~3.0ha로 설정하는 것에 대부분 의견을 일치하였음

### ■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 현재 전라북도는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 도 쌀직불금, 도 밭직불금, 시군 자체 직불금을 운영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유사사업이 파편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농업인의 정책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음
- 이러한 지원금은 분산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농업인이 수령금액이 적기 때문에 농업인의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보았음
- 또한, 도, 시군 공무원의 4개의 제도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 업무(신청서 입력·관리, 정보 입력, 부정수급 사례 확인, 신청자 관리·점검, 신청자 의무 이행 확인 등)로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의 문제가 논의되었음
- 과중한 행정업무는 공무원의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급대상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설계·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보았을 때, 도 쌀직불금과 밭직불금을 통합하여 도 공익직불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음
- 또한, 도 자체 직불금의 예산을 고려해보았을 때 농민 공익수당과 통합하여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음

### ■ 시군 자체 직불금 운영

-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농민공익수당, 도 자체 직접지불제, 시군 자체직불제를 모두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4개 제도 통합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지만, 시군별 자체 직불금의 격차로 인한

---

적은 금액을 받는 지역주민이 가질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할 때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반면, 시군 자체 직불금을 유지하고, 농민 공익수당과 도 자체 직접지불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 시군 자체 직불금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군의 자율성 문제로 시군의 반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음

### ■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의 개선 방향

- (농민 공익수당)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는 농업인으로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의 대상은 농가가 아닌 농업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 단위를 농업인으로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농업인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부정수급과 대상자 관리가 쉬운 방안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농사를 짓는 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즉, 가구와 상관없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모두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며, 농업인으로 확대할 때 1인가구의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2인 이상 경영체가 있는 가구와 1인가구간 지원금액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
- (도 자체 직접지불제) 발농사의 공익적 가치의 상대적 과소평가 해소를 위해 논과 밭 면적을 합산하여 지급 면적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 농지가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도 자체 직접지불제의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면적지불제에서 역진적 지급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시군 자체 직접지불제) 시군의 자율권 보장의 측면에서 시군 자체 직접지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군별 직불금 형평성을 위해 도 소득보전 지원금과 통합해야 한

---

다는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되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제도의 통합) 현재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제도의 통합으로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급금액을 높여 농업인의 정책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또한, 제도의 분산된 집행 채널을 일원화하여 제도 수혜대상 농업인 관리 용이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농업인의 자긍심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정책적 효과와 성과를 높일 수 있음



#### 4.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의 성과와 과제

- 현재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체계는 ‘농민 공익수당’, ‘도 직접지불제(쌀직불금, 밭직불금)’, ‘시군 직접지불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4-21]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구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예산('22 기준)	지급 인원('22 기준)
농민공익수당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북 내 양봉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당 연 1회 6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98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7,349명</li> </ul>
도 직접지불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거주 농업인 중 농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m <sup>2</sup> 이상 논/밭농사를 하는 자(법인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직불금('21) : (0.1~3.0ha) 130,000원/ha</li> <li>▪ 밭직불금('21) : (0.1~1.0ha) 66,000원/h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직불금 : 120억원</li> <li>▪ 밭직불금 : 16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직불금 : 93,454명</li> <li>▪ 밭직불금 : 57,369명</li> </ul>
시군 직접지불제	시군별 지급대상에 차이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별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별 차이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별 차이가 있음</li> </ul>

## 가.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제도의 성과

### 1) 농민 공익수당

#### ■ 정량적 성과

- 지난 3년간(2020~2022) 시행된 농민 공익수당의 수혜 농가는 2020년 106,399호, 2021년 112,222호, 2022년 114,872호로 꾸준히 증가함
- 여성과 80대 이상 경영주의 수혜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꾸준히 증가함
  - 여성의 경우, 2020년 29.5%, 2021년 30.2%, 2022년 31.1%로 증가하였음
  - 80대 이상의 비율은 2020년 16.4%, 2021년 18.1%, 2022년 20.6%로 증가세를 보임

[표 4-22] 농민 공익수당 정량적 성과

(단위 : 호,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20~'22)
인원		106,399	112,222	114,872	7.96%
성별	남성	70.5	69.8	68.9	△1.6%p
	여성	29.5	30.2	31.1	1.6%p
연령대	50대 미만	8.0	6.8	6.7	△1.3%p
	50대	16.5	15.6	14.7	△1.8%p
	60대	29.1	29.6	29.6	0.5%p
	70대	30.0	29.4	28.4	△1.6%p
	80세 이상	16.4	18.1	20.6	4.2%p

#### ■ 정성적 성과

- 농민 공익수당의 성과를 정성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받은 수혜자가 인식하고 있는 만족도, 기대효과,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농민 공익수당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는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민

공익수당으로 농업경영, 영농활동, 농가경제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음

- 농민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 정도와 농민 공익수당의 도움 정도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지원금 상향과 자격 지원을 완화하여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지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음

[표 4-23] 농민 공익수당 만족도(0~10점)

(단위 : 점)

지급대상	지급수준	지급방법
7.17	6.23	7.24

[표 4-24] 농민 공익수당 기대효과(0~10점)

(단위 : 점)

농업경영과 영농활동	농가경제와 살림살이	생산활동 지속성
7.06	7.07	7.04

[표 4-25] 농민 공익수당 개선과제(0~10점)

(단위 : 점)

지원금 상향	농업인 지원
6.78	6.13

## ■ 경제적 효과

- 농민 공익수당 수혜자의 사용처를 우선순위로 살펴본 결과, 절반 이상(55.8%)이 농자재를 구입하는데 농민 공익수당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으로 생활용품 구입(19.0%), 식재료 구입과 식사(13.0%) 등 순으로 나타남
- 사용처별 농민 공익수당의 사용금액의 비중의 경우, 농민 공익수당의 42.4%를 농자재 구입에 사용하였고, 식자재 구입과 식사는 21.8%, 생활용품 구입은 20.9%이었음

[표 4-26] 농민 공익수당 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처 비율

(단위 : %)

구분	농자재 구입 등	생활용품 구입 등	식재료구입과 식사 등	지역 교육 등	문화·여가 활동 등	의료·복지 등	기타
1순위	55.8	19.0	13.0	4.0	1.8	5.5	0.9
비율	42.4	20.9	21.8	6.3	1.9	5.5	1.2

- 지역화폐로 농민 공익수당이 지급되었을 때, 전북 산업생산은 841.1억원, 부가가치는 339.9억원, 고용은 989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 동일 예산으로 SOC사업과 공공행정사업 추진 시 농민 공익수당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한 결과, SOC사업과 공공행정사업에 비해 농민 공익소득은 지역 내 생산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예측됨
  - SOC사업 추진은 경제적 효과 내재화에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공공행정 서비스 확대는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재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투입 대비 효과가 낮음

[표 4-27] 전북 도내 정책 유형별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명)

지역화폐			SOC사업			공공행정		
생산	부가가치	고용	생산	부가가치	고용	생산	부가가치	고용
841.1	<b>339.9</b>	989	813.7	352.7	<b>648</b>	<b>703.6</b>	567.3	772

## 2) 전북 직접 지불제

### ■ 정량적 성과

- 2020년 90,401명에서 2022년 93,459명으로, 쌀직불금 수혜 인원은 3.38% 증감률을 보였음
- 밭직불금의 경우, 2020년 61,277명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58,044명으로 집계되었음
- 밭직불금 수혜 인원의 증감률은 -5.28%이었음

[표 4-28] 전북 직접 지불제 정량적 성과

(단위 :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20~'22)
쌀직불금	90,401	91,584	93,459	3.38
밭직불금	61,277	59,487	58,044	△5.28

## 나.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제도의 과제

### ■ 농민 공익수당

- 과거 농정은 생산 증대와 경쟁효율이 중심이 되어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다기능적 농업,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현재 농정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사람 중심, 농가소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 2022년 기준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231,534명<sup>21)</sup>이며, 농민 공익수당을 받은 농업인은 114,872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 현재 농민 공익수당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의 확대가 필요함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이 농가별로 지급되고 있으나, 농업인의 소득안정망 강화를 위해 1인 경영체 가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함

### ■ 도·시군 직접지불제

- 현재,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전북도뿐만 아니라 시군 모두 직접지불제(쌀직불금, 밭직불금)를 시행하고 있음
- 현재 도·시군 쌀/밭직불금은 대부분이 논·밭의 면적(ha)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전주, 정읍, 김제, 완주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포함한 직접지불제를 운영하고 있음

2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통계시스템  
<http://uni.agrix.go.kr/docs7/biOlap/fixType.do?reportId=report02>

- 중소기업 농업인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 공익직불제와 달리, 전라북도 쌀/밭직불금 지급대상은 소규모 농업인과 대규모 농업인에 집중하고 있어 농가소득 불균형 문제 완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면적직불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군 또한 같은 상황으로 예측됨
- 김태화·양승룡(2022)의 연구에 따르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모두 운영하는 공익직불제는 개편 전 직불제에 비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 농업인 소득안정망 강화를 위해 직불제의 개편이 필요함

### ■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 농업인 관점에서 1) 다양한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의 신청의 불편 완화, 2) 농업인의 소득보전 지원사업 접근성 편의 제공 3) 농업인 소득안정망의 촘촘한 확충, 4)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의 시군별 형평성 개선 등을 위해 3가지 유형으로 분리되어 있는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행정 관점에서 1) 사업량 확대에 따른 신청서 관리 업무 감소, 2) 관리, 점검 대상 데이터 축적 및 분석의 어려움 해소, 3) 부정수급 의심자 및 실경작자 확인의 어려움 해소, 4)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 및 활용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하여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의 개편이 필요함
- 사람 중심 정책 방향, 소득재분배, 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소득재분배가 가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제 5 장

#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선방안

1.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편방향
2. 개편안 설정
3. 개편안의 기대효과와 한계
4. 성과지표





# 제 5 장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선방안

## 1.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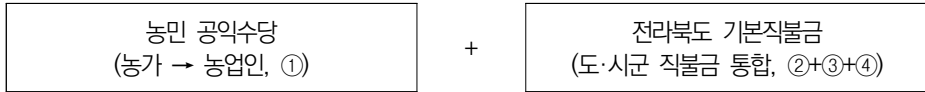
- 현재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는 '① 도 농민 공익수당, ② 도 쌀직불금, ③ 도 밭직불금, ④ 시군 자체 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급 대상은 '농가'임
- 2023년 기준으로 농민 공익수당은 '농가당 60만원', 도 쌀직불금은 '1ha당 13만원', 도 밭직불금은 '1ha당 7만원'을 농가에 지급하고 있음

① 농민 공익수당 (60만원)	+	② 쌀 직불금 (13만원/ha)	+	③ 밭직불금 (7만원/ha)	+	④ 시군 직불금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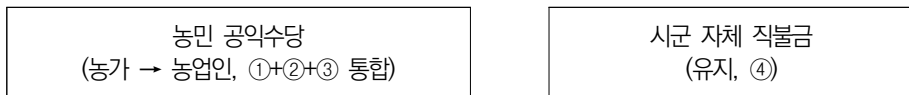
- 시군 자체 직불금을 제외하였을 때, '농민 공익수당'과 '도 쌀·밭직불금'의 최소 지급 금액은 60.7만원(밭 0.1ha), 최고 금액은 106만원(밭 1.0ha, 논 3.0ha)으로 산출되었음
- 2023년도 소요예산은 농민 공익수당이 706억원(도비 282억원, 시군비 424억원), 도 쌀직불금 120억원(도비 120억원), 도 밭직불금 16억원(도비 8억원, 시군비 8억원), 시군 자체 직불금 709억원으로 총 1,632억원임
  - 총 예산 : 1,632억원, 도비 : 410억원, 시군비 : 1,222억원
- 제2장부터 제4장에서 살펴본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의 현황과 진단 결과를 통해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편안을 다음과 제시하고자 함

## ■ 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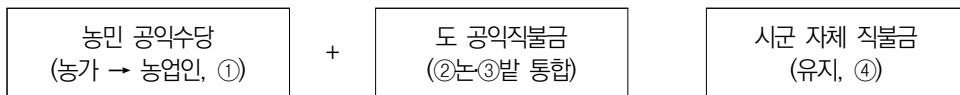
- (개편안 1)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한 '농민 공익수당'과 도·시군 자체 직불금을 통합하여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라북도 기본직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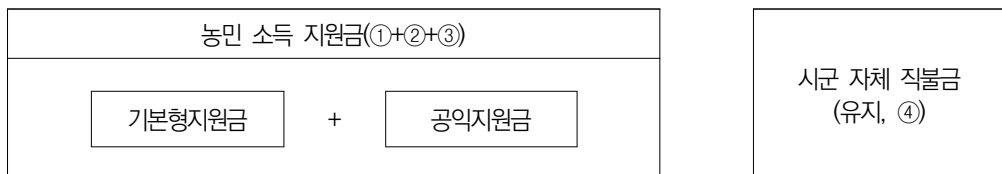
- (개편안 2) 농민 공익수당, 도 쌀직불금, 도 밭직불금 예산을 모두 통합하고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개편된 '농민 공익수당'과 '시군 자체 직불금' 유지



- (개편안 3)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한 '농민 공익수당', 논과 밭을 통합한 농지를 지급 면적으로 하는 개편된 '도 공익직불금', '시군 자체 직불금'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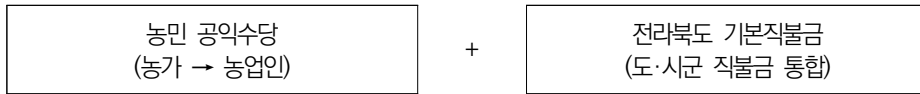
- (개편안 4) 중앙의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같이 농가당 '기본형 지원금'과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원금을 산정하는 '공익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북 농민 소득지원금'과 '시군 자체 직불금' 유지



- 개편안 1~3은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을 농업인으로 확장하고, 개편안 4는 농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하고 있으며, 개편안 1을 제외한 개편안 2~4는 시군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시군 자체 직불금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2. 개편안 설정

### 가. (개편안 1) 도 농민 공익수당 + 전라북도 기본직불금



- 개편안 1은 기존 지원체계를 ‘농민 공익수당’과 ‘전라북도 기본직불금’으로 체계 개편하는 안으로, 1) ‘농민 공익수당’은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2) ‘전라북도 기본직불금’은 도·시군 자체 직불금을 하나의 ‘직불금’으로 통합하여 현행과 같은 지급 대상과 조건에서 정부의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같이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직불금임

#### ■ 농민 공익수당

- 농민 공익수당은 현재 충남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어민수당과 같이 1인 경영체 가구와 2인 이상 경영체 가구의 수당을 차등화하여 지급함

- 충남 농어민수당은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개별로 1인당 4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지급 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내에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sup>22)</sup>

- (자격요건) 농업인의 경우, ‘신청연도에 도내에 있는 농지 또는 도와 연결한 타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며, 양봉인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인’이어야 함

- 기존과 달리 부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22) 현행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내에 있으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소득안정망 강화를 위해 전문가 논의에서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가치 실현의 가능성을 높일 의견이 제기됨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중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를 등록한 부부의 경우 농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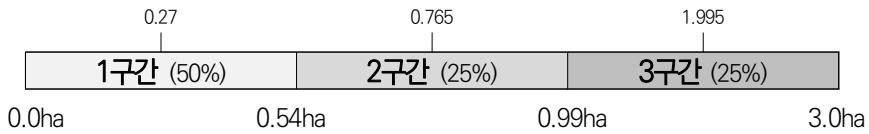
- (지급 제외) 현행 농민 공익수당과 같이 1)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前前)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4)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5)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등
  - (농업)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 (양봉농가)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 및 꿀벌 병해충 방역
- (지급금액) 1인 가구는 연 1회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개별로 1인당 45만원 지급(1인 80만원, 2인 90만원, 3인 135만원, 4인 180만원, 5인 225만원...)

1인	2인		3인			4인				...
80	45	45	45	45	45	45	45	45	45	...

- (지급방식) 지역화폐 등

### ■ 전라북도 기본직불금

- 직불금의 현행 산출방식인 면적직불제에서 정부의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같이 면적구간 별 역진적 단가를 설정하여 직불금 지급함
- (면적 구간 산정 방법) 정부 공익직불제의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중 농지 면적의 합이 0.5ha인 것과 2023년도 직불금을 받은 대상자(농지 면적의 합이 0.1ha~3.0ha)의 분포를 고려하여, 기본직불금 지급 면적 구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1구간] 0.1~0.54ha 이하(~50%이하), [2구간] 0.54ha 초과~1.44ha 이하(50% 초과~75% 이하), [3구간] 1.44ha 초과~3.0ha (75% 초과~100%)



## ■ 소요예산(2024년 기준)

- 2024년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체 수를 추정함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수**
  - 2021년 기준 230,260명에서 2022년 231,534명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인 0.6%를 적용하여, 2024년 234,321명으로 산출되었음
  - 현재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인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내에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서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변경하였을 때, 농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비율은 현행 제도에서의 비율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충청남도의 농민수당을 받는 농업인 비율은 전체 농업인의 79%가량으로,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이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 전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중 79.0%가 농민 공익수당을 받을 것으로 가정함
  - 2024년도 추정된 농업인은 '185,114명'이었음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체 수**
  - 2021년 기준 161,282호에서 2022년 164,912호까지 전년대비 증가율인 2.3%를 적용하여, 2024년 172,585명으로 산출되었음
  - 현재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인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내에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서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인 농가'로 변경하였을 때, 농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는 농가의 비율은 현행 제도에서의 비율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전라남도의 농민수당을 받

는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79%가량으로,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이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 전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체 중 79.0%가 농민 공익수당을 받을 것으로 가정함

- 2024년도 추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체는 '136,342호'임

○ 추정치인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185,114명과 경영체 136,342호를 가지고 개편안 1이 추진되었을 때 소요 예산을 산출함

○ 농민 공익수당 소요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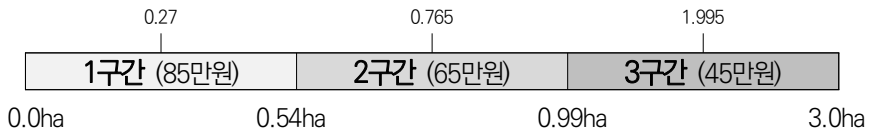
- '2020년 농업총조사'를 근거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원 수가 1인인 경우가 농가의 32.5%로 1인 경영체 가구의 수를 44,311호(136,342호\*0.325)로 추정하였음

- 1인 경영체 가구는 '80만원', 2인 이상 경영체 가구는 개별 농업인에게 45만원을 지급하도록 농민 공익수당 금액을 조정하였음

- 소요예산의 산출식은 '(44,311명\*80만원)+(140,803명\*45만원)'으로, 금액은 총 988억원으로 추산되었음

○ 전라북도 기본직불금 소요 예산

- 기본직불금의 산출방식인 면적직불제에서 정부의 공익직불제와 같이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설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하였을 때 소요예산을 추정하였음



- 1구간(0.1ha~0.54ha 이하)을 85만원, 2구간(0.54ha 초과~0.99ha 이하) 65만원, 3구간(0.99ha 초과~3.0ha) 45만원으로 설정하였을 때,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0.27ha * 68,171호 * 85만원) + (0.765ha * 34,086호 * 65만원) + (1.995ha * 34,085호 * 45만원)^{23)}$$

- 산출식을 통해 추산된 전라북도 직불금 소요 예산은 632억원이었음

○ '농민 공익수당'과 '전라북도 기본직불금'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액은 총 1,620

23) 구간별 농지 면적은 중간값을 활용하였음



---

억원(988억원+632억원)으로, 도비, 시군비 비율을 30:70으로 하였을 때 도비 486억원, 시군비 1,134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40:60이었을 때 도비 648억원, 시군비 972억원으로 추산되었음

- 개편안 1에서 1인 경영체 가구의 경우. 농지 면적이 0.1ha인 농업인은 88.5만원, 농지 면적이 3.0ha인 농업인은 215만원을 수령하게 됨
- 4인 경영체 가구의 농업인은 각각 45만원을 받으며, 해당 가구가 0.1ha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188.5만원, 3.0ha이면 315만원을 받음
- 현행 제도에서 수령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60.7만원(농가, 밭 0.1ha)이며, 개편안 1의 최소 금액은 88.5만원으로 현행 제도에 비해 27.8만원이 증가함(1인 경영체, 경작 농지 0.1ha)

#### ■ 개선점 및 장점

- (개선점 1) 농가 단위로 지급하던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업인으로서의 확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농업 주체가 '농업인'임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함
- 농가 경영주의 성별 비율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은 농업·농촌 현실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 확대는 농업인이 농업의 주체로 인정받고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확대, 농업인의 공익활동 인정 등으로 이들의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감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 (개선점 2) 1인 경영체 가구와 2인 이상 경영체 가구의 농업인의 수당을 차등 지원하고 있어 1인 경영체의 농민 공익수당의 증가는 이들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 (개선점 3) 직불금의 지급 면적을 살펴보면, 밭농가는 0.1ha~1.0ha, 논농가는 0.1ha~3.0ha로, 밭농가의 공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으며, 직불금 지

급 면적 설정 기준이 이론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 도 쌀·밭직불금의 통합으로 직불금의 지급 면적은 논밭 면적의 합을 근거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었던 밭농가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며, 밭농가와 논농가의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음
- (개선점 4) 도 쌀·밭직불금은 면적당 직불금을 지급하는 면적직불제로, 지급단가는 '사업비/지급대상면적'임
- 쌀직불금의 지급단가는 1ha당 13만원, 밭직불금은 1ha당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쌀직불금은 1.3만원(0.1ha)에서 39만원(3.0ha), 밭직불금은 0.7만원(0.1ha)에서 7만원(1.0ha)을 논농가와 밭농가에 각각 지급하고 있음
- 쌀·밭직불금의 지급 면적 중 최대면적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는 전체의 10%가량에 해당하며, 특히 이들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직불금 전체 예산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농지가 클수록 유리함
- 직불금 지급단가를 정부 공익직불제와 같이 면적 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설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할 경우, 소농의 지원금 증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점) 농민 공익수당과 직불금 모두를 추진하는 개편안 1의 경우, 각각 법적 기반이 되는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의 개정 없이 두 제도 추진이 가능함
- (성과) 농업인의 이전소득 증가와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하여 지역화폐 사용가능한 지역사회에서의 소비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 한계점

- (한계점 1)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농업인은 ①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②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③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을 이행해야 함

- 도 쌀·밭직불금은 '논·밭작물을 경작하는 도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논·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목적을 두고 있음
- 개편안 1은 공익적 가치 증진과 기능 유지를 강조하는 농민 공익수당과 농업인의 소득보장과 자급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본직불금을 분리하고 있음
- 개편안 1을 추진할 경우, 농업인의 농민 공익수당과 기본직불금뿐만 중앙의 공익직불금에 대한 정책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홍보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유사 사업에 따른 농업인의 정책적 이해도와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한계점 2) 농민 공익수당은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원이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농업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하여, 농민 공익수당에 대한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부정·부당 수급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한계점 3) 농지 소유가 농민 공익수당과 직불금 지급에 중요한 지급요건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특히 초고령농가의 은퇴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음
- 초고령농가의 은퇴시기가 늦어질 경우, 농지이양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귀농귀촌인, 청년농 등이 농지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초고령농가의 은퇴 시기는 이들의 소득 안정성과 관련이 있어 복지 차원에서 초고령층의 소득안전망이 강화될 때 초고령농가의 은퇴 시기 지연을 해결할 수 있음
- (한계점 4) 시군 자체 직불금 시행은 시군 단체장의 공약사업과 연계되어 시군 간 직불금액의 형평성의 문제로 도 쌀·밭직불금과 시군 자체 직불금을 통합할 경우, 시군의 정책추진 자율성 제약의 문제로 직불금 통합에 대한 시군의 반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한계점 5) 1인 가구와 소농의 소득안정을 고려하였으나 한 가구에 경영체 등록 농업인 수가 많은 농가와 농지 면적이 넓은 경영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증가하고, 그 증가 폭이 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나. (개편안 2)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

농민 공익수당  
(농가 → 농업인, ①+②+③ 통합)

시군 자체 직불금  
(유지)

- 개편안 2는 기존 지원체계에서 시군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시군 자체 직불금'을 유지하고 농민 공익수당과 도 쌀·밭직불금을 통합하여 '농민 공익수당'으로 개편하는 안임

### ■ 농민 공익수당

- '농민 공익수당'은 개편안 1과 같이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확대함
- 개편안 1과 같이 1인 경영체 가구와 2인 이상 경영체 가구의 농민 공익수당을 차등화하여 지급함
  - 1인 가구 연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개별로 1인당 45만원을 지급 예정
- (지급 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내에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와 경영주의 농업인'
- (자격요건) 농업인의 경우, '신청연도에 도내에 있는 농지 또는 도와 연접한 타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며, 양봉인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인'이어야 함
  - 기존과 달리 부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중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를 등록한 부부의 경우 농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지급 제외) 현행 농민 공익수당과 같이 1)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前前)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4)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5)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등

- (농업)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 (양봉농가)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 및 꿀벌 병해충 방역

- (지급금액) 1인 가구는 연 1회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개별로 1인당 45만원 지급(1인 80만원, 2인 90만원, 3인 135만원, 4인 180만원, 5인 225만원...)

1인	2인		3인			4인				...
80	45	45	45	45	45	45	45	45	45	...

- (지급방식) 지역화폐 등

### ■ 소요예산(2024년 기준)

- 개편안 1과 같이 2024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수를 185,114명, 1인 가구를 44,311호로 추정하고, 1인 경영체 가구는 80만원, 2인 이상 경영체 가구 개별 농업인에게 45만원을 지급한다고 설정하였음
-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 예산을 산출한 식은 다음과 같음

$$(44,311\text{명} \times 80\text{만원}) + (140,803\text{명} \times 45\text{만원})$$

- 총 988억원이 추산되었음
- ‘농민 공익수당’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액은 총 988억원으로, 도비, 시군비 비율을 30:70으로 하였을 때 도비 296억원, 시군비 692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40:60이었을 때 도비 395억원, 시군비 593억원으로 추산되었음
- 개편안 2에서 1인 경영체 가구는 농지 면적과 상관없이 80만원, 4인 경영체 가구는

180만원을 수령 가능함

- 현행 제도의 최소 수령 금액은 60.7만원(농가, 밭 0.1ha)이며, 개편안 2의 최소 금액은 80만원으로 현행 제도에 비해 지원금이 19.3만원 증가함(1인 경영체)

## ■ 개선점 및 장점

- (개선점 1)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농업인은 ①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②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③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을 이행해야 함
-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시 농업인의 농민 공익수당에 대한 정책적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정책의 성과와 효과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개선점 2) 농가 단위로 지급하던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업인으로서의 확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농업 주체가 '농업인'임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함
- 농가 경영주의 성별 비율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은 농업·농촌 현실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 확대는 농업인이 농업의 주체로 인정받고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 확대, 농업인의 공익활동 인정 등으로 이들의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감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 (개선점 3) 1인 경영체 가구와 2인 이상 경영체 가구의 농업인의 수당을 차등 지원하고 있어 1인 경영체의 농민 공익수당의 증가는 이들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 (장점 1) 농민 공익수당의 법적 기반이 되는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없이 농민 공익수당 추진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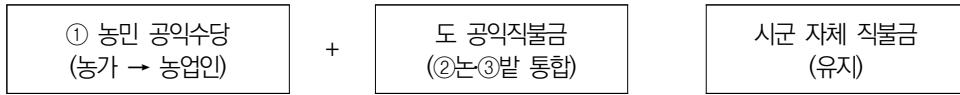
- (장점 2) 시군 단체장의 공약사업인 시군 자체 직불금을 유지할 경우, 시군의 정책 자율성 보장으로 시군의 개편안 2 추진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성과) 농업인의 이전소득 증가와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하여 지역화폐 사용가능한 지역사회에서의 소비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 한계점

- (한계점 1) 농민 공익수당은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원이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농업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하여, 농민 공익수당에 대한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부정·부당 수급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한계점 2) 농지 소유가 농민 공익수당에 중요한 지급요건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특히 초고령농가의 은퇴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음
  - 초고령농가의 은퇴 시기는 이들의 소득 안정성과 관련이 있어 복지 차원에서 초고령층의 소득안전망이 강화될 때 초고령농가의 은퇴 시기 지연을 해결할 수 있음
- 초고령농가의 은퇴시기가 늦어질 경우, 농지이양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귀농귀촌인, 청년농 등이 농지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다. (개편안 3) 농민 공익수당 + 전라북도 공익직불금



- 개편안 3은 기존 지원체계에서 '시군 자체 직불금'을 유지하고 '농민 공익수당', 도 쌀 직불금과 도 밭직불금을 통합한 '도 공익직불금'으로 개편하는 방안임
- '농민 공익수당'은 개편안 1과 2와 같이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도 공익직불금'은 도 쌀직불금과 밭직불금을 통합하여 논·밭 농지 면적의 합을 세 구간으로 구분하여 역진적 지급단가를 설정·적용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 농민 공익수당

- 개편안 1과 2와 같이 1인 경영체 가구와 2인 이상 경영체 가구의 농민 공익수당을 차등화하여 지급함
  - 1인 가구 연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개별로 1인당 45만원을 지급 예정
- (지급 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내에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와 경영주의 농업인'
- (자격요건) 농업인의 경우, '신청연도에 도내에 있는 농지 또는 도와 연접한 타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며, 양봉인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인'이어야 함
  - 기존과 달리 부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중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를 등록한 부부의 경우 농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지급 제외) 현행 농민 공익수당과 같이 1)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前前)연도 농

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3) 신청 전 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4)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5)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등

- (농업)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 (양봉농가)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 및 꿀벌 병해충 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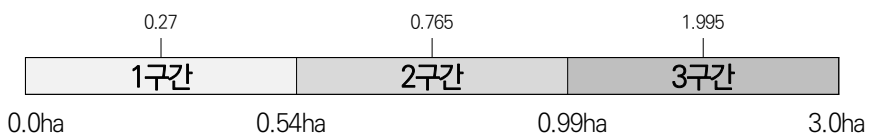
- (지급금액) 1인 가구는 연 1회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개별로 1인당 45만원 지급(1인 80만원, 2인 90만원, 3인 135만원, 4인 180만원, 5인 225만원...)

1인	2인		3인			4인				...
80	45	45	45	45	45	45	45	45	45	...

- (지급방식) 지역화폐 등

## ■ 도 공익직불금

- 직불금의 **현행 산출방식인 면적직불제에서 정부의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같이 면적구간 별 역진적 단가를 설정하여 직불금 지급함**
- (면적 구간 산정 방법) 정부 공익직불제의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중 농지 면적의 합이 0.5ha인 것과 2023년도 직불금을 받은 대상자(농지 면적의 합이 0.1ha~3.0ha)의 분포를 고려하여, 직불금 지급 면적 구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1구간] 0.1~0.54ha 이하(~50%이하), [2구간] 0.54ha 초과~1.44ha 이하(50% 초과~75% 이하), [3구간] 1.44ha 초과~3.0ha (75% 초과~100%)



## ■ 소요예산(2024년 기준)

### ○ 농민 공익수당 소요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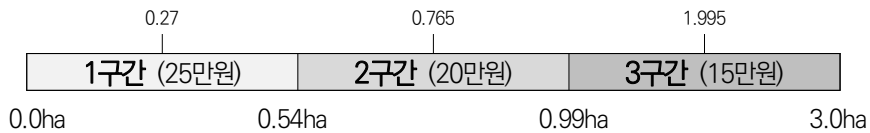
- 개편안 1에서 추정된 농업등록체 등록 농업인 185,114명을 대상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였을 때,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44,311\text{명} \times 80\text{만원}) + (140,803\text{명} \times 45\text{만원})$$

- 소요 예산은 총 **988억원**으로 추정되었음

### ○ 도 공익직불금 소요 예산

- 개편안 1에서 추정된 농업등록 등록 경영체 136,342호를 대상으로, 농지 면적 1구간(0.1ha~0.54ha이하)은 25만원, 2구간(0.54ha 초과~0.99ha이하) 20만원, 3구간(0.99ha 초과~3.0ha) 15만원으로 설정하였음



- 각 구간의 중간값(0.27ha, 0.765ha, 1.995ha)을 활용한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0.27\text{ha} \times 68,171\text{호} \times 25\text{만원}) + (0.765\text{ha} \times 34,086\text{호} \times 20\text{만원}) + (1.995\text{ha} \times 34,085\text{호} \times 15\text{만원})$$

- 해당 산출식을 통하여 도 공익직불금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총 **200억원**으로 추정되었음

- '농민 공익수당'과 '도 공익직불금'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총 **1,188억원(988억원+200억원)**으로 추정됨
- 도비, 시군비의 비율이 30:70, 40:60으로 하였을 때, 각각 356억원:832억원, 475억원:713억원으로 예측됨
- 농지 면적이 0.1ha인 1인 경영체 가구는 82.5만원, 3.0ha 가구는 125만원을 수령하고, 농지 면적이 0.1ha인 4인 경영체 가구는 182.5만원, 3.0ha 가구는 225만원을 받음

- 현행 제도에서 최소 금액은 60.7만원(농가, 밭 0.1ha)이며, 개편안 3의 최소 금액은 82.5만원으로 현행 제도에 비해 21.8만원을 더 받을 수 있음(1인 경영체, 논·밭 0.1ha)

## ■ 개선점 및 장점

- (개선점 1) 농가 단위로 지급하던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업인으로서의 확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농업 주체가 '농업인'임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함
- 농가 경영주의 성별 비율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은 농업·농촌 현실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 확대는 농업인이 농업의 주체로 인정받고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 확대, 농업인의 공익활동 인정 등으로 이들의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감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 (개선점 2) 1인 경영체 가구와 2인 이상 경영체 가구의 농업인의 수당을 차등 지원하고 있어 1인 경영체의 농민 공익수당의 증가는 이들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 (개선점 3) 직불금의 지급 면적을 살펴보면, 밭농가는 0.1ha~1.0ha, 논농가는 0.1ha~3.0ha로, 밭농가의 공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으며, 직불금 지급 면적 설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도 쌀·밭직불금의 통합으로 직불금의 지급 면적은 논밭 면적의 합을 근거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었던 밭농가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며, 밭농가와 논농가의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음
- (개선점 4) 도 쌀·밭직불금은 면적당 직불금을 지급하는 면적직불제로, 지급단가는 '사업비/지급대상면적'임
- 쌀직불금의 지급단가는 1ha당 13만원, 밭직불금은 1ha당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쌀직불금은 1.3만원(0.1ha)에서 39만원(3.0ha), 밭직불금은 0.7만원(0.1ha)에서 7만원(1.0ha)을 논농가와 밭농가에 각각 지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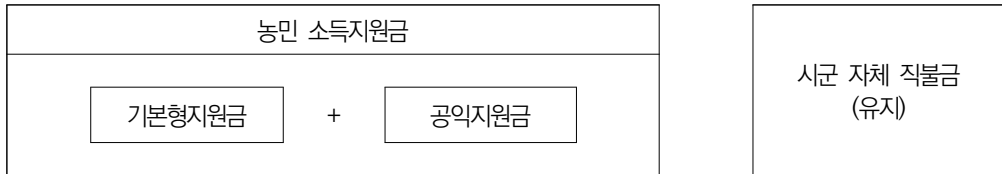
- 쌀·밭직불금의 지급 면적 중 최대면적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는 전체의 10%가량에 해당하며, 특히 이들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직불금 전체 예산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농지가 클수록 유리함
- 직불금 지급단가를 정부 공익직불제와 같이 면적 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설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할 경우, 소농의 지원금 증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점 1) 농민 공익수당과 직불금 모두를 추진하는 개편안 3의 경우, 각각 법적 기반이 되는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의 개정 없이 두 제도 추진이 가능함
- (장점 2) 현행 제도와 차별성이 크지 않고 지급대상의 확대로 농업인의 제도 개편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것으로 보여 정책추진이 상대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장점 3) 시군 단체장의 공약사업인 시군 자체 직불금을 유지할 경우, 시군의 정책 자율성 보장으로 시군의 개편안 3 추진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성과) 농업인의 이전소득 증가와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하여 지역화폐 사용가능한 지역사회에서의 소비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 한계점

- (한계점 1)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농업인은 ①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②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③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을 이행해야 함
- 도 쌀·밭직불금은 '논·밭작물을 경작하는 도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논·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목적을 두고 있음

- 개편안 3은 공익적 가치 증진과 기능 유지를 강조하는 농민 공익수당과 농업인의 소득보장과 지급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공익직불금을 분리하고 있음
- 개편안 1을 추진할 경우, 농업인의 농민 공익수당과 공익직불금뿐만 중앙의 공익직불금에 대한 정책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홍보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유사 사업에 따른 농업인의 정책적 이해도와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한계점 2) 농민 공익수당은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원이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농업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하여, 농민 공익수당에 대한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부정·부당 수급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한계점 3) 농지 소유가 농민 공익수당과 직불금 지급에 중요한 지급요건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특히 초고령농가의 은퇴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음
  - 초고령농가의 은퇴 시기는 이들의 소득 안정성과 관련이 있어 복지 차원에서 초고령층의 소득안전망이 강화될 때 초고령농가의 은퇴 시기 지연을 해결할 수 있음
- 초고령농가의 은퇴시기가 늦어질 경우, 농지이양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귀농귀촌인, 청년농 등이 농지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한계점 4) 현행 제도의 추진체계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의 부정·부당수급 점검, 지급대상자 관리·수급 점검, 정보취합 등 행정업무 부담이 여전히 큼

## 라. (개편안 4) 전라북도 농민 소득지원금



- 개편안 4는 기존 지원체계를 ‘기본형 지원금’과 ‘공익지원금’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농민 소득지원금’으로 새롭게 체계를 개편하고 ‘시군 자체 직불금’은 유지함
- ‘농민 소득지원금’은 농가별 공통 금액의 지원금과 농지 면적을 세 구간으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지급단가가 설정된 공익지원금을 지급하는 농가 지원금임

### ■ 농민 소득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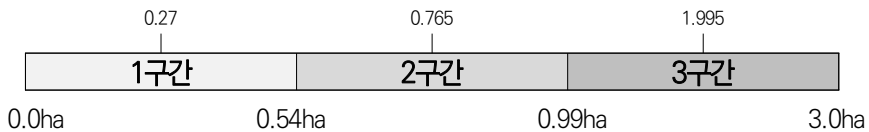
- 개편안 4는 기존 농민 공익수당과 도 자체 직접지불제를 통합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됨
- (지급 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내에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을 등록한 경영주’
- (자격요건) 농가의 경우, ‘신청연도에 도내에 있는 농지 또는 도와 연접한 타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며, 양봉농가는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이어야 함
- (지급 제외) 현행 농민 공익수당과 같이 1)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前前)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4)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5)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sup>24)</sup>, 6)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등

- (농업)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 (양봉농가)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 및 꿀벌 병해충 방역

○ (지급금액) 기본형 지원금(60만원), 공익지원금은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 설정

- [1구간] 0.1~0.54ha 이하(~50%이하), [2구간] 0.54ha 초과~1.44ha 이하(50% 초과~75% 이하), [3구간] 1.44ha 초과~3.0ha (75% 초과~100%)



○ (지급방식) 지역화폐 등

### ■ 소요예산(2024년 기준)

○ 전북 농민 소득지원금을 개편안 1에서 추정된 136,342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체에 지급한다고 가정함

#### ○ 기본형지원금 소요 예산

- 기본형지원금과 공익지원금으로 구성된 '도 농민 소득지원금'에서 '기본형지원금'을 농가별로 60만원 지급한다고 하였을 때, 기본형지원금의 총 소요 예산은 총 **818억원**으로 산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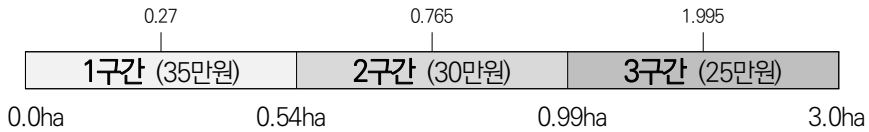
**136,342호\*60만원**

.....  
 24) 1)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면서 가족 구성원이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2건 또는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 1명에게 지급  
 2)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 지급  
 3) 마을경작사실·양봉농가 확인위원회에서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세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도 공익직불금 소요 예산

- 공익지원금은 정부 공익직불제와 같이 농지 면적의 합을 세 구간으로 구분하여 구간별로 역진적 지급단가를 설정함
- 첫 번째 구간인 0.1ha~0.54ha 이하는 35만원, 두 번째 구간 0.54ha 초과~0.99ha 이하는 30만원, 마지막 구간 0.99ha 초과~3.0ha 25만원으로 지급단가를 설정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산출식을 통해 공익지원금을 위한 소요예산은 총 **313억원**이었음



$$(0.27ha * 68,171호 * 35만원) + (0.765ha * 34,086호 * 30만원) + (1.995ha * 34,085호 * 25만원)$$

- ‘도 농민 소득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총 **1,131억원(818억원+313억원)**으로 산출됨
- 도비, 시군비의 비율이 30:70, 40:60으로 하였을 때, 각각 339억원:792억원, 452억원:679억원임
- 0.1ha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의 경우 63.5만원, 3.0ha 농가는 135만원을 받게 됨
- 현행 제도에서 최소 금액은 60.7만원(농가, 밭 0.1ha)이며, 개편안 4의 최소 금액은 63.5만원(1인 경영체, 논·밭 0.1ha)으로 현행 제도에 비해 2.8만원을 더 받을 수 있으나, 현행 제도의 수령금액과 큰 차이가 없음

■ **개선점 및 장점**

- (개선점 1) 기본형 지원금과 중소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의 공익직불제와 같이 농지 면적 구간별 역진적 지급방식으로 공익지원금을 지급하는 ‘농민 소득지원금’은 중소농가의 소득 보전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존중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개선점 2)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해당 제도를 통해 농업인의 정책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 성과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개선점 3) 직불금의 지급 면적을 살펴보면, 밭농가는 0.1ha~1.0ha, 논농가는 0.1ha~3.0ha로, 밭농가의 공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으며, 직불금 지급 면적 설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도 쌀·밭직불금의 통합으로 직불금의 지급 면적은 논밭 면적의 합을 근거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었던 밭농가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며, 밭농가와 논농가의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음
- (개선점 4) 공익지원금은 정부 공익직불제와 같이 면적 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설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할 경우, 소득의 재분배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점) 시군 단체장의 공약사업인 시군 자체 직불금을 유지할 경우, 시군의 정책 자율성 보장으로 시군의 개편안 4 추진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성과) 농업인의 이전소득 증가와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하여 지역화폐 사용가능한 지역사회에서의 소비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 한계점

- (한계점 1) 농지 소유가 농민 공익수당과 직불금 지급에 중요한 지급요건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특히 초고령농가의 은퇴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음
  - 초고령농가의 은퇴 시기는 이들의 소득 안정성과 관련이 있어 복지 차원에서 초고령층의 소득안전망이 강화될 때 초고령농가의 은퇴 시기 지연을 해결할 수 있음
- 초고령농가의 은퇴시기가 늦어질 경우, 농지이양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귀농귀촌인, 청년농 등이 농지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

있음

- (한계점 2) '농민 소득지원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행정적 비용이 발생함
- (한계점 3)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농업인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함

[표 5-1]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편안 개요

현행 제도	<p>도 농민 공익수당 + 도 쌀직불금 + 도 밭직불금 + 시군 자체 직불금(지급대상: 농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①농민 공익수당 (60만원)</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②쌀 직불금 (13만원/ha)</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③밭 직불금 (7만원/ha)</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④시군 직불금</div> </div>																				
〈 개편 〉																					
시나리오 ①	<p>①도 농민 공익수당(농가 → 경영주외 농업인) + 도시군 직불금 통합(②+③+④, 면적직불체제로 역진적 단가 적용, 경영주 지급)</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margin-bottom: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농민 공익수당(농업인)</div> <div style="font-size: 24px;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전라북도 기본직불금</div> </div> <table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1인</td> <td colspan="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2인</td> <td colspan="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3인</td> <td colspan="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4인</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80</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45</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45</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45</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45</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45</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45</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45</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45</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45</td> </tr> </table> <p>- 농민수당은 1인 경영체 80만원, 2인 이상 경영체 1인당 45만원 지급 - 통합직불금 역진적 지원체계: 0.1~0.54ha 85만원, 0.54~0.99ha 65만원, 0.99~3.0ha 45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 농민 공익수당 조례 개정, 도 직불조례 지속 활용</p>	1인	2인		3인			4인				80	45	45	45	45	45	45	45	45	45
1인	2인		3인			4인															
80	45	45	45	45	45	45	45	45	45												
시나리오 ②	<p>도 농민 공익수당(농가 → 경영주외 농업인) / 시군 자체직불(유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bottom: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농민 공익수당</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시군 자체 직불금 (유지)</div> </div> <p>- 농민수당은 1인 경영체 80만원, 2인 이상 경영체 1인당 45만원 지급 ※ 농민 공익수당 조례 개정, 도 직불조례 지속 활용</p>																				
시나리오 ③	<p>도 농민 공익수당(총남형) + 도 자체직불금 통합(면적 역진적) / 시군 자체직불(유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bottom: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①농민 공익수당</div> <div style="font-size: 24px;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도 공익직불금 (②논③밭 통합)</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시군 자체직불금 (유지)</div> </div> <p>- 농민수당은 1인 경영체 80만원, 2인 이상 경영체 1인당 45만원 지급 - 통합한 도 공익직불금은 면적기준 역진적 지원체제로 0.1~0.54ha 25만원, 0.54~0.99ha 20만원, 0.99~3.0ha 15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 농민 공익수당 조례 개정, 도 직불조례 지속 활용</p>																				
시나리오 ④	<p>도 농민 소득지원금(기본형지원금, 역진적 구간 공익지원금) / 시군 자체직불(유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bottom: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농민 소득 지원금(①+②+③)</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시군 자체 직불금 (유지)</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margin-bottom: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기본형지원금</div> <div style="font-size: 24px;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공익지원금</div> </div> <p>- 농민 소득 지원금은 기본형 지원금과 면적구간별로 역진적인 공익지원금 지급 - 기본형 지원금 : 농가 60만원 - 농민수당 역진적 지원체계: 0.1~0.54ha 35만원, 0.54~0.99ha 30만원, 0.99~3.0ha 25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 농민 공익수당 조례 폐지, 도 직불조례 지속 활용</p>																				

[표 5-2] 개편안에 따른 농업인·농가 수령금액

구분		0.1ha (17.6% <sup>25)</sup> )	0.2ha (12.0%)	0.3ha (10.5%)	3.0ha (10.2%, 3~4ha <sup>26)</sup> )
현행 (농가) (시군 직불금 제외)	논	61.3	62.6	63.9	99
	밭	60.7	61.4	62.1	
	범위	(농가) 0.1ha(밭) 60.7만원 ~ 4.0ha(논·밭) 106만원			
개편안 1 (시군 직불금 통합)	1인	88.5	97	105.5	215
	2인	98.5	107	115.5	225
	3인	143.5	152	160.5	270
	4인	188.5	197	205.5	315
	범위 (4인가구까지 설정 시)	(농업인) 0.1ha(1인 경영체) 88.5만원 ~ 3.0ha(4인 경영체) 315만원			
개편안 2 (시군 직불금 제외)	1인	80	80	80	80
	2인	90	90	90	90
	3인	135	135	135	135
	4인	180	180	180	180
	범위 (4인가구까지 설정 시)	(농업인) 1인 경영체 가구 80만원 ~ 4인 경영체 가구 180만원			
개편안 3 (시군 직불금 제외)	1인	82.5	85	87.5	125
	2인	92.5	95	97.5	135
	3인	137.5	140	142.5	180
	4인	182.5	185	187.5	225
	범위 (4인가구까지 설정 시)	(농업인) 0.1ha(1인 경영체) 82.5만원 ~ 3.0ha(4인 경영체) 225만원			
개편안 4 (시군 직불금 제외)		63.5	67	70.5	135
		(농가) 0.1ha(논·밭) 63.5만원 ~ 3ha(논·밭) 135만원			

25) 해당 농지 면적이 전체 지급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26) 현행 제도에서 논과 밭을 합한 최대 농지 면적은 4.0ha이지만, 전문가 FGI와 전문가 자문에 걸쳐 개편안에서 지급 면적을 0.1ha~3.0ha로 설정하는 것에 전문가 의견이 일치함(중소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됨)

[표 5-3]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편안 소요 예산

(단위 : 억원)

구분	총 예산 (시군 자체 직불금 포함)	총 예산 (시군 자체 직불금 제외)	총 예산 증감액	재원분담률(도비:시군비)			
				도비(30)	시군비(70)	도비(40)	시군비(60)
현행 제도 ('23 기준)	1,632	842	-				
개편안 1	1,620	-	△12	486	1,134	648	972
개편안 2	-	998	146	296	692	395	593
개편안 3	-	1,188	346	356	832	475	713
개편안 4	-	1,131	289	339	792	452	679

[표 5-4]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편안 주요 내용

구분	지급대상	지원금 형태	개선점	한계점
현행 제도	농가	농민 공익수당, 도 자체 직불금(쌀, 밭), 시군 자체 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농업인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가치 실현 주체로 인정받지 못함</li> <li>▪ 밭농가의 공익적 가치의 상대적 평가절하</li> <li>▪ 면적직불제 산정방식에 따른 농지 면적이 큰 농가에 유리</li> <li>▪ 유사사업의 추진에 따른 농업인의 정책 이해도와 만족도 낮음</li> <li>▪ 유사사업의 추진으로 행정업무 과다 및 낮은 효율성</li> <li>▪ 중소농가의 소득안전망 강화 필요</li> </ul>
개편안 1	농업인	농민 공익수당, 전라북도 기본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개별 농업인의 자긍심과 자존감 증진</li> <li>▪ 밭농가의 공익적 가치 인정으로 논농가와 밭농가의 형평성 회복</li> <li>▪ 1인 경영체 가구와 소농 지원금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 사업들의 파편적 추진 유지로 낮은 농업인의 정책적 이해도와 정책 성과</li> <li>▪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증가</li> <li>▪ 초고령농가의 은퇴시기 지연(농지이양의 어려움)</li> <li>▪ 시군의 정책추진 자율성 제약으로 시군 반발 가능성</li> <li>▪ 경영체 등록 농업인 수가 많은 농가와 농지 면적이 넓은 경영주의 지원금의 큰 증가폭으로 소득재분배 효과의 불명확성</li> </ul>

구분	지급대상	지원금 형태	개선점	한계점
개편안 2	농업인	농민 공익수당, 시군 자체 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인의 농민 공익수당에 대한 정책 이해도와 만족도 향상(정책 성과 및 효과 제고)</li> <li>여성농업인을 포함한 개별 농업인의 자긍심과 자존감 증진</li> <li>1인 경영체 가구의 지원금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을 분리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증가</li> <li>초고령농가의 은퇴시기 지연(농지이양의 어려움)</li> </ul>
개편안 3	농업인	농민 공익수당, 도 공익직불금, 시군 자체 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농업인을 포함한 개별 농업인의 자긍심과 자존감 증진</li> <li>발농가의 공익적 가치 인정으로 논농가와 밭농가의 형평성 회복</li> <li>1인 경영체 가구와 소농 지원금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사 사업들의 파편적 추진 유지로 낮은 농업인의 정책적 이해도와 정책 성과</li> <li>주민등록을 분리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증가</li> <li>초고령농가의 은퇴시기 지연(농지이양의 어려움)</li> <li>행정업무 부담과 낮은 효율성 개선이 안 됨</li> <li>경영체 등록 농업인 수가 많은 농가와 농지면적이 넓은 경영주의 지원금의 큰 증가폭으로 소득재분배 효과의 불명확성</li> </ul>
개편안 4	농가	농민 소득지원금(기본형지원금+공익지원금), 시군 자체 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농가의 공익적 역할과 소득 보전을 고려한 전국 최초 제도</li> <li>농업인의 소득안전망 강화</li> <li>발농가의 공익적 가치 인정으로 논농가와 밭농가의 형평성 회복</li> <li>소농 지원금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고령농가의 은퇴시기 지연(농지이양의 어려움)</li> <li>새로운 제도 추진에 필요한 조례 제정, 홍보 등을 위한 행정적 비용 발생</li> </ul>



### 3. 개편안의 기대효과와 한계

#### ■ 행정적 절차

- (개편안 1~3) 농민 공익수당과 직불금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조례안 일부 개정과 같이 제도적 개편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개편안 추진의 어려움이 적음
- (개편안 1)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 공익수당과 경영주를 대상으로 하는 전북 기본직불금의 이원화된 행정 채널은 지급대상자를 관리·점검, 부정수급, 데이터 관리, 데이터 기반 제도 설계 등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
- (개편안 2, 4) 도의 3개 제도(농민 공익수당, 쌀직불금, 밭직불금)를 한 개의 제도로 통합하여 일원화된 행정 채널은 기존 체계의 비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 행정 및 정책추진이 가능함
- 또한, 농업인의 정책 이해도와 지원금 인상에 따른 만족도를 높여 정책적 효과와 성과를 도모할 수 있음
- (개편안 3) 쌀직불금과 밭직불금을 통합한 도 공익직불금으로, 농민 공익수당은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시군 자체 직불금은 유지하며, 현행 제도적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도 자체 직불금과 농민 공익수당의 시행지침 수정 이외 제도적 개편없이 개편안 3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지만, 농민 공익수당, 도 공익직불금, 시군 자체 직불금의 3개의 행정 채널이 운영되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낮은 행정적 효율성과 높은 행정적 비용으로 정책적 성과와 효과는 낮을 것으로 보임
- (개편안 4) 도의 농민 공익수당과 쌀·밭직불금을 '농민 소득지원금'으로 통합하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개편안 4는 농업인 소득지원금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제도적 비용이 발생함
- 또한, 농민 공익수당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새로운 행

---

정 시스템의 구축, 홍보 등을 위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현행 제도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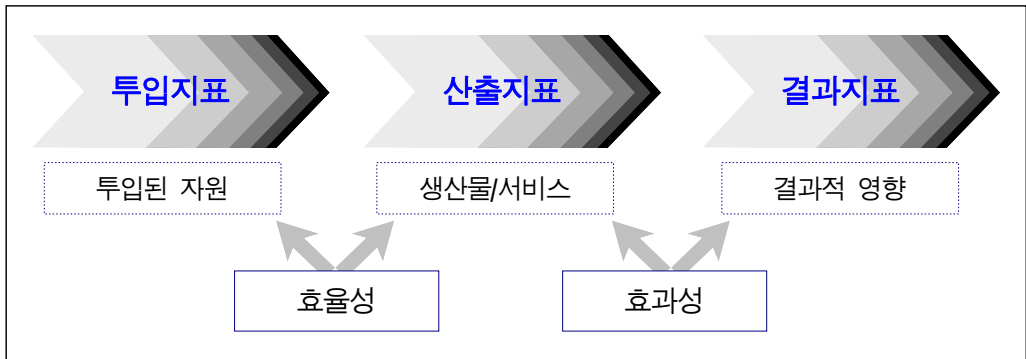
- (개편안 1~3) 농가에 지급하던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을 농업인으로 확대하며,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개별 농업인의 공익적 역할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의 주체로서 인정이 이루어지면서 농업인에 대한 시대적 시각의 변화를 수용함
- 이를 통해 농업인의 농업 주체로서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가능함
- (개편안 1, 3) 쌀직불금(0.1~3.0ha)과 밭직불금(0.1~1.0ha)의 지급 면적의 범위의 차이는 제도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밭농가의 공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밭농가와 논농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
- (개편안 1~4) 1인 경영체 가구(농민 공익수당), 소농(직불금, 공익지원금)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현재 농가중심의 농민 공익수당과 면적직불제 방식의 쌀·밭 직불금의 한계를 보완함

---

## 4. 성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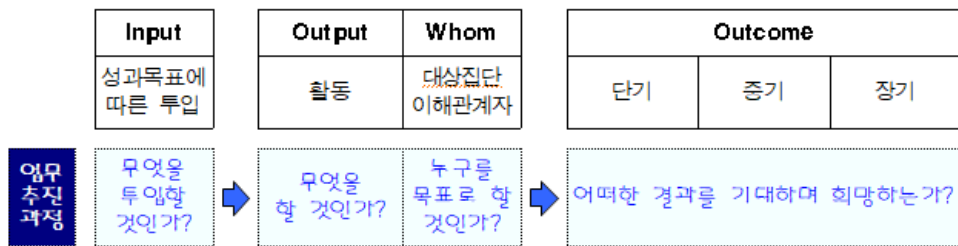
### 가. 성과지표의 개념 및 설정과정

-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네 가지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며, 개선된 개편안들이 농업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와 소득안정에 효과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를 매년 측정하여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측정된 데이터는 농업인 소득보전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정책의 목표나 전략이 달성되었는지를 계량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성과지표라 하며, 명확성, 구체성, 비교가능성, 일관성, 검증가능성, 안정성 등의 특성을 가진 평가 기준을 설정·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정규석, 2018)
  - '성과'는 사전적으로 '이루어낸 결실'로 유사어는 '결과'임
- 성과는 '자원의 투입관점'에서 '효율성'을 의미하며,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천되었는지를, '결과의 산출관점'에서는 '효과성'의 의미하며,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임(행정안전부, 2009)
-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성과목표의 바람직한 조건은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1) 정책이나 사업이 대상자에게 최종적으로 미치는 결과 또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이어야 하며, 2) 목표 달성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객관화되어야 함
- 또한, 3) 해당 성과목표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4) 적당한 수의 지표를 선택하여 측정·관리해야 함
- 그 외에도 내부 조직에 취약하지 않은 신뢰할 수 있고, 정책·사업 진행 상황 파악에 유용하고, 현재와 과거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함



출처 : 행정안전부. (2009). 직무성과계약시 목표, 지표 설정.

- 지표는 '인력, 예산 등 성과 달성에 동원된 자원을 측정'하는 투입지표, '투입된 예산 대비 산출 비율'을 평가하는 효율성지표, '자원을 투입하여 산출된 1차 산출물'을 측정하는 산출지표,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에 관한 성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가 있음(행정안전부, 2009)
- 좋은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과정 분석을 통해 궁극적 영향을 평가하는 시도에서 출발하며, 정책·사업의 투입, 활동, 산출, 결과의 순서에 따라 대상집단에 미친 영향을 추적, 평가할 수 있어야 함(행정안전부, 2009)



출처 : 행정안전부. (2009). 직무성과계약시 목표, 지표 설정.

- 다음 단계로, 성과지표는 산출과 결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도출되어야 하며, 모든 성과지표가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 평가하기에 적합하고 의미있는 지표로 구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는 1) 결과 지향성(대상 집단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가?), 2) 측정 용이성(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용되지 않는가?), 3) 시계열 비교가능성(향후 측정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비교 가능하며, 그 변화 연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 4) 통제 가능성(달성 수준이 조직의 노력으로 통제 가능한가?)이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
- 이러한 성과지표의 의미와 설정 기준을 고려하여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제도’의 성과 지표 개발을 위해 해당 제도의 대상 집단, 목표, 결과(효과) 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제도

-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제도’의 대상 집단은 1)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2) 경영주 외 농업인을 하고 있음
- 해당 제도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농민 소득안정에 있음
- 해당 제도를 통해 1)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2) 경영주와 경영주의 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고, 3)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명시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제도’ 성과지표는 경영주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책의 목표(활동, 인식 등)’, ‘정책의 효과(농가소득 안정·증진, 농업인 자존감·자긍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측정하고자 함

---

## 나.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제도 성과지표의 구조

- 경영주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제도의 목표 이행 결과와 추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음

### ■ 목표 이행 결과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제도의 목표는 농업·농촌 환경 조성, 마을 공동체성과 활력 증진,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 등임
- 세 가지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농업·농촌 환경 조성은 농업인의 비료 및 농약 사용, 농업 부산물 소각, 논밭두렁 제초제 사용, 폐농자재 수거 등을 주제로 구성하였음
- 두 번째 목표인 공동체성과 마을 활력 증진을 측정하는 항목은 농업인의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마을 공동 공간 청소, 공동체 의식 함양, 농촌 마을 활력 등이 해당됨

### ■ 추진 효과

-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제도가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농업인은 농업인으로서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고, 농가소득 안정과 농가의 지출 증가로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효과를 기대함
-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농가소득 안정, 농업인의 자존감·자긍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세부 항목을 설정하고자 함
- 농가소득 안정 부문에서는 제도의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경영·영농활동에 기여, 영농활동 확대 계획 등을 측정하며, 농업인의 자긍심·자존감 측정은 농업인의 농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 지원제도 만족도, 삶의 만족도 사항을 포함함
-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농가지출 및 지원금 사용행태 등을 성과지표로 하였음

[표 5-5]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제도의 성과지표 구조

구분		측정내용		측정방식	비고(분석)	
목표 이행 결과	환경보전 실천	비료 및 농약 사용		여부(Y/N)	빈도	
		농업 부산물 소각		여부(Y/N)	빈도	
		논밭두렁 제초제 사용		여부(Y/N)	빈도	
		폐농자재 분리·수거		여부(Y/N)	빈도	
	공동체성 및 마을 활력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에 기여		수준	빈도, 평균	
		공동체 활동 참여 정도		횟수	빈도, 평균	
		공동체 의식 함양		수준	빈도, 평균	
추진 효과	농가소득	농가 연간소득		단위	빈도, 평균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수준	빈도, 평균	
		농업경영·영농활동	농업경영과 영농활동에 기여		수준	빈도, 평균
			영농활동 확대 예정		여부(Y/N)	빈도
	자존감·자긍심	농업에 대한 인식·태도	농업인으로서의 자존감·자긍심		수준	빈도, 평균
			영농활동의 가치		수준	빈도, 평균
		제도 만족도	제도에 대한 만족		수준	빈도, 평균
	지역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 연간 지출		단위	빈도, 평균
농가경제와 살림살이에 기여				수준	빈도, 평균	
사용처별 지출액과 지출 비중				단위, 수준	빈도, 평균	

## 다.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제도 성과지표의 주요 내용

### ■ 목표 이행 결과 측정 항목

- 지원제도의 목표 이행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농업인의 환경보전 실천 정도, 농촌 마을의 공동체성 및 활력 제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중심으로 세부 항목을 구성하였음
- 농민 공익수당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와 ‘공익직불금’에서 제시된 환경보호 준수 사항을 고려하여 1) ‘지난 1년간 질소질 비료 적정 사용과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셨습니다니까?’, 2) ‘지난 1년간 농업 부산물 소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3) ‘지난 1년간 논밭두렁 제초제 사용을 줄이셨습니까?’, 4) ‘지난 1년간 비닐, 농약병 등 폐농자재를 분리·수거하셨습니까?’ 등 문항을 제시하고자 함
- 지속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의 목표 달성 측정을 위해 농업인의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항목을 제안하고자 함
- 1)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2) ‘최근 한 달 동안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3) ‘마을주민 간의 관계와 단합에 도움이 되었습니까?’로 항목을 구성함

### ■ 추진 효과 측정 항목

-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제도로 발생하는 효과로 ‘농가 소득안정’, ‘농업인의 자존감·자긍심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들 수 있음
- 제도의 목적이자 명시적인 효과인 ‘농가 소득안정’ 부분은 1) 농가소득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2) 농업경영과 영농활동의 안정과 지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농가소득의 세부 항목은 현재 농업인의 소득 현황과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1) ‘연간 농가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2)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었습니까?’로 측정하고자 함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가치 실현의 주체인 농업인의 역할과 지위를 보장



---

해주는 해당 제도로 농업인이 농업 주체로서의 '자존감, 자긍심 제고'를 경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농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지원제도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함
- '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과 태도'는 1) '농업인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와 2) '영농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측정하고, 해당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제도에 만족하십니까?'로 측정할 예정임
- '지역경제 활성화'는 농업인의 소득지원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지출이 단기,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지역경제 활성화'는 1) '연간 지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2) '농가경제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3) '사용처별 지출액과 지출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로 측정하고자 함

[표 5-6]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제도의 성과지표 주요 내용

구분		측정내용	
목표 이행 결과	환경보전 실천		지난 1년간 질소질 비료 적정 사용과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셨습니다습니까?
			지난 1년간 농업 부산물 소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1년간 논밭두렁 제초제 사용을 줄이셨습니까?
			지난 1년간 비닐, 농약병 등 폐농자재를 분리·수거하셨습니다습니까?
	공동체성 및 마을 활력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최근 한 달 동안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마을주민 간의 관계와 단합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추진 효과	농가 소득	농가소득	연간 농가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농업경영·영농활동	농업경영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현재보다 영농 규모를 늘려갈 계획입니까?		
	자존감·자긍심	농업에 대한 인식·태도	농업인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영농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 만족도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제도에 만족하십니까?
	지역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연간 지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가경제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사용처별 지출액과 지출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 참 고 문 헌

### REFERENCE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7).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연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8).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연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9).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연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0).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연감.
- 김수석, 성재훈, 조원주, 이명기, 이상민. (2018).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영, 김윤희, 김태후, 유찬희. (2022). 농민수당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49(3), 504-537.
- 박준기, 이두영, 박지연, 임준혁. (2019). 지방자치단체의 농가 소득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찬희. (2021).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공익직불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선집중 GSnj, 287.
- 유찬희·김태영. (2020).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수미. (2019a).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민수당(I)-농민수당의 의미와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슈보고서, 304.
- 이수미. (2019b).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민수당(I)-농민수당의 쟁점과 향후과제를 중심으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슈보고서, 306.
- 이수미. (2019c).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민수당(I)-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슈보고서, 313.
- 전성만, 조기현. (2020). 농민수당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규석. (2018). 핵심성과지표 개발 방법 비교연구. 한국품질경영학회지, 46(4), 863-876.
- 최영준, 김태일, 김경환, 김지현, 한선희, 윤선우, 장홍석, 오서은. (2022). 농가소득의 현황과 지원제도 평가.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Issue Brief 2022, 1.
- 황영모, 김시백, 배균기, 정호중, 박로은. (2022).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진단과 개선방향. 전북연구원.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766>
- 행정안전부. (2009). 직무성과계약시 목표, 지표 설정.

# Improving the Jeonbuk Farmer Income Support System

Wonjee Cho · Young-Mo Hwang · Seongtae Eun · Ohhyun Kwon

## 1. Study Objectives and Methods

### ■ Research purpose

- Aging and a decline in the number of farmers resulted in the weakening of the agricultural workforce, income reduction or increased costs from public benefit activities. It is important for policy measures to ensure farmers' income stability and their public role and status.
- The current income support system for farmers in Jeonbuk is implemented in fragmented ways, leading to low policy effectiveness and suboptimal outcomes. It is vital to assess the limitations of the system and explore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improvement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mmend an income support system for farmers that enhances their income stability, improves their social standing as agricultural agents, and drives 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 Research methodology

- We examine the implementation of farmers' public allowances and Jeonbuk's own direct payment system (paddy and field farm direct payments) over the past three years, using the information as a basis for discussing the current challenges in the system.

- We assess farmers' awareness of and satisfaction regarding the allowance and conduct an expert analysis of the current system, identifying limitations and exploring options for improvement.
- We propose several options for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and analyze the potential benefits and limitations of each option.

## 2.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 There are four options to recognize farmers' public role and status, enhance income security for single-person households and small-scale farmers, address the undervaluation of field farmers' contributions, and improve administrative efficiency.
- (Option 1) Expand the "public farmer allowance" from households to individual farmers and integrate the "Jeonbuk basic direct payment" with the city and county's own direct payment and a progressive support payment based on cultivated land area.
  - (Benefits) Enhancing farmers' understanding of and satisfaction with policies; boosting farmers' pride and self-esteem; restoring fairness between paddy and field farmers; and increasing support for single-person households and small-scale farmers
  - (Limitations) Possible increase in registered farmers; potential delay in the retirement of elderly farmers; constraints on city/county autonomy; and effectiveness of income distributions
- (Option 2) "Public farmer allowance" integrating the current public farmer allowance and Jeonbuk's own direct payment, maintaining city/county direct payments
  - (Benefits) Enhancing farmers' understanding of and satisfaction with policies; boosting farmers' pride and self-esteem; restoring fairness between paddy and field

- farmers; increasing support for single-person households and small-scale farmers; and promoting income distribution
- (Limitations) Possible increase in registered farmers; potential delay in the retirement of elderly farmers
  - (Option 3) Maintaining the “public farmer allowance” and expanding it to individual farmers; maintaining Jeonbuk’s own direct payment as well as the city/county direct payment
    - (Benefits) Boosting farmers’ pride and self-esteem; restoring fairness between paddy and field farmers; and increasing support for single-person households and small-scale farmers
    - (Limitations) Possible increase in registered farmers; potential delay in the retirement of elderly farmers;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challenges
  - (Option 4) “Farmer income support payment” integrating the “basic support payment” for registered agricultural management owners and the “public support payment,” with progressive payment rates based on cultivated land area, maintaining the city/county direct payment
    - (Benefits) Highlighting the public role and improving income security for small-to-medium-scale farmers; restoring fairness between paddy and field farmers; and increasing support for single-person households and small-scale farmers
    - (Limitations) Potential delay in the retirement of elderly farmers;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challenges

**Key Words**

Farmers, Farmer Public Allowance, Jeonbuk’s Own Direct Payment(paddy and field)

정책연구 2023-20

##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행인 | 이 남 호

발행일 | 2023년 7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488-6 9552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 2023년도 주요 연구과제

### 기본연구

전라북도 선행경기종합지수 작성 연구  
전라북도 경제와 거시경제의 동적 관계 분석 연구  
전라북도 일자리 종합지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전북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인구감소 대비 농촌마을 기본공간정보구축 기초연구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및 탄소중립 전략 설정  
지역문화인력의 근로실태조사와 근로환경 개선방안  
전북 해양 역사문화자원 기초자료 집성 및 활성화 방안연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전북 청년정책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재정운용 효율성 분석 연구

### 기획연구

전북형 물류서비스 산업화 방안 연구  
국제정세 변화와 새만금 중장기 글로벌 전략에 관한 연구  
만경강·동진강 생태·환경자산 목록화 및 가치창출 연구  
전주 남부시장 구슬사를 통해 본 전라북도 여성들

### 정책연구

전북연구개발특구 공간 확대방안 연구  
전라북도 녹색복원 후보지 선정 및 사업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지방시대에 대응한 전북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방안 연구  
전라북도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원사업 개선방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 방안 연구  
글로벌 스마트 재난대응 연구개발 실증단지 추진 방안  
전북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전라북도 문화재활용 문화융합상품 개발방안 연구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방안 연구  
전라북도 탄소중립을 위한 식생활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소득보전 지원체계 지원방안 마련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수립  
전북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방향 연구  
전북형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체계 연구  
현업축사매입부지 활용 주민소득창출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말쭈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http://www.jthink.kr)

